

현자의 돌

Part 3

현자의 돌(임수민)의
2017학년도 6, 9월 모의평가
통합 분석서

3. 제시문과 선지 분석 - 논리성

개념을 처음 학습할 때 단지 관련 키워드의 이론 설명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개념 학습과 기술 문제 학습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능 기술은 방대하고 깊고 복잡한 실제 상인 윤리학적 개념을 '어디까지가 수능의 범위인지' 평가원이 제시하고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수능 기술을 개념 공부의 차용이자 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제시문과 선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매우 중요하다.

선지, 제시문을 독해할 때는 해당 사상 혹은 사상의 기원을 정확히 사실적으로 독해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공부한 개념과 기술한 제시문 선지들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적으로 독해해야 한다. 그 다음 선지를 논리적인 명제로 분석하여 옳고(True), 그름(False)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개념, 명제 진행한 제시문 분석, 논리적 명제 판정 능력(선지 판단력, 독해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20수능, 선생님들이 2016학년도 수능 문항들에서 물어보셨던 것들이 학창 시절의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물론, 시간불복종 등의 선개념이 출제되긴 했다.) 그리고 유형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더 진화된 문항이 출제되었다. 예컨대 9번의 삼단법 유형, 10번의 '직이도 사람이 공정을 할 줄은' 유형, 11번의 제시문 + 상황 → 결과 → 적용 유형 정도를 들 수 있다.

한편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개념적으로도 유형적으로도 새로운 모의고사였다. 먼저 개념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2번), 허버타스의 인간복제에 대한 입장(5번), 율자의 정의전쟁론(7번), 내부 고발(9번), 할아버에 대한 일반 해방주의와 특수 해방주의(14번), 아도르노의 대중문화론(15번), 규칙공리주의(16번), 엘리아데 & 도킨스 종교론(17번) 등 작년까지의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경향이 많이 출제되었다.

또한 유형적으로도 경향이 다양했던 시험이었다. 1번에서는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의 입장이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었던 5번에서도 6행에서 출제되었던 삼단법 유형이 출제되었다. 19번에서는 무리 갑률명령 네 입장을 분류하여 ~>~>~> 선지 판단을 하는 유형 출제되었다. 이때에도 다양한 종류의 제시문 독해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논증문, 논술문, 설명문 등)

작년 수능을 분석한 '선지의 틀'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를 기준으로 볼 때,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우 20문항 중 10개의 문항 적용한 반면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겨우 5문항 밖에 적용하지 못했다. 점은 그만큼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작년 수능에 다루지 않았던 신개념을 많이 출제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제시문 독해 유형이 많이 나온 것도 적용을 많이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려웠다. 타 과목과 난이도를 비교해보자.

사회탐구 과목	1등급 것	2등급 것	3등급 것
생활과 윤리	43	40	35
세계사	47	42	37
세계사	47	43	36
한국사	46	42	36
동아시아사	45	42	39
경제	47	44	40
법과 정치	48	42	38
경제	47	43	39
윤리와 사상	47	43	39
사회탐구	47	44	40

2. 바른 물이 방법

19. 다음 글의 ㉠-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 자체에만 한정된 책임이며,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갑	있음	있음
을	있음	없음
병	없음	있음
정	없음	없음

<보기>

1.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2.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연구해야 하는가?

3. 과학자는 연구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자용에 책임져야 하는가?

4.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과정에서 표절을해서는 안 되는가?

① 1, 2 ② 2, 4 ③ 3, 4 ④ 1, 2, 3 ⑤ 1, 2, 4

3. ㉠, ㉡, ㉢, ㉣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를 치는 것이다.
각 선지에서 요구하는 내적 책임 ○, x / 외적 책임 ○, x를 먼저 표시한 다음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표시할 필요도 없다.

4. 더 바른 물이 방법
발상의 전환,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사실 위 두 방법은 모두 갑, 을, 병, 정을 기준으로 <보기> 1~4를 판정했다. 부정의 대답을 할 사람을 찾는 것과 긍정의 대답을 할 정도의 자이다. 물론 위 두 방법도 얼마 하던 편이다. 하지만 너무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4명 x 4개의 <보기> 선지 = 16가지) 수 있다.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단계를 나눠서 풀면 사고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04

[서문] 현자의 돌 소개 및 분석서 활용법

08

우리는 어떻게 생활과 윤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올바른 개념 학습, 적중 지문 & 선지

:사상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출제 트렌드 읽기

문제 해결 능력(논리력, 추론능력)

06

우리는 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가?

14

2017학년도 6, 9월 모의평가 종합 총평 및 학습법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

수능까지 1달! 지금부터 해야 할 학습 방법

- 9월 모의평가 이후 ~ 수능 전 공부 계획

- 사고력 중심의 사회탐구 학습법

반수생을 위한 조언

한자의 동음
 직극적 우대 정책에 대한 입장은 새 교육과정에 추가된 내용이다. 이 책에 정리된 관련 내용을 꼭 읽어볼 것! (어떻게 나올 지는 주제는 아니다.)

문제를이 방법 익히

① [단기] 제시문 독해: 주장 + 근거로 분석하기

D1) - 주장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극적 우대 정책은 거부되어야 한다.
 - 근거 1: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 근거 2: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의 평등에서 예외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 근거 3: 과거에 있었던 불평등(성) : 과거 백인이 자행한 노예제, 유색인종 차별 등을 잘못이 없는 후대(현대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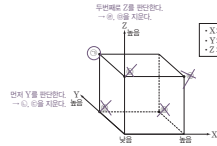
D4) - 주장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극적 우대 정책은 실시되어야 한다.
 - 근거 1: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공분(공감) 정도(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 근거 2: 직극적 우대 정책 실시를 통해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단기] X, Y, Z 중 판단하기

해설 1 그래프 X축: 형식적 평등 >> 실질적 평등, 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강조하는 특징임 우대 정책 반대 >> 우대 정책 찬성 → 맞춤
 [가]의 '기회의 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이라는 진술로부터 형식적 평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실질적 평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지 못하면 판정하기가 어려웠을 문항이다.

해설 2 그래프 Y축: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음 우대 정책 반대 << 우대 정책 찬성 → 맞춤
 [나]의 제시문에 그대로 쓰여 있다.

해설 3 그래프 Z축: 차별을 줄이고,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 = 직극적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임 우대 정책 반대 << 우대 정책 찬성 → 맞춤
 [가]에서 줄이고자 하는 '차별'은 [나]가 보상이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가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을 말한다. 한편 [가]가 말하는 '또 다른 차별'은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유류 계층' (예 미국의 'WASP' 와스트(앵글로색슨계 백인 신교도. 미국 사회의 유류를 이루는 지배 계급으로 여김)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극적 우대 정책에 대한 기회의 평등'은 '기회'가 평등하다. (문로 제1114, 10제14)



2014학년도 수능 5번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년에게 <에> 대한 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년에게 <에> 대한 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교육의 연구 개발은 과학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과학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과학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과학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① 과학 기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의 연구 목표를 설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③ 과학 기술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④ 과학 기술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 엘리아데, X로 선지 정리하기

다음 중 엘리아데의 견해로 옳바른 것은 ○, 옳바르지 않은 것은 ×로 표시하시오.

- 종교는 비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배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10p)
- 초자연적 것과 자연적인 것을 구분해 자연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10p)
- 성스러움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02p)
-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스러움을 드러내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10p)
- 인간은 내세에서만 성스러움을 접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02p)
- 체속적인 삶 속에서는 성스러움을 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8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1 독해력, 논리력으로 풀리는 문항 / 선지 분석 트레이닝

- 한 사람 긍정, 세 사람 부정 발문 유형: 6평 10번, 9평 19번
- 쟁점별 독해 유형: 6평 2번(복합 비교), 9평 4번(단순 비교)
- 3차원 그래프 유형: 6평 13번
- 삼단논법 전제 추론, 반론 유형: 6평 8번(대전제 추론), 9평 5번(소전제 추론)
- 제시문 분석, 독해 유형: 9평 3번, 11번(논술문 포맷), 15번

86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2 신개념 분석

- 신개념 포함 기타 주제 <생윤의 다양한 주제들(Applied ethics)>
- 종교 윤리: 9평 17번

98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3 사법 정의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

킬러 주제(사형제) 분석

- 우리가 사형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책
- 사형제 개념 마스터 칼럼 : 사법적 정의란 무엇인가
- 기초부터 심화까지(Storytelling) + 적용(6, 9월 기출 & EBS, 이전 기출 & EBS)
- 사형제 ○, × 선지로 정리하기

[참고] 사형제 칼럼을 너무 길게 써서 분량상 다른 내용 집필이 어려워 나머지 주제들은 생략합니다. 분배 정의, 해외 원조, 환경 윤리 등은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책을 참고해주세요. 정의전쟁론, 시민불복종¹⁾은 어렵지만 못 다룰 것 같습니다.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꼼꼼히 공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1) 시민불복종은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리가 없다. 이 포스트를 참고하자. (<http://blog.naver.com/cucuzz/220823361092>)



[서문]

현자의 돌(임수민) 소개 및 분석서 활용법

본 서문에서는 현자의 돌 소개, 생활과 윤리 과목에 대한 소개, 구체적인 학습법, 실전 문제풀이 방법론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효율적인 내용 전달 및 구성을 위해 앞으로 경어를 생략하오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자의 돌(임수민) 저자 소개

현자의 돌(임수민)

[2015년]

-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환경 윤리) 문항, 해설 논란 종결
-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²⁾(Topline 출판사) 저자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생·윤 5문항, 윤·사 7문항 적중
- 2016학년도 수능 : 오답률 Top 문항, 킬러 문항, 신유형 등 10문항 적중
- 모의고사 구매자 중 수능 생활과 윤리 만점자 다수, 많은 감사 후기를 받음.

[2016년]

- 수험생 최초로 메이저 인강 회사에서 교재를 집필하여 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책을 배포
-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저자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0문항, 9월 평가원 5문항 적중 및 트렌드 예측
- 수험생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과 기존의 강의와 교재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 여러 가지 꿀 팁과 깊이 있는 개념 칼럼을 무료 배포
- 현자의 돌 블로그 운영 (blog.naver.com/cucuzz)

● 현자의 돌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서 활용법

본 분석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책이다.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문항은 실제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모든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1시간가량의 짧은 시간에 불과해 문항들을 불완전하게 해설만 해줄 뿐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는 6월과 9월 평가원 문항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없다.

본 분석서는 기존 기출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EBS와의 연계적인 관점에서 6월, 9월 평가원 문항을 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개념강의에서 들을 수 없었던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 심화 개념까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리한다.³⁾ 그리고 개념을 넘어서, 어렵고 복잡해진 생활과 윤리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수능 시험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⁴⁾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들을 통해 제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선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정오를 판정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Part3-1에서는 생활과 윤리 학습법과 문제풀이 방법론을 주로 다룬다. 실제로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항들 중 많은 수가 심층적인 개념을 알지 못해도 제시문 독해 능력과 선지 판단 능력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한 문항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Part에서 훈련할 수 있다.

Part3-2에서는 6월과 9월에 출제된 사형제 문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전부 해설한다. 제시문과 선지를 논리적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항을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분석서는 생활과 윤리 최종 점검의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Part3-1에서 논리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고, Part3-2에 정리된 개념을 반복해서 습득하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분석서를 통해서 수능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016년 9월 4일 현자의 돌 이수민 씀

2) <http://blog.naver.com/cucuzz/220822564572>에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3) 시간과 분량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 분석서의 Part3-2에서는 '사형제'만 다루게 되었다.

4) Part3-1의 논리적 독해 문항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는 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가?

이 책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고 책을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윤리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윤리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째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것일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어째서 교실에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고, 그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 것일까?’, ‘괴롭힘 당하는 친구는 착한 사람이고, 그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는 나쁜 사람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 시절부터 위와 같은 윤리학적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윤리학, 철학 책을 읽어왔습니다. 2015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제 블로그에 생활과 윤리에 대한 칼럼들을 올리면서 윤리학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전문서적 등을 통해 윤리학 공부를 더 깊이 하게 되었고, 칼럼과 수능, 평가원 제시문, 선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들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윤리적인 삶에 대한 저만의 관점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삶이 윤리적인 삶인지 한마디로 말해봐!’라고 묻는다면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 삶이란, 단순히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리적 삶이란 법과 같이 사회가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옳바르다고 확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삶’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리란 지식의 영역을 넘어 실천의 영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윤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윤리적인 삶을 사는 존재일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윤리와 사상’과는 다르게 추상적인 윤리 이론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과 윤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칸트의 정언 명령 ‘인간성 정식’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생활과 윤리는 학습자에게 살인자를 처벌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칸트의 ‘인간성 정식’이라는 윤리적 이론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기존의 윤리학 이론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의의이고 이유입니다. 생활과 윤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조금 더 윤리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영향을 주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학문’으로서 ‘생활과 윤리’는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화두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감수성 없이 단순히 사상가들의 주장을 암기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암기하는 것은 생활과 윤리의 껍데기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감수성을 갖춘 학생이 생활과 윤리의 개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수능 문제도 더 잘 풀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분석서’를 쓸 때,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고를 씁니다. 단순히 Fact들의 나열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윤리적 문제 상황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름의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윤리적 감수성을 기르고, 수능 또한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앞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와 사회적 이슈들 중에서 상당수가 ‘윤리 의식’이 부족해서 비롯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근대화되어 물질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교육은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 넬슨 만델라)

우리들이 생활과 윤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생활과 윤리를 공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윤리 의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리고 이 책이 작게나마 힘을 보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5) 정식은 공식, Formula를 말한다. 모든 교과서, 수능특강, 수능완성 1단원 칸트 의무론에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있으니 참고하자. (혹은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2에도 잘 나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과 윤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 올바른 개념 학습, 적중 지문 & 선지 : 사상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출제 트렌드 읽기
- 문제 해결 능력 : 논리력, 추론능력

● 기존의 공부 방식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기존의 생활과 윤리 공부 방법은 선생님의 판서 정리를 참고하여 개념을 키워드 중심으로 필기하고, 특정 키워드와 관련 선지, 제시문들을 도식적으로 연결하여 암기하는 방식이었다. 지금까지도 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덕분에 생활과 윤리는 “개념이 쉽고 분량이 적은 과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많은 학생들이 ‘쉽고 분량이 적은’ 생활과 윤리를 ‘쉽고 간단하게’ 공부했지만, 결국 평가원 시험에서는 만점, 1등급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가 ‘뒤통수를 치는 과목’이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다.

과연 생활과 윤리는 뒤통수를 치는 과목인가?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다.

우리가 생활과 윤리를 너무 우습게 여긴 것은 아닌지... 평가원 시험과 수능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면 생활과 윤리를 쉽게, 조금 공부했기 때문은 아닌지...

이 질문에 생활과 윤리를 쉽게 공부했지만, ‘조금’ 공부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개념-심화-문풀(EBS)-파이널 모의고사>까지 100강이 넘는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공부를 적게 했다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기존의 공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험적 증거(방증)이 아닐까?

공부를 많이 한 당신, 혹시 그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은 없었는가? 분명히 개념 강의를 듣고 공부했는데 그 다음의 심화 강의 혹은 문제풀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너무나 생소하다든가 문제를 풀면 잘 모르겠고 자주 틀리는, 즉 실력이 쌓이지 않는 그런 경험 말이다.

그런 경험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혹은 인강을 많이 들었지만), 그 공부들은 낱알이 흩어진 파편 조각들을 주섬주섬 암기해나가는 공부였기 때문에 개념과 실력이 선순환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 현자의 돌이 제시하는 새로운 공부 방법

작년 9월에 출간한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⁶⁾의 부록과 올해 4월경 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던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생활과 윤리를 파고 들어간 시도들이다. 그 책들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토리텔링-몰입⁷⁾

우선 처음 개념을 학습할 때는 중요한 키워드와 항목들을 나열하여 전체적인 열개를 잡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기 학습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개념에 관련된 맥락을 스토리텔링으로 학습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의 맥락화)

인간의 뇌는 키워드 중심으로 외운 단순 암기 사항들을 단편적으로 외울 경우 그것을 새로운 문제 상황에 응용하지 못한다.

수능의 어려운 문항들을 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이 발생한 배경 개념의 본질적인 의미와 확장된 의미를 학습하고, 그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 상황, 맥락 또한 함께 익혀야 한다. 물론 그 내용 설명에 있어서 오류와 오개념이 없어야 하고, 수능 범위에 적절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2〉

2. 구조화 - 체계성

또한 키워드와 항목들을 정리할 때, 단순히 줄글로 ‘○○개념 : ~~~~~ 설명’식의 문장 나열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수능특강식의 요약된 개념 서술을 읽을 경우,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가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짧은 문장의 서술이 평가원과 수능에서 선지로 응용된다면, 수십 번 보고 들었던 쉬운 개념(쉽다고 착각했던)이 정답률 30% 밖에 되지 않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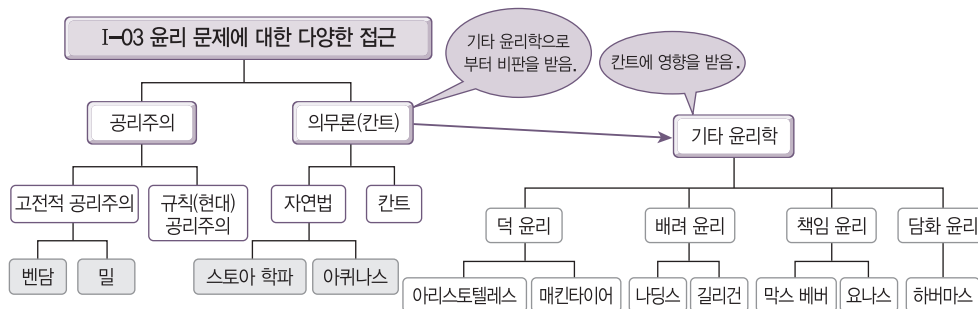
안다고 생각한 것을 틀리는 억울한 일은 ① 배경적 맥락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피상적으로 외우기만 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② 개념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에 발생한 것이다.

개념을 키워드와 항목으로 정리할 때에도 단순한 나열식보다는 스토리텔링식의 설명과 함께 마인드맵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예] 개념 마인드맵, 체계적 구조화⁸⁾

1단원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유사 : 의무론 윤리/답론 윤리 ↔ 상반 : 공리주의, 덕 윤리, 배려 윤리, 책임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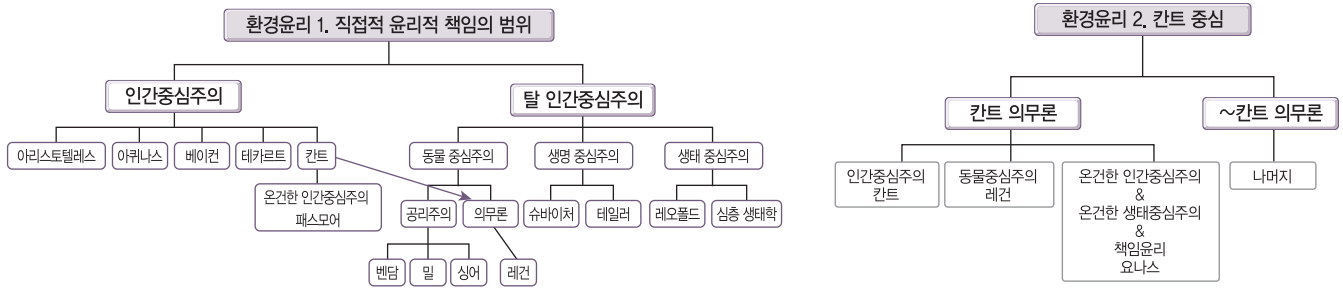
3단원 환경 윤리

환경 윤리도 일반적인 분류로 나눌 수도 있지만, 칸트와 관련 있는 학자들을 묶어서 칸트와 함께 공부하면 편하다.

6) 블로그에 PDF 파일을 올려놓았음.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가 없는 분들은 PDF 파일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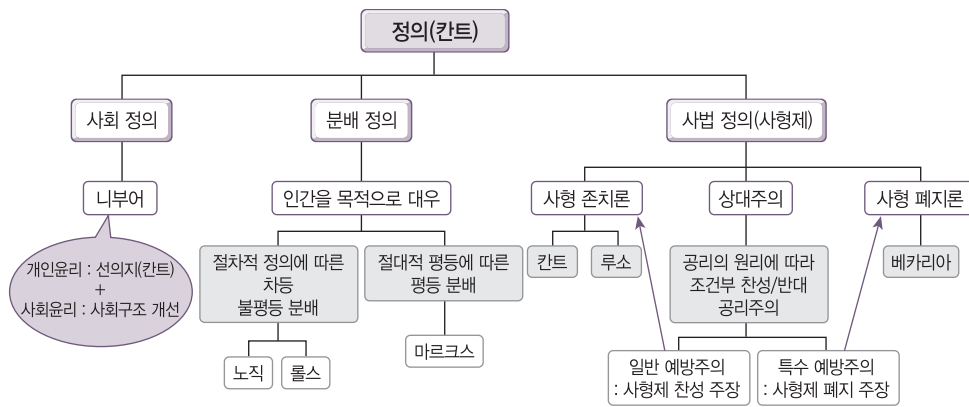
7) 스토리텔링 예시는 생략한다. 본 분석서의 사형제 Master 칼럼 전체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서술했다. 사형제 Master 칼럼을 잘 읽어보자.

8) 이 예시를 말고 다른 예시들도 추가로 넣을까 고민했지만, 분량상의 문제로 삭제함.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다보면 제시문을 도표화하거나 개념을 도표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으니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거나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2에 개념을 도표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자.



4단원 정의론

또한 칸트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각 개념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쉽다.



〈출처 :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2〉

3. 제시문과 선지 분석 - 논리성

개념을 처음 학습할 때 단지 관련 키워드와 이론 설명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개념 학습과 기출문제 학습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수능 기출은 방대하고 깊고 복잡한 철학(실천 윤리학)적 개념을 ‘어디까지가 수능의 범위’인지 평가원이 제시하고 제한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능 기출을 개념 공부의 처음이자 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제시문과 선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제시문을 독해할 때는 해당 사상 혹은 사상가의 입장을 명확히 사실적으로 독해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공부한 개념과 기출된 제시문과 선지들의 내용을 통해서 꼼꼼히 추론적으로 독해해야 한다. 그 다음 선지를 논리적인 명제로 분석하여 옳고(True), 그름(False)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개념, 방금 진행한 제시문 분석, 논리적 명제 판정 능력(선지 판단력, 독해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해야 한다.⁹⁾

개념 공부에서 ‘기존의 공부한 개념 적용 - 제시문의 독해 - 선지의 분석’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반복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쌓여나갈 것이다. 이것은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1(1권), Part2(2권)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한 내용이다.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의 Part1은 방법론의 제시를, Part2의 해설은 방법론의 적용을 예시로 보여주었다.

특히 Part2의 문항 해설은 제시문 분석(사실적 독해 > 꼼꼼한 추론) ⇒ 선지 분석(개념, 논리 분석)의 순서를 따르고 있으니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를 공부한 학생들은 분석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봄에 개념 공부법과 기출문제 분석법을 배우고 적용하여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새로운 공부 방법을 체득한다면 분명 수능에서 ‘뒤통수’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4~5월 경 무료로 배포한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책을

읽어본 학생이라면 위에서 약속한 공부법 (1)~(3)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부법은 ‘이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공부할 때 ‘적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1권(Part1), 2권(Part2)에서 강조한 위 공부법 (1)~(3)은 이번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통합 분석서 (Part3)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설명과 수십 개의 문항 해설에 상세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올바른 공부법을 체득하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예] 롤스의 절차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공부한다.

교과서, 수능특강 서술 절차적 정의의 관점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분배는 공정하다고 봄.

실제 문항

• 2014학년도 수능 7번 문항

㉔ 선지 :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 ⇒ 정답률 : 63%

•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문항

㉔ 선지 : 롤스는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가? ⇒ 오답 선지 비율 : 54%, 정답률 : 30%

∴ 교과서, 수능특강에 간단히 한 줄로 적혀 있는 것이 실제 수능, 평가원에서는 까다롭게 변형된다. 그리고 한번 기출된 개념(선지)은 더욱 진화하여 출제된다.

그렇다면 롤스의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스토리텔링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겠다.

(다음은 현자의 둘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55~57p에서 서술한 내용이다.)

① 제 1원칙 : “모든 사람은 자유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② 제 2원칙 :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만 허용될 수 있다.”

a. 차등의 원칙 : 최소 수혜자(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가장 큰 도움)을 보장해야 한다. ⇒ 최소 극대화

b. 기회 균등의 원칙 :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직위나 직책들은 기회의 평등에 따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롤스의 정의론은 절차적 정의론이다. 이때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의 의미를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문항

㉔ 선지 : 롤스는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가? ⇒ 오답 선지 비율 : 54%, 정답률 : 30%

작년 6월 평가원 5번 문항은 70%의 학생들이 틀린 문항이다. 특히 선지 ㉔는 54%의 학생들이 고른 함정 선지였다. 일반적인 선지 ㉔의 해설은 ‘취득, 양도’의 절차를 강조한 것은 노직이므로, ‘노직’의 입장에서 옳은 선지이다. 그러나 이는 일관성 없는 잘못된 해설이다. 그런 논리라면 9월 평가원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 라는 선지도 노직이 동의할 것이므로 틀린 선지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9월 평가원의 정답 선지였다.

해당 문항은 선지 ㉔를 ‘롤스’의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이 선지를 틀린 것은 노직이 ‘취득 및 양도의 절차’를 강조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취득 및 양도의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지 ㉔는 롤스의 ‘절차적 정의’와 관련하여 해설해야 한다.

이 선지는 다음 선지와 동일한 것을 물어보고 있다.

9) 이에 대한 예시는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의 분석들과 이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통합 분석서의 문항 분석들이다.

• 2014학년도 수능 7번 문항

⑤ 선지 :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 ⇒ 정답률 : 63%

2014학년도 수능 이후 학생들은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공부했다. 롤스의 ‘절차적 정의’는 더 이상 어려운 개념이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② 선지>는 분명 롤스의 ‘절차적 정의’를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0% 이상의 학생들이 ‘롤스의 입장에서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를 옳은 선지로 선택했다. 이것은 ⑤번 선지를 단순히 암기했을 뿐 롤스의 ‘절차적 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롤스의 절차적 정의란,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말한다.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은 제 1, 2원칙에 합의하였고, 합의된 원칙에 근거한 절차에 따른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이다. 선지 ②에서는 취득, 양도의 절차가 공정성(정의)을 담보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롤스에게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취득, 양도의 절차’가 아닌 ‘정의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즉 롤스는 ‘취득, 양도의 절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만수르가 100억 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취득, 양도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만수르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수십조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운이므로 정당하지 않다. 만수르의 부는 왕족과 평민의 신분적 구분에 따른 것이므로 제 1원칙 ‘기본적 자유의 평등’에 위배되며, 왕족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②-b.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족하지도 못한다. 만수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한 취득 및 양도 절차에 따라 구입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롤스가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만수르가 자신의 부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등 ②-a. 차등의 원칙을 지키려 해도 제 1원칙에 위배 되므로 만수르와 평민 사이의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 1원칙은 제 2원칙에 항상 앞선다.)

〈출처 :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2〉

● 수능/평가원 적중 : 트렌드 파악하기

생활과 윤리의 개념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 과정 이후에는 평가원 모의고사, 교과서, EBS교재를 분석하여 수능의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교재와 강의는 그러한 트렌드를 학생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1. 적중 지문 & 선지

1) 2016학년도 수능 적중 내역 : 20문항 중 9문항 적중

2016학년도 수능 문항	현돌모(출판)	적중 내역
2번	1회 5번, 2회 2번	제시문, 선지
5번	1회 20번, 2회 18번	제시문 모두 적중, 선지 5개 모두 적중
7번	2회 7번	정답 선지 적중
8번	1회 17번	선지 66% 적중
9번	1회 13번	오답 선지 1개, 정답 선지 1개 적중
10번	3회 5번	오답 선지 1개, 정답 선지 1개 적중 → 기출된 경우가 없었던 신유형, 킬러 선지 적중 (장자 & 에피 : 생사는 순환한다.)
17번	2회 19번	정답 선지 적중
18번	부록 개념 칼럼	정답 선지, 오답 선지 적중
20번	4번, 개념 칼럼	제시문 적중, 선지 적중

※ 실제 적중 사례(사진)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log.naver.com/cucuzz/220538401151>)

2)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적중 및 트렌드 예측 내역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적중 및 트렌드 예측 내역
3번 요나스	Part1 17p Part2 98~99p	개정 교육과정 단독 문항 출제 예측 오답 선지 ㉔, ㉕, ㉖ 적중
4번 생사관	Part2 7p	정답 선지 ㉔ 적중
6번 정보 윤리	Part1 17p	'잊힐 권리' vs '알 권리' 비교 문항 출제 예측
7번 환경 윤리	Part2 96p	갑(레건), 을(칸트) 제시문 적중 정답 선지 ㄱ, ㄷ 모두 적중 오답 선지 ㄴ, ㄹ 모두 적중
10번 니부어	Part2 60p	정답 선지 ㄷ, ㄹ 적중
11번 노직 분배 정의 윤리	Part2 82~91p	제시문 내용(노직의 롤스 차등의 원칙 비판, 잘못된 강탈) 예측 정답 선지 ㉔ 오답 선지 ㉑, ㉒, ㉓, ㉕ 모두 적중
12번 칸트, 베카리아 사형제	Part2 34~49p	정답 선지 ㉕ 적중 오답 선지 ㉑, ㉒, ㉓ 적중
14번 칼뱅 (막스베버)	Part2 63p, 66~68p	오답 선지 ㉑, ㉒, ㉕ 적중 (칼뱅부분)
18번 갈통 평화론	Part1 22p	출제 트렌드 예측
19번 해외원조	Part2 76~81p	제시문 갑(싱어), 을(노직), 병(롤스) 모두 적중 정답 선지 ㄱ, ㄴ 모두 적중 오답 선지 ㄷ, ㄹ 모두 적중

※ <http://blog.naver.com/cucuzz/22080577759>

3)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적중 내역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적중 및 트렌드 파악 내역
7번 왈처 정의전쟁론	Part1 22p	출제 트렌드 파악
8번 분배 정의 윤리	Part2 82~88p	정답 선지 ㉓ 적중 오답 선지 ㉑, ㉒, ㉔, ㉕ 적중
10번 환경 윤리	Part2 92~100p	제시문 을, 병 적중 정답 선지 ㄷ, ㄹ 적중 오답 선지 ㄱ, ㄴ 적중
13번 해외 원조 윤리	Part2 81p	피터 싱어 선지 ㉓, ㉔, ㉕ 적중
14번 사법 정의 윤리	Part2 34~49p	제시문 갑(공리주의), 을(칸트) 적중 정답 선지 ㄱ, ㄴ 적중 오답 선지 ㄷ 적중

※ <http://blog.naver.com/cucuzz/220806257518>

2017학년도 6, 9월 모의평가 종합 총평 및 학습법

●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먼저 개념적으로는 작년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관점에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다. 특히 평가원과 출제진(교수님, 선생님)들이 2016학년도 수능 문항들에서 물어보고자 했던 내용들이 확장된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물론, 시민불복종 등의 신개념이 출제되긴 했다.) 그리고 유형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더 진화된 문항이 출제되었다. 예컨대 8번의 삼단논법 유형, 10번의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을 할 질문’ 유형, 11번의 제시문 + ‘상황 → 결과’ 적용 유형 정도를 들 수 있다.

한편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개념적으로도 유형적으로도 새로웠던 모의고사였다. 먼저 개념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3번), 하버마스의 인간복제에 대한 입장(5번), 왈처의 정의전쟁론(7번), 내부 고발(9번), 형벌에 대한 일반 예방주의와 특수 예방주의(14번), 아도르노의 대중문화론(15번), 규칙공리주의(16번), 엘리야데 & 도킨스 종교관(17번) 등 작년까지의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또한 유형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했던 시험이었다. 1번에서는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의 입장이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5번에서도 6평에서 출제되었던 삼단논법 유형이 출제되었다. 19번에서는 무려 갑을병정 네 입장을 분류하여 ㄱ~ㄹ 선지 판단을 하는 유형이 출제되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제시문 독해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논증문, 논술문, 설명문 등)

작년 수능을 분석한 ‘현자의 돌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를 기준으로 볼 때,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우 20문항 중 10개의 문항을 적중한 반면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겨우 5문항 밖에 적중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만큼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작년 수능에서 다루지 않았던 신개념을 많이 출제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제시문 독해 유형이 많이 나온 것도 적중을 많이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려웠다. 타 과목과 난이도를 비교해보자.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1 ~ 3등급 원점수 커트라인

사회탐구 과목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생활과 윤리	43	40	35
세계지리	47	42	37
세계사	47	43	35
한국지리	45	42	36
동아시아사	45	43	38
경제	47	44	40
법과 정치	48	42	38
경제	47	43	33
윤리와 사상	47	43	39
사회문화	47	44	40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정답률 80% / 50% 미만 비교

사회탐구 과목	정답률 80% 미만	정답률 50% 미만
생활과 윤리	10 문항	4 문항
세계지리	11 문항	1 문항
세계사	11 문항	0 문항
한국지리	9 문항	4 문항
동아시아사	7 문항	4 문항
경제	7 문항	0 문항
법과 정치	8 문항	1 문항
경제	7 문항	0 문항
윤리와 사상	6 문항	2 문항
사회문화	6 문항	1 문항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는 생활과 윤리가 타 과목에 비해 정답률 80%, 50% 미만 문항의 비율이 높았다. 단 10 문항만 80~100%였고, 6문항이 50~80%, 4문항이 32~50% 사이에 분포했다. 14문항이 80~100% 정답률 사이에 분포했던 사회문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생활과 윤리가 분명 어렵게 출제된 것이다.

그 원인은 신개념(기존 학자도 생소한 제시문 표현 사용)과 신유형(제시문 길이, 복도 up, 논리 up)의 문항들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간이 항상 10분씩 남는 과목이었던 생활과 윤리가 이제는 제시문이 너무 길어서 ‘국어’ 시험처럼 시간이 부족하고 언어적인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과목으로 변했다.

생활과 윤리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사탐 과목 Top3 (생윤, 한지, 동사)에 들어가는 과목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 점수가 낮아졌고, 힘들어 했다. 하지만 수능에서도 생활과 윤리가 지금까지처럼 어렵게만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 평가원은 사회탐구의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분명 각 과목별 유불리 조절을 위해서 생활과 윤리는 현재보다 쉽게 출제될 것이다. (타 과목과 상대적인 측면에서)

정답률 80% 미만 문항은 8~10개로 조절될 것이고, 정답률 50% 미만 문항도 2~3개로 조정될 것이다. 소위 그냥 주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 2개 정도 늘어날 것이고, 제시문 분량도 줄어들 것이다. 정답률 50% 미만 문항은 전통적인 주제인 ‘사형제(형벌론)’, ‘환경 윤리’, ‘분배 윤리’ 중 1~2문항, 새로운 주제인 ‘시민불복종’, 그리고 논리적인 독해와 판단을 요구하는 독해 문제 1문항이 될 것이다.

정답률 50~100% 문항 16~17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6월과 9월에 출제된 신개념(개정교육과정)들을 숙지해야 한다. 예컨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주거문화가 출제되었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음식문화가 출제되었다. 수능에서는 ‘의식주’ 중 나머지 ‘의복 문화’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패스트 패션’이 가져오는 윤리적 문제점들이 출제될 수 있다. 우리는 음식, 주거 문화 개념을 EBS에 수록된 수준으로 간략하게 공부하되, 의복 문화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공부해야 할 것이다. 다른 신개념들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제시문이 길어져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간단한 개념들도 꼭 반드시 한 번쯤은 보고 시험장에 가야 시간이 부족해서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들을 간단하게 정리, 복습을 하고 나서는 ‘제시문 독해력’과 ‘논리적 판단능력’을 길러야 한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제시문의 논증 구조(주장과 논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독해

문항'들을 틀렸다. 수능에서는 9월 모의평가보다는 더 깔끔하게 제시문이 출제되겠지만 그래도 제시문을 독해하고 선지의 정오를 판별하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답률 50% 미만의 킬러 문항 3~4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념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한다. 정답률 70% 이상의 문항과는 다르게 킬러 문제들은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제시문에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추론하기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부정확할 수 있다.

올해의 6, 9월 모의평가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N수생이라면 잘 알겠지만,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당해 수능에 그 어떤 교재와 사설 모의고사보다 정확하게 반영된다. 작년 평가원에서 처음 출제한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평가원 시험에서 '제시문'에 나온 내용이 수능에서는 그대로 명제화되어 '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바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주제였다.) 기존 해설 강의에서는 '이 제시문은 칸트지?'하고 읽지도 않고 넘어가는 바로 그 제시문 말이다. 따라서 이 분석서에서 다루지 못한 제시문도 꼼꼼히 분석해보는 것이 좋다.

● 수능까지 1달! 지금부터 해야 할 학습 방법

• 올바른 개념 학습,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서 N회독, 공부한 것들 복습 정리 (특히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1. 9월 모의평가 이후 ~ 수능 전 공부 계획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한 후 수능 전까지는 올해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6회 이상 풀며 수능까지 꾸준하게 복습해야 한다. (40문항을 45분 동안 풀고, 스스로 정리한 6, 9월 모평 분석 노트와 현자의 둘 분석서를 함께 보면서 반복 학습하라. 또 가능하다면 마킹 연습도 하자.) 이는 사설 교재나 파이널 인강을 듣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 수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 해의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서와 수능특강, 수능완성 복습, 정리도 해야 한다. 10월 초부터는 자신이 부족한 단원과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수능 전에는 아는 것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은 단순히 개념을 읽고 논리나 스토리 라인을 따라간다고 100% 습득되지 않는다. 새로운 문항들을 통해서 개념을 적용하여 맞아도 보고, 틀려도 보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추천 문제는 역대 고3 + 고2(개정 교육과정) 교육청 기출문제이다. 고2 교육청은 쉽지만 개정 교육과정 문항이 적으므로 풀어보는 것이 좋다. 이전 교육과정의 고3 교육청 문항은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자신이 약한 단원이나 중요한 주제들(사회 정의, 사형제, 환경 윤리 등)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꼭 풀어 보자.

※ 참고

파이널 인강을 수강하는 것도 좋다. 파이널은 두 종류로 나뉜다. 중요 개념과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는 강의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를 3회 정도씩 풀어보는 강의가 있다. 둘 중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골라 하나 정도 수강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그냥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만 여러 번 보면서 EBS를 복습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공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만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아는 개념들이 올바른 개념인지를 확인하고, 오개념을 수정하며, 몰랐던 개념들을 기존의 개념의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특히 수능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개념과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비롯한 각종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등급을 얻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수능 3일 전, 혼동되는 개념이나 선지를 A4 1p 정도 분량으로 최종 정리를 하자. 그리고 뒷면에는 생활과 윤리의 대단원들,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을 간단하게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다. 수능 날까지 생활과 윤리 단원과 빈출 주제들의 마인드맵을 보고 관련 개념과 논리들을 빠르게 연상하며 생활과 윤리 전체 내용을 되새김질하자.

2. 사고력 중심의 사회탐구 학습법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수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성취도 검사와 학습 능력과 소질을 측정하는 적성 검사(지능 검사)가 있다. 학교 내신시험은 성취도 검사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자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수능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려 한다.

문제 해결력이란 ‘사고력’이다. 제시문과 선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사실적 이해력,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추론적 이해력, 주장의 전제를 분석하고 내용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판적 이해력 등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수능을 잘 보려면 사회탐구의 ‘탐구(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적인 측면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교과서 안의 개념을 새로운 유형, 새로운 선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수능 출제자들은 교과서를 출제와 검토의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능 문항은 교과서에 근거한 문항만이 출제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과서를 공부하기보다 인강과 개념서를 활용하여 공부한다. 교과서는 학교 수업을 위한 교재이지 독학용 교재가 아니어서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체계’가 잡혀있어야 한다. 먼저 인강 등을 통해 개념을 배우고, 전체적인 틀을 형성한 후 교과서를 공부하면 좋다.

수능 공부의 기준은 교과서다. 기존에 다른 교재 등에서 배웠던 내용과 교과서의 서술이 다르다면 정확한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자. (개념서, 수특/수완 읽어보기, EBSI.co.kr에 질문하기¹⁰⁾(강추), 선생님께 질문하기). 또한 교과서를 읽으면서 각 단원과 소단원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서술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교과서의 목차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교과서를 읽는다.

생활과 윤리의 전체적인 틀을 만든 후에는 교과서의 대단원과 소단원의 학습목표들에 주목해보자. 수능은 교과서 학습목표들을 반영하여 문제를 출제한다. 교과서의 설명을 통해서 각 학습목표들을 성취한다면 수능에서 출제될 20문항들의 주요 개념들을 충분히 대비한 것이다.

그렇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공부하여도 실제 수능에서는 공부하지 못한 내용이나 친숙하지 않은 주제, 제시문, 선지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 문항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개념서의 읽기 자료를 읽으며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깊게 따져보는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실제 문제들을 접할 때 ‘모르는 내용’이라고 가정하고, 아는 내용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 좋다. 제시문을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제시문의 논리에 따르면서 ‘①~⑤ 선지는 각각 어떻게 판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적 풀이를 생각해보자.

● 반수생을 위한 조언

수능 한 달을 남긴 반수생에게 별도로 몇 가지의 조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이 분량이 많고 글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전한다. 국영수 공부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분량이 적은’ 생활과 윤리일 것이다. 딱 말해주겠다.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1회독하고 난 뒤 ‘현자의 돌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서¹¹⁾’의 3-1, 독해력과 논리력으로 풀리는 문항 방법론과 EBS 개념 설명 부분(자료 위주로), 틀린 문항’만 반복해서 보자.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기출 문제집을 사서 풀어도 좋다. 하지만 인강이나 그 이외의 다른 문제집들은 절대로 비추한다.

굳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다면, 올해 교육청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들을 풀어보거나 수능완성 실전편을 풀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름방학 기간에 생활과 윤리를 열심히 공부한 반수생들은 이 조언 말고, 위의 ‘수능까지 1달! 지금부터 해야 할 학습 방법’을 참고하라.)

10) EBS 통합 QnA

<http://www.ebsi.co.kr/ebs/pot/pots/retrieveQNAsearchList.ebs?parentClasCode=A100&grade=high3>

11) 구할 수 있다면 ‘현자의 돌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도 보면 좋다.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1

: 독해력과 논리력으로 풀리는 문항 / 제시문 & 선지 분석 트레이닝

● 챕터 소개

Part3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1(이후 Part3-1 표기)에서는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제시문과 선지를 논리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독해 문항을 주로 다룰 것이다. 2017학년도 6,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들은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논리적 복잡성이 심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한 문항들을 풀기 위해서 시간을 과도하게 소비한다면 정작 어렵고 정답률이 낮은 킬러 문항들을 해결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Part3-1에서 다루는 제시문 독해, 선지 분석 방법을 철저히 체화한다면 2017학년도 수능에서 ‘독해 문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고, 킬러 문항에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석서에서 다루는 문항들을 반복하여 풀고, 기존의 기출문제 중 제시문 독해형 문항들에 적용해보는 것이 좋다. 적용해볼 문항은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제시문과 논리의 복잡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를 갖고 있는 학생은 Part1에서 다뤘던 문항들을 다시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

기존의 강의와 해설 강의에서는 독해형 문항을 풀 때, 사후적인 해설을 하곤 한다. 선생님들은 독해형 문항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푼다. 그렇지만 그런 해설은 오히려 문제풀이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나는 문항은 기출 문항과 다른 문항이기 때문이다.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항을 간단하고 쉽게 풀 수 없다. 만약 그 문항의 논리적 구조가 이전 기출문항과 다르고, 심지어 함정까지 있다면 어쩔 것인가? 예컨대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은 단순하게 ‘갑 : 정보 공유론 vs 을 : 정보 사유론’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이었다. 하지만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된 9번은 갑과 을 모두 기본적으로 정보 사유론의 입장을 취하지만 세부 쟁점인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의 필요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1 33~41p를 참고하자.) 이 문항을 단순히 ‘정보 공유론 vs 정보 사유론’ 패턴으로 풀었던 많은 학생들이 났었다. ‘멋진 풀이’의 함정이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말이다. 선생님은 멋진 발상과 공식으로 3줄 풀이를 구사하지만 학생들은 수능에서 그런 발상을 하지 못해 계산으로 밀어 붙여 겨우 풀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과 비슷하다.

이 분석서의 Part3-1에서는 독해 문항들을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풀어내는 방법과 ‘깔끔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병렬적으로 다룰 것이다. 실제 시험장에서 독해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무식하지만 빠르게’ 풀어낼 수 있도록 ‘무식한 풀이’도 연습해야 한다.

★ 주의할 점 : 독해 문제는 제시문과 보기를 충분히 꼼꼼히 분석하고¹²⁾ 나서 선택지를 보자. 그래야 틀리지 않는다. (선지랑 같이 고려하면 복잡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 N사람이 긍정 / 부정 유형

-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
-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9번 (세 사람이 부정)

1. 유형 소개

해당 유형은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처음 등장한 유형이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우, 니부어와 개인윤리주의 학자의 입장에서 <보기> ㄱ~ㄹ의 질문에 긍정, 부정 중 어떤 대답을 할지 판단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이 문항은 니부어의 기본적인 입장을 개념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이라는 처음 보는 발문(문두)을 제시하여 복잡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우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내적 책임, 외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 제시문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갑, 을, 병, 정 네 명이 <보기> ㄱ~ㄹ의 질문에 긍정, 부정 중 어떤 대답을 할지를 판단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이 문항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깊은 개념 학습이 없이도 기존의 기출문제(과학의 가치중립성, 윤리적 책임 주제 : 2015학년도 수능 10번, 2015학년도 9월 모평 20번 등)들 정도만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다면 개념적으로 부족한 점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4명의 입장에서 ㄱ~ㄹ을 판단해야 하고,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져서 시간을 많이 쓰고 결국 오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었다.

2. 유형 해결 방법

해당 유형을 해결하는 단순하지만 느린 방법은 발문에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해당 유형을 해결하는 복잡하지만 빠른 방법은 발문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 일종의 여사건으로 생각해보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 문항에서 발문으로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 주어졌다.

단순한 해결 방법은 말 그대로 갑과 을 사상가가 ㄱ~ㄹ 질문에 대해서 긍정의 대답을 할지를 찾는 것이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갑○을○ / 갑○을× / 갑×을○ 세 가지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 문항을 해결하는 빠른 해결 방법은 해당 발문에서 요구하는 것의 반대 경우를 찾는 것이다.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할 질문을 찾으려면 3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갑, 을 모두 부정할 질문 : 갑×을×’을 찾아서 제외하면 1가지 경우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9번 문항에서는 발문으로 ‘다음 글의 갑~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 주어졌다.

단순한 해결 방법은 말 그대로 갑, 을, 병, 정이 ㄱ~ㄹ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비교해서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 사람만 긍정을 할 질문’을 찾는다면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다.^{13) 14) 15)}

12) 분석 방법은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1 참조

13) 여사건 개념으로 보면, ‘갑~정 모두가 부정할 질문’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갑, 을, 병, 정이 ‘내적 책임 & 외적 책임’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있는 질문은 없다.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의 경우의 수 = $2^2 = 4$ 가지 = 갑, 을, 병, 정 4인)

14)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모두 부정할 선지는 없었으나 앞으로 모두 부정할 선지가 출제될 수도 있다. 주의하자.

15) 그러나 19번 문항의 경우 훨씬 쉽게 푸는 3번째 풀이도 존재한다. 그것은 아래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겠다.

정리

-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 ~ (갑과 을 모두 부정할 질문)¹⁶⁾
- 갑~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3.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 제시문 & 선지 분석 트레이닝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9번

난이도 : 상, 오답률 51%

19. 다음 글의 갑~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 자체에만 한정된 책임이며, 외적 책임은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갑	있음	있음
을	있음	없음
병	없음	있음
정	없음	없음

<보 기>

-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연구해야 하는가?
- ㄷ. 과학자는 연구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과정에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제시문 분석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 = 내적 책임 / 외적 책임

- 내적 책임 : 연구 자체에서만 윤리적 책임
- 외적 책임 :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윤리적 책임

<보기> 선지 분석

-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¹⁷⁾ 내적 책임 × & 외적 책임 ○
-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 자유롭게 연구해야 하는가? 내적 책임 × & 외적 책임 ×
- ㄷ. 과학자는 연구자체만이 아니라 /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내적 책임 ○ & 외적 책임 ○
-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 연구 과정에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가? 내적 책임 ○ & 외적 책임은 언급 안함.

많은 학생들이 ㄹ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ㄹ은 ‘연구 과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고, ‘연구 과정’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단순한 풀이 방법

19. 다음 글의 갑~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 자체에만 한정된 책임이며, 외적 책임은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갑	있음	있음
을	있음	없음
병	없음	있음
정	없음	없음

<보 기>

	갑	을	병	정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내적 책임 ×} 사회적 ^{외적 책임 ○}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	×	○	×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내적, 외적 책임 ×} 연구해야 하는가?	×	×	×	○
ㄷ. 과학자는 연구 자체만이 아니라 ^{내적, 외적 책임 ×}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	×	×	×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적 책임 ○} 연구 과정에서 ^{외적 책임 ○}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가?	○	○	×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갑, 을, 병, 정 모두의 입장을 판별해준다.

갑에 ㄱ, ㄴ, ㄷ, ㄹ를 판정하고 / 을에 ㄱ, ㄴ, ㄷ, ㄹ를 판정하고 / 병에 ㄱ, ㄴ, ㄷ, ㄹ를 판정하고 / 정에 ㄱ, ㄴ, ㄷ, ㄹ를 판정하는 것보다 ㄱ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입장을 ○× 표시하고 / ㄴ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입장 / ㄷ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입장 / ㄹ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입장 이렇게 <보기>의 항목별로 갑, 을, 병, 정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16) ~는 not이다. 수학2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배우는 'A = ~(~A)' 이런 기호를 생각해보면 된다.
 17) 선지 분석 Tip : 국어와 사탐에서 선택지는 모두 명제이다. 명제는 조건 p→q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명제는 최소한 2개의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 선택지의 경우 3개 이상의 조건으로 나누어 질 수도 있다. 국어와 생활과 윤리에서 선지를 판정할 때는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나눠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주로 주부와 술부로 나누거나 수식어구에 주목해 나누면 된다.

② 빠른 풀이 방법

19. 다음 글의 갑~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 자체에만 한정된 책임이며, 외적 책임은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갑	있음	있음
을	있음	없음
병	없음	있음
정	없음	없음

<보 기>

	갑	을	병	정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내적 책임 ×} 사회적 ^{외적 책임 ○}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내적, 외적 책임 ×} 연구해야 하는가?				○
ㄷ. 과학자는 연구 자체만이 아니라 ^{내적, 외적 책임 ×}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적 책임 ○} 연구 과정에서 ^{외적 책임 ○} 표절을 해서 안 되는가?				○

내적 책임 강조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ㄱ, ㄴ, ㄷ, ㄹ에 대해서 동의할 입장에만 ○를 치는 것이다.

각 선지에서 요구하는 내적 책임 ○, × / 외적 책임 ○, ×를 먼저 표시한 다음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표시할 필요도 없다.

③ 더 빠른 풀이 방법

발상의 전환, 한 단계 더 나아가간다.

사실 위 두 방법은 모두 갑, 을, 병, 정을 기준으로 <보기> ㄱ~ㄹ를 판정했다. 부정의 대답을 할 사람을 찾는 것과 긍정의 대답을 할 사람을 찾는 것 정도의 차이이다. 물론 위 두 방법도 잘만 하면 괜찮다. 하지만 너무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4명 × 4개의 <보기> 선지 = 16가지 조합) 실수할 수 있다.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단계를 나눠서 풀면 사고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1단계] 제시문을 잘 읽고, 제시문에서 윤리적 책임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다. 또한 도표에서도 표의 왼쪽은 갑, 을, 병, 정이지만 표의 상단은 내적 책임 / 외적 책임으로 구분이 되어있음을 판단한다.

갑, 을, 병, 정 각각 개인의 입장이 아닌 제시문과 선지를 대응시켜서 각 선지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중 무엇을 ○, ×라고 생각하는지를 판단한다. (아래처럼 ○×를 옆에 적어야 함)

19. 다음 글의 갑~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 자체에만 한정된 책임**이며, **외적 책임은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갑	있음	있음
을	있음	없음
병	없음	있음
정	없음	없음

<보 기>

- | | |
|---|---------------|
| | 내적 책임 / 외적 책임 |
|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 × ○ |
|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연구해야 하는가? | × × |
| ㄷ. 과학자는 연구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 ○ ○ |
|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과정에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가? | ○ 언급 안 함.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단계] 그리고 나서 각 <보기> 선지 ㄱ~ㄹ의 내용을 보고 표의 갑, 을, 병, 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 ㄱ~ㄹ을 내적 책임 / 외적 책임 ○×를 해놓은 것을 보고 갑, 을, 병, 정 의 입장과 대응시킨다. 물론 여기서 위에서 말한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는 방법을 써야 한다.

19. 다음 글의 갑~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 자체에만 한정된 책임**이며, **외적 책임은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갑	있음 ○	있음 ○
을	있음 ○	없음 ×
병	없음 ×	있음 ○
정	없음 ×	없음 ×

<보 기>

- | | |
|---|---------------|
| | 내적 책임 / 외적 책임 |
|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 × ○ |
|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연구해야 하는가? | × × |
| ㄷ. 과학자는 연구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 ○ ○ |
|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과정에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가? | ○ 언급 안 함.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대응은 눈으로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다.

ㄱ은 ×○이므로 오직 병만 동의할 것이다. ㄴ은 ××이므로 오직 정만 동의할 것이다. ㄷ은 ○○이므로 오직 갑만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ㄹ은 내적 책임만 ○이므로 갑과 을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고려할 사항이 훨씬 적은 방법으로 실수할 확률이 적고, 문제풀이 속도도 더 빠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후적’인 부분이 있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시 나오면 쓸 수 있지만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없고, 응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 이 방법도 숙달이 되면 시험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말고도 위에 있는 단순한 풀이 방법, 빠른 풀이 방법으로도 19번 문항을 여러 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수능에서 19번 같은 유형이 출제되면 실수할 확률도 높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꼭꼭 연습을 해두면 좋겠다.)

번호	정오	정답	선택 답	난이도	배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1	2	3	4	5
19	-	㉠	-	상	2	49%	32%	9%	5%	49%	4%

● 쟁점별 독해 유형

-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복합 비교)
-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 (단순 비교) + 연습용 기출문항

1. 유형 소개

이 유형은 특정 쟁점에 대한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는 유형이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갑 : 찬성 vs 을 : 반대’ 구도의 유형이 출제되었지만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는 갑과 을이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입장이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인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곤 했다. 이 경향은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까지 이어졌으며, 수능에서도 그러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유형을 푸는 방법을 익혀둘 것을 추천한다.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1 33~42p 참고)

2. 유형 해결 방법

보통 이 유형은 갑과 을의 입장이 제시문으로 제시된다. 제시문을 읽을 때, 갑과 을의 의견을 특정 방식으로 분류하여 정리,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은 각 제시문의 입장을 ‘주장 + 논거(근거)’로 정리하는 것이다. ⇒ 각 제시문을 단독으로 정리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두 제시문의 입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독해하는 것이다. ⇒ 두 제시문을 특정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 정리

이 두 가지 문제풀이 방법론을 각각 적용해서 유형 연습용 기출문항들을 추가로 풀어봐야 한다. (두 방법을 모두 익혀놓아야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할 확률이 적다.)

3.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 제시문 & 선지 분석 트레이닝

1) 단순 비교형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

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몇 해 전 우리나라 법원은 환자가 원한다면 자기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걸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어. 이것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올바른 판결로 봐야 해.

을 : 인간의 생명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야. 아무리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자기 생명은 자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야.

<보 기>

- ㄱ. 갑 : 개인은 자기 생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 ㄴ. 갑 : 안락사 허용은 결과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주장한다.
- ㄷ. 을 : 생명의 종식 여부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
- ㄹ. 을 :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도덕적 행위임을 주장한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개별 제시문 논증 구조 분석 :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 환자가 원할 경우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은 올바르다.
 - 논거 1 :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 논거 2 :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허용해야 한다. (or 환자는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 [을] - 주장 : 환자가 원할 경우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은 잘못되었다.
 - 논거 1 :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존엄한 것이므로 자신의 생명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

② 쟁점별로 두 제시문을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 안락사 허용 판결은 올바른가?		○	×
쟁점 B : 인간은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지니는가?		○	×
쟁점 C : 안락사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택인가?		○	언급 안 함.

제시문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제시문을 분석하고 나서 선택지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을 분석하기 전에 선택지부터 보면 제시문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고, 시간도 낭비되므로 별로 좋지 않다. 제시문을 분석한 후에 선택지를 보자.)

<보기> 선지 분석

- ㄱ. 갑 : 개인은 자기 생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 쟁점 B, ○
 자기 생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란, 자신의 생명에 대해 타인을 배척/배제함으로써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ㄴ. 갑 : 안락사 허용은 결과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주장한다. ⇒ 쟁점 C, ○

제시문의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곧 선지의 ‘안락사의 결과로부터 가져올 이익을 고려하는 것’임을 개연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수능특강 38p에 따르면 찬성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거이다. 따라서 갑의 입장으로 옳은 선지이다.

※ 참고 ① 개념 정리

수능특강 38p 안락사에 대한 입장¹⁸⁾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신체와 생명,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과도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며, 환자 본인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공리주의적 관점)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임. •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생명의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함. (자연법 윤리와 의무론적 관점)

ㄷ. 을 : 생명의 종식 여부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 ⇒ 쟁점 B, ○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종식시킬 수 없다는 입장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안락사 반대 입장인 을이 주장할 수 있는 논거이다.

ㄹ. 을 :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도덕적 행위임을 주장한다.

을은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볼 것이다. 안락사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락사 찬성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안락사,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치료 불가능한 고통스러운 병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더 알아보기

• 갑이 칸트 윤리학의 입장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갑과 을을 비교하는 쟁점별 독해 문항의 경우 발문에 ‘갑과 을 사상가’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특정한 윤리학적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선지를 판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제시문과 선지가 100% 대응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연적으로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정도 누구나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 맞다고 봐야 한다. 독해형 문항에서 과도히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시간의 지연을 발생시키고 킬러 문항에 투자할 시간과 주의력을 분산시킨다. 따라서 제시문 독해(주장 - 논거 분석, 쟁점별 분석)에 집중하자.

하지만 ‘갑’이 어떤 입장인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코멘트를 하겠다. 위 문단에서 말했듯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냥 제시문 독해로 풀면 된다.

그렇지만, 어떤 학생은 갑이 ‘공리주의’의 입장인지, ‘칸트 의무론’의 입장인지를 고민할 수도 있다. 만약 갑이 ‘칸트 의무론’의 입장이라면, 갑은 ‘안락사 허용은 결과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주장한다.’는 ㄴ 선지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갑은 ‘환자가 원한다면 자기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을 ‘올바른 판결’이라고 보았다. (주장) 그 논거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준다.’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허용해야 한다.’를 들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논거인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은 물론 칸트 의무론의 입장에서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논거이다.¹⁹⁾

※ 참고 ②

현자의 돌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2 : 35~38p

부자인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행복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울 마음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우한 것도 아니며, 그들이 나와 평등한 존재이고, 이성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소극적 목적으로 대우(침해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한다면 그 사람들은 인간성을 발휘하기 더 쉬울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배고픔, 고통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에 영향을 심하게 받을 경우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예컨대 너무나 가난해서 며칠 동안 밥을 굶은 사람은 배고픔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둑질을 할 수 있다. 고통은 사람이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단순히 '윤리적 존재'를 인정하는 소극적 자유에서, '윤리적 주체'가 성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확장된 의무로 이어질 수 있다.

cf) 우리는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우리가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인간을 목적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해야 하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칸트의 해외원조 입장으로 EBS 수능특강 190p에 제시)

칸트는 고통에 빠진 사람들,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의무론의 관점에서 도우라고 말한다. '고통을 덜어준다.'라는 말에서 '고통=공리주의'라는 키워드 중심 1차원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 제시문 '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칸트가 동의한다고 해서 갑이 칸트 의무론의 입장이라는 것은 아니다.

논거를 동의한다고 해서 주장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파 정치인이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논거로 삼아서, '부자 감세 정책'을 주장한다고 해도 좌파 정치인은 같은 논거인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어서 '부자 감세 정책'을 반대할 수 있다.

게다가 '안락사, 존엄사'와 같은 행위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은 가치 명제라기보다 사실 명제에 가깝다. '안락사, 존엄사'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제를 부정할 사람, 철학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가족의 죽음으로부터 얻는 새로운 고통이 안락사, 존엄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통의 경감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예컨대 내가 '무고한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한다.(주장)' '인간은 결국 죽기 때문이다.(논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증(주장-논거)을 썼다고 하자. 칸트와 공리주의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논거인 '인간은 결국 죽는다.' 라는 사실 명제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고 칸트든 공리주의든 어떤 철학자도 '무고한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현자의 돌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2』 35~38p로 돌아오자. 분석서 37p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예시 1. 자살을 하는 경우 :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자살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내가 나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나 자신이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 즉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나는 나 자신을 목적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단지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한 것이다.”^{20) 21)}

결국, 칸트는 갑의 주장인 '환자가 원한다면 자기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인간은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지닌다.'는 입장에 반대할 것이다.

18) 수능특강 38p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다.
19) 칸트는 갑과는 달리 안락사는 반대하지만 제시문에서 갑이 안락사 찬성 논거로 제시한 '논거'인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물론 칸트는 안락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고 볼 것이다.
20)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칸트가 직접 '생명 보존'은 인간의 의무이므로, '자살'은 비윤리적이라고 말한다.
21) 칸트의 '생명 보존의 의무', '자살은 비윤리적'은 비상예외 생활과 윤리 교과서 33p에도 서술되어 있다.

한편, 제시문의 갑을 굳이 공리주의의 입장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전제를 공리주의가 자신의 주장의 전제로 삼는 것은 좀 어색하다. 그냥 특정 철학자가 아닌 이웃집 갑돌이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자.) 어쨌든 제시문과는 별개로 수능특강은 '선지 ㄴ'을 공리주의에서 동의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ㄴ을 공리주의는 동의하고 칸트 의무론은 반대한다는 점은 알아두기는 하자. (10~11월에 수능특강, 수능완성 개념 서술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자.)²²⁾

2) 단순 비교형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번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장발장은 전과자 신분을 숨기고 시장이 되었어.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잊거나 지우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어서 타인이 볼 수 있지.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해.
 을 : 장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를 시장으로 뽑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아야만 했다고 봐.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해.

<보 기>

- ㄱ. 갑 :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 ㄴ. 갑 :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 ㄷ. 을 :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ㄹ. 갑, 을 :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1 : 공직자(시장)인 장발장에게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논거 1 :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어서 타인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을] - 주장 1 : 장발장에게 '잊힐 권리'를 보장하지 말아야 한다.
 - 논거 1 : 장발장이 시장(공직)에 지원한 경우, 시민들은 그의 과거를 알 권리가 있었다.
 - 논거 2 : 시민은 '알 권리'가 있으므로 공직 후보의 과거와 같은 누구나 알아야 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쟁점별로 두 제시문을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 신분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으로부터 지울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가? (알 권리와 무관하게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	×
쟁점 B :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삭제를 금지해야 하는가?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 잊힐 권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	○

〈보기〉 선지 분석

ㄱ. 갑 :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 쟁점 A, 갑 ○

ㄴ. 갑 :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 쟁점 A, 갑 ×

갑은 알 권리와 무관하게 잊힐 권리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것은 을이 동의할 것이다. 을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장발장의 잊힐 권리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장발장이 잊힐 권리를 행사하여 온라인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삭제할 경우,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ㄷ. 을 :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쟁점 B, 을 ○

을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인(公人)인 시장 장발장이 자신의 사생활(과거 전과자 신분)을 감출 수 없도록 제한한다.

ㄹ. 갑, 을 :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 쟁점 A, 을 ×

갑은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잊힐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는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어느 정도는 강한 입장으로 볼 수 있고, 과도하게 해석하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을은 시민적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발장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이 선지 ㄹ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선지 ㄹ은 확실하게 틀렸다.

3) 단순 비교형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5.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인 출산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다.
을 :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 :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② 갑 :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을 :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④ 을 :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갑, 을 :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1 : 성에 대한 책임은 최대화하고, 성에 대한 자유는 최소화해야 한다.
- 논거 1 : 성은 성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출산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논거 2 :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기 때문이다.

22)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쓴 이유는 이 문항과 관련하여 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이 문항에 오류가 없다는 답변만 하였고, 구체적인 해설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저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답변을 서술한 것이다.

- [을] - 주장 1 : 성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하고, 성에 대한 자유를 최대화해야 한다.
- 논거 1 :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 주장 2 : 강제, 무지, 기만에 의한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논거 1 : 성에 관한 결정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쟁점별로 두 제시문을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성의 목표는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생식적 가치에 있는가?		○	×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
강제, 무지, 기만에 의해 이뤄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는가?		○	○

선지 분석

- ① 갑 :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갑이 동의할 수 있는 선지이다. 갑은 성이 출산, 가정에서의 안정적 자녀 양육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곧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의미한다.
- ② 갑 :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갑이 동의할 수 있는 선지이다. 갑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성에 대하여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최대한의 책임은 문맥상 결혼을 통한 가정의 성립, 성을 통한 자녀의 출산, 안정된 자녀의 양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에 대하여 최소한의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은 곧, 성관계에 있어서 자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유는 부부간의 배타적인 성관계,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이 선지에 대하여 동의할 것임은 개연적으로 타당하다.
- ③ 을 :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을이 동의할 선지이다. 을은 ‘성에 관한 결정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곧 성의 필요조건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성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임을 알 수 있다.
- ④ 을 :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
 을이 동의할 수 있는 선지이다. 을은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강제, 무지, 기만’에 의한 성은 개인이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의사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성적 판단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신체의 자유, 충분한 정보 제공 등)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 ⑤ 갑, 을 :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
 갑과 을 모두 반대할 것이다. 갑은 성관계는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질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을은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 하자는 입장이지만, 결국 일정 부분 책임을 지기는 한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개인의 자유의사를 발휘할 수 있다며, 자유의사의 행사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에서 해당 선지를 고찰해볼 때, 아무리 개인 간 합의를 했다고 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을 역시 성(성관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4) 복합 비교형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을 : 찬성합니다. 다만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갑 :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대리 동의는 단지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②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 ③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갑] - 주장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 논거 1: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 주장 2: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 논거 1: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을] - 주장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 논거 1: ×

- 주장 2: 어린이는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

- 논거 1: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 주장 3: 부모는 어린이의 임상 시험 참여를 대리 동의할 수 없다.

- 논거 1: 임상 시험에서는 피험자(시험 참가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논거 2: 부모의 대리 동의는 개인적 보상(예) 부모가 얻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임상 시험만이 정당한가?		○	○
쟁점 B : 어린이는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가?		○	×
쟁점 C : 부모는 어린이의 임상 시험 참여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가?		○	×

선지 분석

- ①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
 ⇒ 위의 문제풀이 방법 적용 중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의 갑의 주장 2와 을의 주장 3 또는 ‘쟁점별로 분석하기’의 쟁점 C
- ②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
 ⇒ 갑이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을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란 갑과 을이 토론을 하면서 논하는 중심이 되는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 토론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 을이 마지막에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대리 동의에 근거한 임상 시험을 부당하다고 말했지만 갑은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 ⑤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
 ⇒ 둘 다 동의할 질문이다. 하지만 토론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오히려 갑과 을이 하는 토론의 기본 전제로 볼 수 있다. (쟁점 A)

5) 복합 비교형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번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갑 : 아닙니다.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을 :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악성 댓글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1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논거 1 :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주장 2 :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논거 1 :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을] - 주장 1 :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 논거 1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 주장 2 :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윤리적 해법과 제도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
 - 논거 1 :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과 불편을 감수해도 괜찮기 때문이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돕는다.		○	○
쟁점 B :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과 같은 개인 윤리적 해법이 필요하다.		○	○
쟁점 C :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	○

선지 분석

-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
 ⇒ 쟁점 C : 갑과 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쟁점이다.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
 ⇒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쟁점이지만 핵심 쟁점은 아니다.
-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
 ⇒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쟁점이지만 핵심 쟁점은 아니다.
-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
 ⇒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쟁점이지만 핵심 쟁점은 아니다.
-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 둘 다 언급하지 않은 것이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은 위에서 갑과 을이 언급했듯 익명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른 특수한 사이버 윤리, 응용 윤리가 필요하다. (예 현실 : 에티켓, 사이버 공간 : 네티켓)

★ 출제 유형 예상 : 수능에서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번과 같이 갑과 을이 번갈아가면서 대화를 하고, 선지로는 <보기> ㄱ~르를 판단하는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6) 복합 비교형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번

9.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내부 고발은 조직의 도덕적 혹은 법률적 과오를 막으려는 구성원의 행동으로,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될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내부 고발은 조직에 끼치는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나)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조직의 운영과 결속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면 조직의 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 기>—

- ㄱ.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ㄴ.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함을 간과하고 있다.
- ㄷ.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 ㄹ.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가) - 주장 1 : 내부 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 논거 1 : 내부 고발은 조직의 도덕적 혹은 법률적 과오가 조직의 자체적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논거 2 : 내부 고발은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 - 주장 1 :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

- 논거 1 : 내부 고발을 할 경우 조직의 운영과 결속에 악영향을 미친다.

- 논거 2 :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 조직에 발생하는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 논거 3 : 조직의 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 조직원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가?		○	○
쟁점 B : 내부 고발은 조직의 과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인가?		○	×
쟁점 C : 조직의 문제는 자체적 개선보다는 내부 고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가?		×	×
쟁점 D : 최종적으로(장기적으로) 내부 고발은 조직에 이익을 주는 행동인가?		○	×

<보기> 선지 분석

• (가)가 (나)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반론(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ㄱ.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 쟁점 A : (가)와 (나)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ㄴ.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함을 간과하고 있다. (○)

⇒ 쟁점 D : (가)는 동의, (나)는 반대할 질문으로 결국 (나)에 대한 (가)의 반론으로 적절하다.

ㄷ.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

⇒ 쟁점 C : (가)와 (나) 모두 조직의 비리는 1차적으로 자체적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의 경우 자체적 개선을 통해 조직의 과오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내부 고발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의 경우 오직 자체적 개선만을 조직의 과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가)가 (나)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ㄹ.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 (가)의 경우, ‘내부 고발이 조직에 끼치는 당장의 피해(=단기적 피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고 말한다. 이는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조직의 과오를 개선하여(막아), 장기적 이익을 얻기 위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는 내부 고발자도 그러한 해악을 알고 있고 다만 그러한 해악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단기적인 피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4. 복합 비교형 독해 유형 연습용 기출²³⁾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번

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므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 :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경제적 약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

- ① 갑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을은 공유 자산으로 본다.
- ④ 갑, 을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갑] - 주장 1 :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 논거 1 :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논거 2 :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다.

23) 이 추가 트레이닝 문항들은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문제풀이 방법 ①은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통합 분석서부터 추가한 내용이다.

[을] - 주장 1 :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옳으므로 경제적 약자에게 공적 부조를 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논거 1 :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논거 2 :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다.

★ 주장 + 논거 분석이나 쟁점별 분석에서 주장, 논거, 쟁점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제시문을 독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면 된다. 물론 오독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갑	을
쟁점 A : 정보 생산자의 정보 저작권 인정 여부	○	○
쟁점 B : 정보 격차 감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복지)의 필요성 여부	×	○

선지 분석

①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라는 표현을 통해 갑이 정보 격차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시문 독해

② ‘경제적 약자도 ~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을이 정보 복지를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시문 독해

③ 틀린 선지이다. 갑과 을은 모두 정보 생산자의 권리(저작권)을 인정한다. ⇒ 쟁점 A

④ 갑과 을은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저작권을 갖는다고 인정하며, 정보 사용료를 생산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 제시문 독해

⑤ 갑과 을은 모두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 보장을 강조한다. ⇒ 제시문 독해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정답률 88%

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에 대한 치료의 목적의 의학적 간섭은 물론이고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 :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획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①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②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③ 부모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하는가?

④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하는가?

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가?

★ ‘이렇게 갑과 을이 교차하여 토론하는 지문에서는 주장 - 논거 분석보다는 쟁점별 정리가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이 각 쟁점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위해서 주장 - 논거 분석도 진행하자.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1: 치료를 위한 유전자 간섭뿐만 아니라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해야 한다.
 - 논거 1: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 주장 2: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한다.
 - 논거 1: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을] - 주장 1: 유전자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은 허용하되,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논거 1: 우생학적 조치(=유전자 개량)는 미래 세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 쟁점 A: 갑과 을은 공통적으로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의학적 간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쟁점 B: 하지만 갑은 더 나아가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을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쟁점 C: 또한 갑은 그러한 유전자 개량이 미래 세대에게 자유로운 삶을 줄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을은 그러한 유전자 개량은 우생학적 조치이며, 미래 세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치료’ 목적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		○	○
쟁점 B: ‘유전자 개선’ 목적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		○	×
쟁점 C: ‘유전자 개선’이 미래 세대에게 자유를 보장하는지 여부		○	×

선지 분석

갑은 부정, 을은 긍정할 질문을 찾는 것이다. ⇒ (× ○)

- ① 쟁점 A: 갑과 을 모두 치료 목적 유전자 조작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② 쟁점 B: 유전자 개선 목적의 유전자 조작을 갑은 허용하고(○), 을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쟁점 C: 유전자 개선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갑은 긍정적으로(○), 을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④ 쟁점 C: 3번과 동일한 문제. 갑은 긍정하고(○), 을은 부정한다(×).
- ⑤ 쟁점 C: 유전자 조작을 통해 미래 세대를 개량한다면 갑은 자유를 강화, 을은 자유를 박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지 ⑤에 대해서는 갑은 부정하고(×), 을은 긍정할 것이다(○). (정답)

2.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기업은 기업 활동을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을 : 기업은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과 같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병 : 기업은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갑 : 기업은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 ② 을 :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차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③ 병 : 기업은 항상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④ 갑, 을 : 기업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 ⑤ 을, 병 : 기업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을 가진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1 : 기업은 기업 활동을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 논거 1 : 기업의 책임은 오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을] - 주장 1 :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과 같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논거 1 : 딱히 없음.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정도?)
- [병] - 주장 1 : 기업은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논거 1 : 언급하지 않음.
 - 주장 2 :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논거 1 : 언급하지 않음.

★ 이 문항의 경우에도 쟁점별로 분석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다. 왜냐하면 제시문 길이가 짧아서 을, 병의 경우 주장만 있지 논증이 없기 때문이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병
쟁점 A : 이익 추구는 기업의 목적 (갑, 을, 병 공통 전제)		○	○	○
쟁점 B : 기업이익 추구 이외 사회적 책임 인정 여부 (갑 vs 을, 병)		×	○	○
쟁점 C : 사회 구성원 이익 동등 고려 (을, 병 공통 전제)			○	○
쟁점 D : 사회 구성원 이익 충돌 시, 주주의 이익 우선 고려 (조건부 동등)			×	○

선지 분석

- 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을과 병이다. ⇒ **쟁점 B**
- ② 을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 **쟁점 C**
- ③ 병이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이다. ⇒ **쟁점 D**
- ④ 갑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갑은 이윤 극대화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쟁점 B**
- ⑤ 을과 병 모두 기업이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을 지닌다고 본다. ⇒ **쟁점 C**

※ 참고 ③ 개념 정리

쟁점 입장	프리드먼, 스미스 자유주의 (자유 경제)	보겔, 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기업의 합법적 이윤 추구를 긍정하는가?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긍정하는가?	×	○

이런 문항은 논리적인 독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하지만 출제되는 쟁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기업의 역할을 오로지 ‘합법적 이윤 추구’로 본다. 그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질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시장 질서 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업의 역할이 ‘합법적 이윤 추구’임을 긍정하는 동시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또한 그들은 기업의 이익은 단순히 기업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기업 환경을 조성해준 정부, 기업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여 기업 이익에 공헌한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2016학년도 수능 6번 ²⁴⁾

6.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경기 중에 발행하는 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규칙 위반이 모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을 : 동의합니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고의성이 없으니 비난받을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의도적인 규칙 위반이라면 예외 없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갑 : 아닙니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물론, 합당한 벌칙을 예상하며 승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은 경기 규칙의 일부로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술적 반칙도 심판을 속이는 반칙과 마찬가지로 상대 선수를 오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①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② 심판을 속이는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③ 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④ 승리를 위한 전술적 반칙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 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24) 스포츠 윤리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문항은 논리 독해 문항으로서, 개념과 상관없이 독해 연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재에 실었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1 : 경기 중에 발생하는 규칙위반이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 논거 1 : 규칙 위반은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비의도적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
 - 주장 2 : 승리를 위한 계획적인 규칙 위반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 논거 1 : 합당한 벌칙을 감수하고, 승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한 것이므로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을]** - 주장 1 :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비난받을 것이 아니다.
 - 논거 1 :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 주장 2 : 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예외 없이 비난받아야 한다.
 - 논거 1 : (고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 주장 3 : 전술적인 반칙(=계획적인 규칙 위반)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다.
 - 논거 1 : 상대 선수를 오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 비의도적인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
쟁점 B : 의도적 반칙 중 전술적 반칙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	×

선지 분석

갑은 ○, 을은 ×인 질문을 골라야 한다. (단, 스포츠 윤리 개념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됨.)

- ① ×× ⇒ 쟁점 A
 ② ○○ : 을의 마지막 말로 보았을 때, 의도적인 반칙은 전술적 반칙과 심판을 속이는 반칙으로 나뉘며, 심판을 속이는 반칙은 갑이 인정하는 전술적 반칙이 아니므로 결국 갑과 을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반칙이다.
 ③ ×○ : 4번 선지와 경쟁 답안이다. ⇒ 쟁점 B
 ④ ○× ⇒ 쟁점 B
 ⑤ ○○ :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

1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음악은 즐거움[樂]으로,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 없지만 도리에 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선왕은 천하를 크게 바로잡아 조화 시키고자 예(禮)와 함께 음악을 제정했다.

을 : 음식의 목적이 즐거움이 아닌 것처럼 예술의 목적도 즐거움이 아니다. 인간 상호간의 교류 수단인 예술의 목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

<보 기>

- ㄱ. 갑은 예에 부합하는 미적 욕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ㄴ. 갑은 예술이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심미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예술 체험을 통해 도덕감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1 : 음악은 예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논거 1 :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 맞는 즐거운 활동이지만, 도리(예)와 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지기 때문이다.
- [을] - 주장 1 : 음악의 목적은 즐거움이 아니다.
 - 논거 1 : 음악은 인간 상호간의 교류 수단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쟁점 A : 예술의 사회적 기능(사회성)을 강조하는가?		○	○
쟁점 B : 예술로 인한 즐거움(심미적 가치, 미적 욕망, 쾌락)을 인정하는가?		○	×

선지 분석

- ㄱ. 갑은 ‘음악은 즐거움, 감정상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미적 욕망을 인정한다. 물론 그러한 미적 욕망은 사회적 도리(예)에 맞아야 한다.
 ⇒ 쟁점 B, ○
- ㄴ.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심미주의의 입장이다.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예술 외적인 것, 예컨대 사회적 기능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갑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 ×
- ㄷ. 을은 예술의 심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쟁점 B, ○
 을은 오로지 사회적 기능(사회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쟁점 A, ○
- ㄹ. 갑과 을은 예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효용을 얻고자 하는 입장이다. 갑은 예술을 통해 천하를 바로잡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을은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 쟁점 A, ○

- ★ 유교의 예악 사상은 수능특강 157p에 ‘공자의 예악 사상’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예술과 윤리의 조화를 강조한 사상으로 나온다. 하지만 수능특강 해설지 52p에서 ‘순자의 예악 사상’은 도덕주의의 사상으로 나온다. 공자는 성선설의 입장으로 본성과 사회 질서의 조화를 추구한 반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예악을 통해 악한 심성을 사회적 질서(예법)에 맞게 순화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출제되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0번

2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예술 세계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오차가 없는 진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짓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을 : 최고의 예술은 질서와 사랑을 통해 구현되며, 반항적이고 저급한 피조물을 거룩하게 만든다.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종교를 강화하고,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예술은 이런 일들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보 기>

- ㄱ. 갑은 예술의 본질을 오직 예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예술이 이상과 현실의 분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도덕적 목적이 예술 작품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예술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현자의 돌 평

굉장히 단순한 심미주의 vs 도덕주의의 문항이다. 수능에서는 예술과 윤리의 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이 출제될 것이다. 따라서 더 알아보기에서 예술과 윤리의 조화론을 정리해보자.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갑] - 주장 1 : 예술 세계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허용된다.
 - 논거 1 :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 아닌,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 주장 2 :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 논거 1 : 없음.
 - 주장 3 :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 논거 1 : 없음.²⁵⁾
- [을] - 주장 1 : 최고의 예술은 질서와 사랑을 통해 구현되며, 반항적인 존재를 거룩하게 만든다.
 - 논거 1 : 딱히 없음.

- 주장 2 :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종교를 강화하고,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 논거 1 : 딱히 없음.

② 쟁점별로 분석하기

쟁점	입장	갑	을
예술의 목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인가?		○	×
예술의 목적은 윤리성을 추구하는 것인가?		×	○

선지 분석

ㄱ. 갑은 예술의 본질을 / 오직 예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갑은 예술이 현실과 다른 거짓말일지라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면 좋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예술의 본질을 오직 예술 안에서 찾는 입장으로 ‘심미주의’의 입장이다.

ㄴ. 을은 예술이 / 이상과 현실의 분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을은 예술이 인간의 종교, 윤리성, 질서, 사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인간의 종교, 윤리성, 질서, 사랑 등은 현실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 입장은 도덕주의의 입장으로서 이상과 현실을 분리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적 이상, 윤리적 이상, 질서, 사랑 등의 가치들을 현실에서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ㄷ. 을은 도덕적 목적이 / 예술 작품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을은 최고의 예술이 질서와 사랑을 통해 구현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렇게 구현된 예술(작품)은 반항적이고 저급한 피조물(=인간)을 거룩하게 (=종교적 존재) 만든다고 말한다. 또한 예술의 목적이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 이는 곧, 도덕적 목적이 예술 작품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ㄹ. 갑 / 을은 예술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갑은 예술이 현실과 다른 거짓말이어도 아름답기만 하다면 괜찮다고 본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와 예술이 무관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을은 예술이 ‘질서’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며, 인간의 종교를 강화하고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종교를 강화하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공동체가 믿는 종교적 가치들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하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리’란 인간관계의 이치와 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사회내의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작용하는 이치와 도리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수능에서 예술론이 출제될 경우, 예술과 윤리의 조화를 강조한 사상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참고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자.

25) 제시문에는 주장 2, 3의 논거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추론할 수는 있다. 갑의 숨은 전제 :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예술품이고, 예술품으로부터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을 지닌 사람이다. 반대로 예술품(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예술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 참고 ④ 개념 정리

[EBS 자료 플러스 1] 예술에 관한 도덕주의와 심미주의²⁶⁾

• 도덕주의

- 훌륭한 예술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장 잘 지은 것들을 아이들이 듣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해야 한다. 시인들을 비롯한 모든 장인들은 좋은 성품의 상을 작품 속에 새겨 놓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작품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작품들을 대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것과 친해지고 닮도록 해야 한다. 『플라톤 “국가”』
-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현재 지배하고 있는 폭력 대신 신(神)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 심미주의

- 어떠한 예술가도 윤리적인 동정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예술가에 있어서 윤리적 동정심이란 양식(Style)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Mannerism)이다. 『와일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 시(詩)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스핑크, “창조적 비평”』

현자의 돌 평

도덕주의는 예술이 인간의 도덕성 향상과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심미주의는 예술을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 참고 ⑤ 개념 정리

[EBS 자료 플러스 2] 예술과 윤리의 조화를 강조한 사상²⁷⁾

- 공자의 예악(禮樂) 사상 : 예(禮)와 악(樂)은 천지의 질서에 연원하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그리스의 선미(善美) 사상 : 선(善)과 미(美)는 하나로 통합.
- 칸트의 사상 : 미와 선은 형식이 유사하므로, 미는 선의 상징이 됨.

- 예술에 대한 칸트의 입장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그들의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칸트 “판단력 비판”』

EBS 해설 칸트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미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상징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와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서는 고양된 감정을 지니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아름다움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도덕과 통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름다움이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참고 ⑥ 개념 정리

“인간의 삶에서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예부터 인간은 예술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자는 “예(禮)에서 사람이 서고 악(樂)에서 사람이 완성된다.”고 하여 인격을 같고 닦는 방법으로 음악을 꼽았다. 정약용도 “인간이 칠정(七情)²⁸⁾이 있어 마음이 고르지 못한 까닭에 음(音)을 듣고 마음을 씻어 평온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칸트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며 예술이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⁹⁾

● 3차원 그래프 유형

•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3번

1. 유형 소개

이 유형은 (가)와 (나)가 특정 입장(특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유형이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우열성을 파악하면 된다. 개념학습 없이 제시문 독해만으로 풀 수 있는 문항도 출제되지만 제시문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념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푸는 방법만 알면 고려해야 할 변수가 X, Y, Z축 3개의 특징뿐이고, 참/거짓을 따질 필요 없이 상대적 우열관계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선지 ㉠~㉡를 고르는 유형보다 쉬운 유형이다.

단, (나)에 비해 (가)가 지닌 상대적 특징을 물어볼 수 있으므로 발문을 잘 확인해야 한다.

2. 유형 해결 방법

(가), (나)가 제시문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가)에 비해 (나)가 갖는 상대적 특징, 즉 ‘(가) << (나)’인 것을 찾으라는 문제 유형이다. 그 특징을 종합하여 X, Y, Z축 3차원의 그래프 위에 표현해야 한다. 이런 문항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풀이 방법은 X, Y, Z 중에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판단하고, 그래프 위에서 ㉠ ~ ㉡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을 순차적으로 지워나가면 된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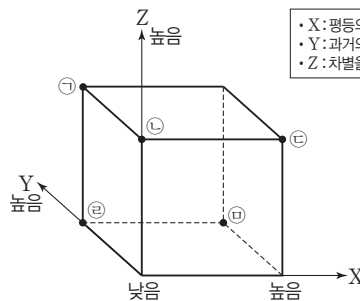
3.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 제시문 & 선지 분석 트레이닝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3번

1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의 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과거의 불평등을 잘못이 없는 후대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고,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는 등 여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6) 2016년 EBS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156p

27) 2016년 EBS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157p

28) 기쁨, 화남 등 성리학자들이 생각한 사람의 일곱가지 감정

29) 생활과 윤리 미래엔 교과서 230p

현자의 돌 평

적극적 우대 정책에 대한 입장은 새 교육과정에 추가된 내용이다. 이 책에 정리된 관련 내용을 꼭 읽어볼 것! (어렵게 나올 주제는 아니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1단계] 제시문 독해 :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

- (가) - 주장 1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거부되어야 한다.
- 논거 1 :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 논거 2 :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의 평등에서 예외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 논거 3 : 과거에 있었던 불평등(잘못 : 과거 백인이 자행한 노예제, 유색인종 차별 등)을 잘못이 없는 후대(현대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 (나) - 주장 1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실시되어야 한다.
- 논거 1 :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응분(응당한 정도)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 논거 2 : 적극적 우대 정책 실시를 통해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2단계] X, Y, Z축 판단하기

난이도 상 그래프 X축 : 형식적 평등³⁰⁾ >> 실질적 평등, 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강조하는 특징임. 우대 정책 반대 >> 우대 정책 찬성 → 낮음.

(가)의 '기회의 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술로부터 형식적 평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실질적 평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판정하기가 어려웠을 문항이다.

난이도 하 그래프 Y축 :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음. 우대 정책 반대 << 우대 정책 찬성 → 높음.

(나)의 제시문에 그대로 쓰여 있다.

난이도 중 그래프 Z축 : 차별을 줄이고,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 = 적극적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임. 우대 정책 반대 << 우대정책 찬성 → 높음.

Z에서 줄이고자 하는 '차별'은 (나)가 보상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가 '오랫동안 당해온 부당한 차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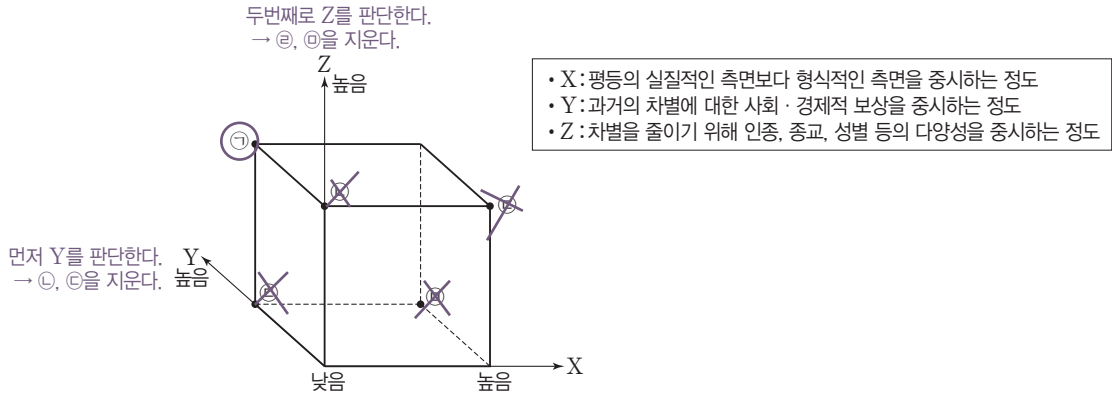
한편 (가)가 말하는 '또 다른 차별'은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주류 계층' (예 미국의 'WASP 와스프(앵글로색슨계 백인 신교도;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지배 계급으로 여겨짐.)'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필요했던 문항이다. (물론 제시문 독해와 상식, 배경지식으로 판단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개념을 알았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

③ [3단계] 특성 X, Y, Z에 따라 선택지 지우기

쉬운 순서에 따라 그래프의 선지를 지워 나간다.

난이도 : $Y < Z < X$ (난이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Y와 Z만 판단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실제 평가원, 수능 기출문항은 X, Y, Z 중 두 개만 정확히 판별하면 맞출 수 있거나 맞출 확률이 높도록 출제된다. 3차원 그래프 특성상 2개만 판단해도 3~4개의 선지가 지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 모르겠는 선지가 나온다고 해도 다른 두 개의 선지를 파악해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해보자.

물론 이것은 사후적³¹⁾일 수 있다. 평소에는 X, Y, Z 모두 정확하게 판별해서 푸는 연습을 하자. (물론 X, Y, Z 중에 하나씩 순서대로 판단하면서, 선지를 지우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시험장에서 겪는 혼동으로 인한 실수를 줄여준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① 현자의 둘 개념 칼럼 :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 / 소수 집단인가?

여성은 전체 사회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소수자 / 소수 집단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 / 소수 집단은 영어 Minority / Minority Group의 번역으로서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라기보다 권리의 측면에서 다수자 / 다수집단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집단을 말한다.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의 정의에 따르면 ‘A minority is a group of people of the same race, culture, or religion who live in a place where most of the people around them are of a different race, culture, or religion.’ (소수자는 인종, 문화, 종교 등을 동일하게 갖는 집단으로서 그들 사는 곳의 다수자 집단과 다른 인종, 문화 혹은 종교를 지닌 집단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생활과 윤리에서 말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맥락을 조금 더 살리면 소수자 / 소수 집단은 성별, 인종, 문화, 종교 등 집단을 규정하는 사회적 특성이 ‘주류’와 다른 비주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류에 비해서 정치적-사회적 힘을 적게 지녔고,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평등한 권리를 합당하게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박해를 받고 하는 집단을 말한다.

소수자 / 소수 집단의 인권 향상은 소수자와 소수집단의 정치적-사회적 투쟁과 일부 주류와의 연대를 통해서 달성되어 왔다. 특히 여성 인권 운동은 세계 1, 2차 대전으로 인한 여성 노동력 수요 급증과 그에 따른 여성의 투쟁 확대(발언권 향상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권력 (예 참정권) 확대 등으로 인해서 아주 최근에 달성되었다.

미국의 경우, 흑인 참정권을 1870년에 준 반면 여성 참정권은 1920년대에 인정했고, 영국은 1928년, 프랑스는 1946년에 참정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했던 수많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보내고 싶다. 여성 인권, 참정권 운동 관련 영화로는 ‘서프레저트’를 추천한다. 수능이 끝나면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엠마 왓슨이 UN Woman의 친선대사로 위촉되어 UN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영상을 보는 것도 ‘성평등’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주소 : <https://youtu.be/gkjW9PZBRfk>). 참고로 한국은 1948년 제헌의회의 헌법에서 여성 참정권을 부여했다.

30)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의미는 위의 더 알아보기에서 설명한다.
 31) 사후적 : 이미 끝난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 기존의 해설과 해설 강의들은 이미 정답이 나온 상태에서 끼워 맞추기 식의 해설이 진행될 위험이 있다.
 현자의 둘 본 저자도 이렇게 생활과 윤리 분석서를 쓰고 연구를 오래 해왔지만 동시에 수험생으로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스킬이나 꼼수만으로 문제를 쓱쓱 풀려고 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정직하게 푸는 방법과 문제의 출제 방식을 귀납화하여 만든 문제풀이 방법론을 둘 다 알려줄 것이다. 당부하건대 학생들은 필수, 스킬, 방법론만을 익히지 말고 꼭꼭 정직한 풀이도 연습하라. 계속 꼼수 풀이만 쓰다가 수능에서 유형이 바뀌어 출제되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다. N수생들은 공감하겠지만 수능에서는 변칙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② 용어 해설 :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 **형식적 평등** :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상황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부자와 빈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줄 경우 고용자원이 많은 부자가 빈자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실적인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평등은 비판을 받곤 한다.
- **실질적 평등** :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평등의 원칙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과 비슷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결과의 평등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려는 것이다. (절대적 평등은 아님.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추구)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 평등은 빈자(비주류)를 대우하기 위해서 부자(주류)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③ EBS & 교과서 개념 정리 인용

- **적극적 우대 정책** : 수능특강 (133p 날개의 용어 설명)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고치기 위한 치료책으로 흑인과 여성에게 이를 테면 채용-승진-훈련 등에서 백인과 남성보다 우선적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책
- **역차별** :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방침으로 인해 도리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
-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³²⁾
 - a. 역차별 및 우대 정책 사례 : 장애인 우대 정책, 여성 우대 정책, 소수 인종 우대 정책
 - b.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논거	반대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의 논리 : 장애인, 여성, 소수인종 등은 과거에 차별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그 고통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 재분배의 논리 : 장애인, 여성, 소수 인종은 사회적 약자로서,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공리주의 논리 : 장애인, 여성,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사회적 긴장은 완화하고 사회 전체에 평화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차별의 논리 :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할당제,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혜는 비장애인이나 남성의 기회를 박탈하여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 보상 책임의 부당성 논리 : 과거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은 부당하다. 과거에 장애인, 여성, 소수 인종을 차별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그 가해 당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차별에 대한 잘못이 없는 후손 전체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업적주의 원칙 위배 논리 : 현대 사회에는 타고난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업적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우대 정책으로 장애 여부, 성별, 인종에 따라 진학이나 고용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은 업적주의를 위배한다. 우대 정책에 따라 노력이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 참고

『비상예두 생활과 윤리 188p』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차등을 두어 구별함.’이다. 이처럼 차별의 개념 자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지만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그 말은 실제로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말을 줄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비상예두 생활과 윤리 188p』

‘차별’을 부정적 의미로만 쓴다면, ‘합리적 차별’, ‘정당한 차별’이라는 말은 모순되므로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차별’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비상예두 생활과 윤리 189p』

(나쁜 차별에 대해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으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수도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시행이 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 농어촌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 계층의 불리한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을 우대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비상예두 생활과 윤리 190p』

그런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이 나머지 다수 집단의 사람들을 역으로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취업에서 지방 대학생들에게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면 수도권 학생들이 부당하게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그러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사라지면 그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며 역차별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방침으로 인해 도리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

『비상예두 생활과 윤리 190p』

“미국의 많은 대학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흑인과 남미계 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입학 가산점을 준다. 우리나라 대학이 신입생 모집 때 실시하는 지역 할당제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학업 성적이 소수자들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백인 학생들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다.” 떨어진 일부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학은 ‘다양성의 장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여러 인종 학생이 섞여 생활하면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만 모여 있을 때보다 더 넓은 지적·문화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소수 집단 학생들을 교육해 핵심 공직이나 전문직에 진출시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면 지역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2011.3.28.〉³³⁾

32) 미래엔 생활과 윤리 199~200p

33) 이 분석서에서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을 해설할 때, 본 저자는 해당 문항과 관련된 수능특강, 수능완성, 4종 교과서(미래엔, 천재교육, 지학사, 비상교육)의 개념설명/읽기자료/문항과 선지를 모두 살펴보고,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분석서에서 모두 다를 것이다.

● 삼단논법 전제 추론, 반론 유형

-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 (대전제 추론)
-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소전제 추론)

1. 유형 소개

(몇 페이지 뒤에 그림으로도 설명이 나온다. 이해가 힘들면 그림을 참고할 것!)

기존의 삼단논법 유형은 두 학생의 그림이 나와서 한 학생이 'A는 B이므로 C이다.'라고 결론을 말하면 상대편 학생이 '너의 의견을 삼단논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또한 문제는 해당 전제의 반론을 추론하라고 제시된다.

하지만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삼단논법의 유형이 새롭게 바뀌었다. 그리고 논리적 판단의 난이도도 올라갔다. 예전 기출 문항과 다른 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유형의 삼단논법 문항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유형

①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

'대전제'³⁴⁾를 추론하고, 대전제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추론하게 함.
(이전에 대전제 추론, 대전제 반박을 요구하는 기출은 없었음.)

②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소전제를 추론하고, 소전제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추론하게 함.
(이전에는 '반론'을 찾으라고 했지, 반론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지는 않았음.)³⁵⁾

2. 유형 해결 방법

1) 발문을 잘 읽어라.

소전제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 소전제의 반론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를 확실히 확인하자. (주로 소전제에 대한 반박이 출제된다.)

★ 성급하게 소전제에 들어갈 말을 선지로 골라서는 안 된다.

2) 소전제를 복구한다.

소전제를 복구하는 방법은 문항이 이렇게 출제되므로

- 대전제 : $B \rightarrow C$
- 소전제 : $? \rightarrow ?$
- 결론 : $A \rightarrow C$

대전제의 앞부분인 B를 소전제의 오른쪽 물음표에 넣어주고, 결론의 앞부분인 A를 소전제의 왼쪽 물음표에 넣어준다.

즉, 대전제 : $B \rightarrow C$ / 소전제 : $A \rightarrow B$ / 결론 : $A \rightarrow C$ 가 되는 것이다.

삼단논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대전제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결론은 그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구체적 예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원리를 구체적인 예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소전제가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결론 (\rightarrow 소전제) \rightarrow 대전제 : $A(\rightarrow B) \rightarrow C$

※ 참고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 대전제 :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 소전제 : ? \rightarrow ?

- 결론 : 따라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대전제의 앞부분인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소전제의 오른쪽 (결론 부분) ?에 넣고, 결론의 앞부분인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소전제의 왼쪽 (전제 부분) ?에 넣는다.

소전제 :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rightarrow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

★ 주의 : 성급하게 소전제에 들어갈 말을 선지로 골라서는 안 된다. (선지는 그에 대한 반론)

3)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찾는다.

소전제를 반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소전제를 이루고 있는 ‘ $p \rightarrow q$ ’의 두 조건 사이의 관계가 잘못됨을 밝혀주는 것이다.

두 번째, 대전제가 틀렸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기존의 생활과 윤리 기출문제에서는 대전제가 틀리게 나오지 않고, 소전제의 앞 조건 ‘p’와 뒤 조건 ‘q’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혀줌으로써 반박을 하도록 출제가 되곤 했다. 하지만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의 경우 대전제를 추론하고, 대전제를 반박하는 문항이 출제되어서 대전제 추론과 반박 유형도 잘 대비해야 한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 문항 해설할 때 설명)

예전의 기출문제 풀이 방법은 대전제와 결론의 연결고리인 소전제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즉 ‘대전제와 결론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주면 되었다.

앞의 내용 중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의 경우, 대전제인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는 항상 옳다.

그렇다면 소전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rightarrow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를 반박해주면 된다. 예컨대 ‘인간 존재는 자의식을 지닌 인격적 존재에 국한된다.’라고 인간 존재의 외연을 한정해준다면 ‘인간의 태아’는 ‘인간 존재’가 아니므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rightarrow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명제는 잘못된 것이 된다.

따라서 위 소전제에 대한 적절한 반론은 ‘태아는 인간 존재가 아니다.’가 되는 것이다. 이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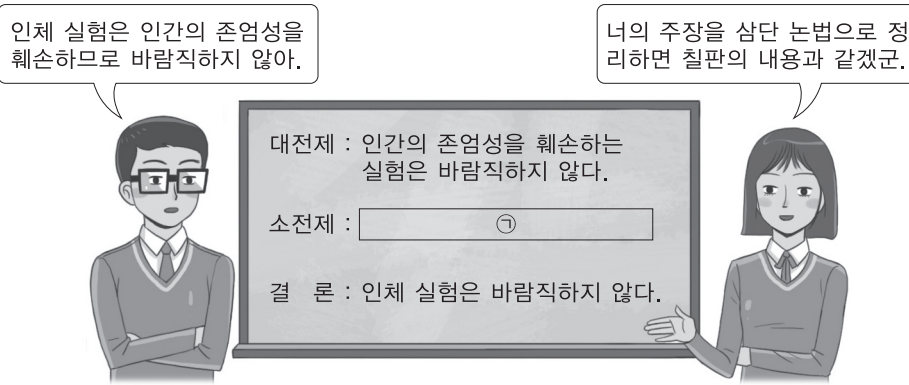
34) ‘인간은 죽는다.’ (=대전제) -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전제) -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론)

35) 사실 반론의 근거를 찾는 유형은 2015학년도 수능 4번,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5학년도 이전에는 ‘반론’을 찾으라 했고, 2015학년도 이후에는 반론의 ‘근거’를 찾으라는 발문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반론’의 의미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3.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 제시문 & 선지 분석 트레이닝

먼저 예전의 삼단논법 유형을 살펴보고 공부한 후 신유형 삼단논법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2015학년도 수능 4번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1단계] 소전제를 복구한다.

대전제의 앞부분을 소전제의 오른쪽 ? (결론 부분)로 넣는다.

결론의 앞부분을 소전제의 왼쪽 ? (전제 부분)로 넣는다.

⇒ 인체 실험은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

★ 쉽게 보기

대전제 : A / B

소전제 : C / A

결론 : C / B

② [2단계] 소전제를 반박한다.

인체 실험은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

이 소전제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체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면 된다. 즉 결론과 대전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이다.

선지를 보면 '2번.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인체 실험이 인격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실험, 예컨대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결론과 대전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준다.

5.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생물학적 출발 조건인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 ① 복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기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② 자연 발생적 출생만이 인간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 ③ 복제 인간은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존재의 자유를 갖는다.
- ④ 개인의 자유보다 복제 인간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 ⑤ 인간 복제로 인해 인간 상호 관계는 지배 종속 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현자의 돌 평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또한 기존의 유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존 삼단논법 유형은 대부분 제시된 대전제와 결론을 통해서 소전제를 추론한 후, 그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선지로 고르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문항은 반론의 ‘근거’를 찾는 문항으로 유형이 바뀌었다.³⁶⁾ 논리적 복잡도가 1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항을 분석한 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도 분석할 것인데, 그것도 굉장한 신유형이다. 수능에서는 기존의 ‘단순 소전제 반론’ 유형보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혹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과 같은 신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신유형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문항 해설 후에 해설)

문제풀이 방법 적용

- ① [1단계] 전제 2 (소전제)를 복구한다.
 전제1 (대전제)의 앞부분을 소전제의 오른쪽 ? (결론 부분)으로 넣는다.
 결론의 앞부분을 소전제의 왼쪽 ? (전제 부분)으로 넣는다.
 ⇒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복구한 소전제)
- ② [2단계]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36) 사실 반론의 근거를 찾는 유형은 2015학년도 수능 4번,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5학년도 이전에는 ‘반론’을 찾으라 했고, 2015학년도 이후에는 반론의 ‘근거’를 찾으라는 발문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반론’의 의미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

기존 유형들은 대부분 반론과 반론의 근거를 같이 정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문항은 반론과 반론의 근거를 구분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이 소전제의 반론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전제와 소전제 사이의 연결고리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결론 부분을 지적해주는 것이 좋다.

소전제는 '→'를 기준으로 'p → q'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p'는 결론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고, 'q'는 대전제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그러면 결론의 'p'가 반드시 대전제의 'q'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소전제의 반론이다.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가 꼭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 것은 아니다.”가 반론이 될 수 있다.

③ [3단계] (신유형) 반론의 근거 찾기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도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가 될 수 있다. 이 반론과 반론의 근거를 글로 풀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전제로서 긍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는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가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가정하고((가)의 소전제) 그 결과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 결론처럼 보이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다. 왜냐하면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 반론 : (가)가 소전제로 가정한 것과는 달리,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 반론의 근거 : 왜냐하면 복제된 인간도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존재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반론자의 주장도 추론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있다.³⁷⁾

★ 쉽게 보기

(가)가 A(복제)는 B(자유 불가능)이고 B(자유 불가능)는 C(허용×)니까 A(복제)는 C(허용×)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 반론 : A(복제)는 B(자유 불가능)가 아니다.
- 반론의 근거 : A(복제)도 ~B(자유 가능)이기 때문이다.

선지 분석

- ① 복제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사와 무관하게 기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 (가)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다.
- ② 자연 발생적 출생만이 인간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
⇒ (가)가 전제하는 것이다.
- ③ 복제 인간은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존재의 자유를 갖는다. (○)
⇒ 소전제인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의 반론인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개인의 자유보다 복제 인간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
⇒ 논의와 무관한 주장이다.
- ⑤ 인간 복제로 인해 인간 상호 관계는 지배 종속 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
⇒ (가)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다.

★ 신유형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

8.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과학 기술은 객관적 지식, 즉 객관적인 방법으로 발견한 자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 ①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 ② 모든 지식은 활용의 맥락에서 주관적 도덕 판단을 요구한다.
- ③ 과학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속한다.
- ④ 모든 지식은 객관적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인식론적 대상이다.
- ⑤ 객관적 지식의 활용은 그 목적 설정을 위해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현자의 돌 평

신유형이다. (나)에서 찾으라고 하는 ‘전제 2 ㉠’은 무려 ‘대전제’³⁸⁾이다. 지금까지 삼단논법 문제에서 대전제를 물어보고, 대전제의 반론을 찾거나 반론의 근거를 찾으라는 문항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설 강의에서는 그냥 풀면 된다고 하고 신유형이라는 말을 전혀 안 해준다. 발문에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냥 제시문이란 반대되는 내용 고르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수능에서 그런 기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직하게 푸는 방법도 반복해서 익히자.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1단계] 대전제를 복구한다.

우선 삼단 논법에서 대전제와 결론은 서술부가 같고, 소전제와 결론은 주어부가 같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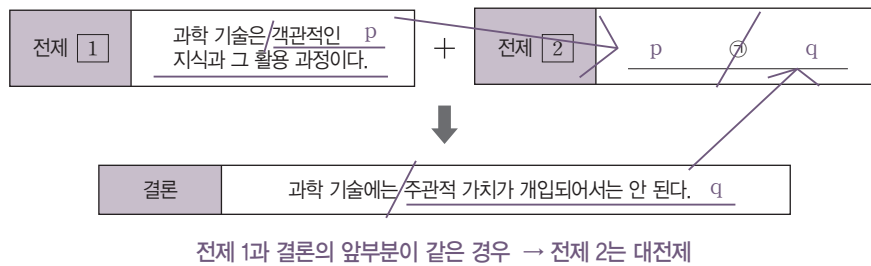
37) 이것은 문항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론자의 주장으로서 논리적으로 연역할 수 있다.

38) 전제 2가 대전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제 2를 복구하면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는/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가 된다. 대전제는 소전제보다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주어가 나오는데, 전제 1의 주어인 ‘과학 기술’은 전제 2의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전제 2의 주어가 전제 1의 주어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대전제인 것이다.

그런데 전제 1에서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의 과정이다.’라고 말했고, 결론에서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전제 1과 결론의 주어부가 모두 ‘과학 기술’이라는 점과 술어부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전제 1은 대전제가 아닌 소전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제 2는 대전제다. 전제 2를 추론해보자. 대전제는 소전제의 술어부를 주어부로 사용한다. 또한 대전제는 결론의 술어부를 술어부로 사용한다.

즉, 전제 1의 술어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 대전제의 앞부분으로 와야 하고, 결론의 술어부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가 대전제의 뒷부분으로 와야 한다. 그러므로 전제 2 (대전제)는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복구할 수 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위와 같이 전제 1(소전제)의 뒷부분을 잘라서 전제 2(대전제)의 앞부분에 넣고, 결론 뒷부분을 잘라서 전제 2(대전제)의 뒷부분에 넣으면 된다.

② [2단계] 대전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 반론 :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 되어야 한다.’

③ [3단계] 반론의 근거를 찾자.

이러한 반론의 근거는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필연성, 법칙에 따른 불가항력) 들 수도 있고, 객관적인 지식 일지라도 그 활용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거나 개입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를 조금 더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 필연성, 법칙성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활용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 필연성, 법칙성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활용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 ⇒ 당위성

이런 식으로 대전제에 대한 반론을 지지해줄 수 있다. (반론의 근거 역할)

선지 분석

- ①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
⇒ 오히려 제시문 (가)가 동의할 입장이다.
- ② 모든 지식은 활용의 맥락에서 주관적 도덕 판단을 요구한다. (○)
⇒ 위에서 논의했던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활용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 (당위성)’와 동일한 맥락의 주장이다.
선지 ②의 ‘모든 지식’에 제시문 (가)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 혹은 ‘객관적 지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지식의 활용에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면 과학적 지식에서도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위 범주/정답)
- ③ 과학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속한다. (×)
⇒ (나)의 전제 1을 다른 말로 바꿔서 쓴 것.
- ④ 모든 지식은 객관적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인식론적 대상이다. (×)
⇒ 논의와 무관한 주장이다. (가)는 ‘과학 지식’을 객관적 지식으로 볼 뿐 그 이외의 지식 예컨대 철학, 사회학, 인문학적 지식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 ⑤ 객관적 지식의 활용은 그 목적 설정을 위해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
⇒ 제시문 (가)의 대전제이자, (나)의 전제 2 ㉠으로서 들어가야 할 선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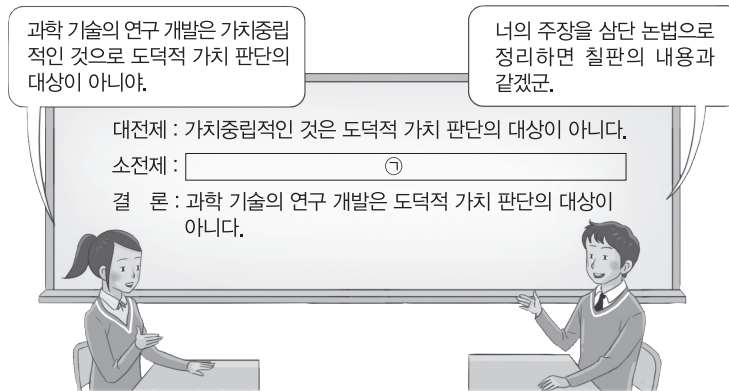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 ① 예전 기출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의 기출사적 흐름과 출제 원리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8번의 구조
 -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 반론 :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 되어야 한다.’
 - 반론의 근거
 - a.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 필연성, 법칙성
 - b.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활용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 필연성, 법칙성
 - c.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활용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 ⇒ 당위성

∴ c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의 선지 ㉠로서, 답이다.

그런데 a와 b는 답이 될 수 없을까? 당연히 될 수 있다. 실제로 예전 수능에서는 a가 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해 ‘같은 지문’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다.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 기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② 과학 기술의 연구 목표를 설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 ③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가치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④ 과학적 사실 판단은 도덕적 가치 판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 ⑤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과 도덕의 탐구 대상은 서로 구별된다.

[대전제] '가치중립적인 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 2017학년도 6평 8번 대전제)

[소전제] ㉠ = '과학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 2017학년도 6평 8번 소전제)

[결론]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2017학년도 6평 8번 결론)

=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 정답 : ② 과학 기술의 연구 목표를 설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 b.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 필연성, 법칙성

이게 바로 기출 분석이다.

② 대전제 추론 탐구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 삼단논법 유형의 전제 2가 대전제라고?

일단 전제 1이 소전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전제는 가장 일반화된 명제(포괄적)인 반면 소전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명제이다. 결론은 대전제와 소전제로부터 도출되는 논증 결과를 말한다. 그리고 전제 1개와 결론 1개가 주어질 때, 그 전제의 문장과 결론의 문장 중 같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보면 그 전제가 대전제인지, 소전제인지 알 수 있다.

[예] 대전제가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b \rightarrow c$)라면
 소전제는 '동물은 생명체이다.'가 될 수 있고 ($a \rightarrow b$),
 결론은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가 될 것이다. ($a \rightarrow c$)

대전제와 결론은 뒷부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c)가 같고,
 소전제와 결론은 앞부분 '동물은' (a)가 같다.

b는 어디로 갔을까? b는 대전제와 결론을 이어주는 소전제가 갖고 있는 연결고리이다.
 ($a \rightarrow (b) \rightarrow c$) 이때, 생명체는 일반화이고, 동물은 구체화이다.

물론 대전제가 '동물은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b \rightarrow c$)라면,
 소전제가 '인간은 동물이다.' ($a \rightarrow b$)
 결론은 '인간은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a \rightarrow c$)

이렇게 동물이 일반화이고, 인간이 구체화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맥락 속에서 삼단논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 전제 1이 대전제이고, 전제 2가 소전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다. 결론의 주어부와 대전제로 가정한 전제 1의 주어부가 같다면

- 대전제 :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 소전제 : 과학 기술은(결론의 주어부와 동일) 객관적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대전제의 술어부와 동일)
- 결론 :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삼단논법이 구성되는 것인데, 대전제와 소전제가 모두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이라면 결론도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이외의 것이 도출될 수가 없다. 즉,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가 도출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전제 1을 소전제라고 보아야 전제1의 주어부와 결론 1의 주어부가 같다는 것($a = a$)과 전제 1의 술어부와 결론의 술어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b \neq c$)이 설명이 된다.

③ 논리 없는 꼼수 풀이

★ 현재까지 수능에 출제된 대부분의 삼단논법 유형 유형에 통하는 꼼수가 한 가지 있다.

제시문이 A를 주장한다고 하자.

선지는 'A와 동의하는 내용', 'A를 반대하는 내용', 'A와 무관한 내용'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기출에서는 논증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반론, 반론의 근거를 연역하지 않아도 그냥 제시문이 주장하는 A와 찬성하는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선지에서 제거하면 답을 고를 수 있었다.

삼단논법 유형이 너무 어려울 경우, 이렇게 하는 꼼수도 있으니 이것도 연습해두면 시험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위에 서술한 방법론을 통해서 대전제/소전제를 추론하고, 대전제/소전제의 반론, 반론의 근거를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자. 수능에서 이 꼼수가 안 통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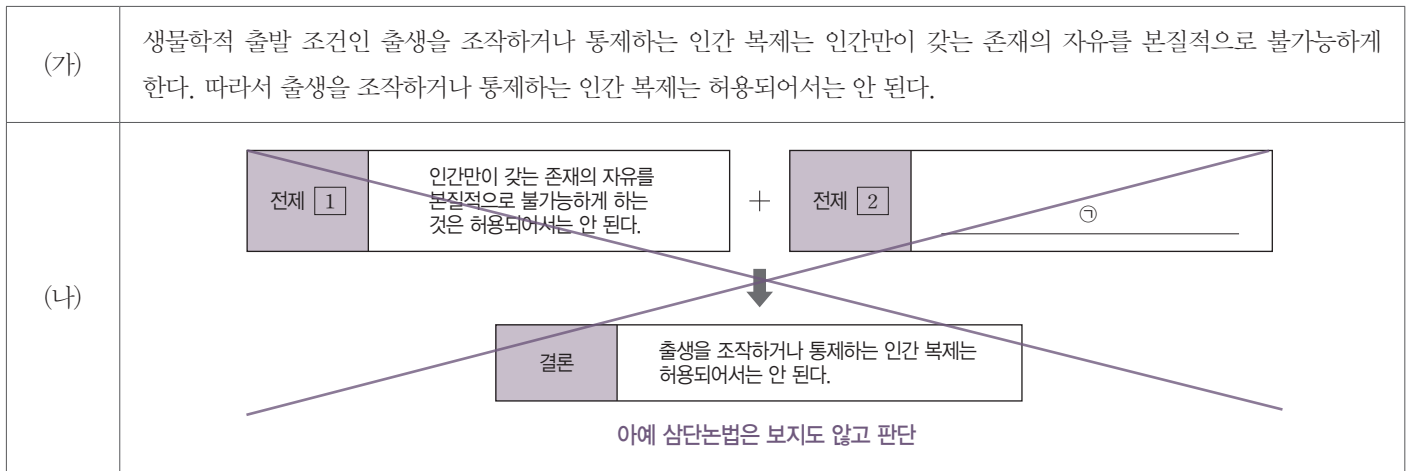
예컨대 선지에서 반론의 근거인 ‘~A ①’와 반론의 근거는 아니지만 제시문의 입장과 반대되는 ‘~A ②’이 출제될 수도 있다. 그러면 평소에 논리적인 풀이를 연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해당 문항을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 삼단 논법 문항은 논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적용되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습만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추천 풀이 방법은 ① 논리적으로 전제를 추론하고, 반론을 추론하고, 필요할 경우 반론의 근거를 추론한다. ② 제시문이 A라면 선지에서 A와 같은 주장을 하는 선지를 모두 지우고, ~A인 선지가 자신이 추론한 답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즉, 꿈수 풀이는 검토용 방법으로 활용한다. 꿈수 풀이만으로 문제 풀고 넘어가지 말자. 이번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올해 수능의 삼단 논법 문항이 심상치 않다. 분명 함정이 있을 것이다. 꼭꼭 정석 풀이를 연습하자. 그러면 이제 꿈수 풀이를 기출문항에 적용해보자.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5. (가)의 주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복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기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② 자연 발생적 출생만이 인간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 ③ 복제 인간은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존재의 자유를 갖는다.
- ④ 개인의 자유보다 복제 인간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 ⑤ 인간 복제로 인해 인간 상호 관계는 지배 종속 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제시문 분석

복제를 싫어하네! → 반론? 오... 복제를 좋아하는 거 고르면 되겠구나!

선지 판단 (학생들이 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 ① 복제인간 싫어하네.. ⇒ (갑)의 입장
 - ② 자연발생 출생만을 좋아하네. 그러면 복제인간 싫어하겠다.. ⇒ (갑)의 입장
 - ③ 복제 인간과 자연 발생적 인간이 같다고? 복제인간을 싫어하는 (갑)이 반대하겠는 걸? ⇒ ~ (갑) 입장³⁹⁾
 - ④ 개인의 자유보다 복제인간과 모든 인류의 행복이라.. 무슨 말이지? ⇒ ?
 - ⑤ 인간 복제를 싫어하네! ⇒ (갑)의 입장
- ∴ 정답 ③번 = not (갑)

8.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과학 기술은 객관적 지식, 즉 객관적인 방법으로 발견한 자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 ①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 ② 모든 지식은 활용의 맥락에서 주관적 도덕 판단을 요구한다.
- ③ 과학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속한다.
- ④ 모든 지식은 객관적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인식론적 대상이다.
- ⑤ 객관적 지식의 활용은 그 목적 설정을 위해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제시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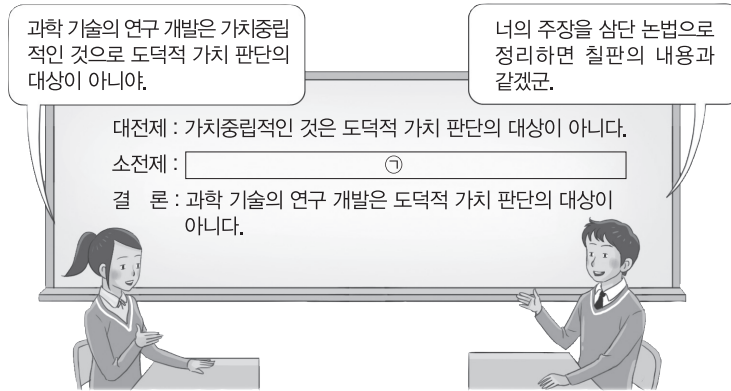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것. 주관적 가치 개입 ×
 ⇒ 반대 : 과학 기술은 주관적인 가치 개입 ○

선지 판단 (학생들이 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 ① 객관적 = (가)
 - ② 주관적 = ~(가)
 - ③ 객관적 = (가)
 - ④ 객관적 = (가)
- 사실 위에서 올바른 해설을 할 때 말했듯 (가)로부터 선지 ④는 추론할 수 없다. 그런데 객관 / 주관만 따지면 (가)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 ⑤ 객관적 = (가)
- ∴ 정답은 ② 주관적 = ~(가)

39) 여기서 '~'는 명제에서 not을 의미한다.

5.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학 기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② 과학 기술의 연구 목표를 설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 ③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가치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④ 과학적 사실 판단은 도덕적 가치 판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 ⑤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과 도덕의 탐구 대상은 서로 구별된다.

제시문 분석

여학생은 과학 기술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반론을 제기하려면 주관적인 선지를 골라야겠다!

선지 판단 (학생들이 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 ① 객관적이네.
- ② 주관적이네. 이게 답인가? ⇒ 정답
- ③ 객관적이야.
- ④ 객관적이네.
- ⑤ 객관적!

4. 예전 기출을 변형한 대전제 추론 & 대전제 반론 연습하기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기존 기출과 다른 신유형이 출제된만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문항들을 준비했다. 훈련 문항들은 모두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변형한 것이다. 위의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 문항 분석에서 ‘대전제 추론’ 방법을 배운 다음 아래 연습 문항을 통해서 여러 번 연습하면 좋을 것이다.⁴⁰⁾

Q. 다음 기출 변형 문항들의 대전제 ㉠을 추론하고, 반론의 근거를 적어보시오.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 대전제 : ㉠

- 소전제 :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결론 :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제시하기 :

• 2015학년도 수능 4번

- 대전제 : ㉠

- 소전제 :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

- 결론 : 인체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제시하기 : 이 대전제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반박하라고 출제하지는 않을 것임.

•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

- 대전제 : ㉠

- 소전제 :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 결론 :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제시하기 : (반론 제시 가능)

•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

- 대전제 : ㉠

- 소전제 :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 결론 : 자발적 안락사는 옳지 않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제시하기 : (반론 제시 가능)

• 2014학년도 수능 5번

- 대전제 : ㉠

- 소전제 :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 결론 :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제시하기 : 이 대전제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반박하라고 출제하지는 않을 것임.

•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 대전제 : ㉠

- 소전제 : 낙태는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

- 결론 : 낙태는 옳지 않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제시하기 : 이 대전제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반박하라고 출제하지는 않을 것임.

정답 및 해설

40) 결론을 추론해서 결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결론은 대전제에 비해서 찾기 쉬우니까 위의 결론들을 보고 나름의 연습을 하면 좋겠다.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 대전제 :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대전제의 논리 분석⁴¹⁾

① 인간만이 존재의 자유를 갖는다.

②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는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침해될 수 있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제시하기

①에 대한 반론 : 인간만이 존재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①에 대한 반론의 근거 : (레겐의 입장에서) 인간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 삶의 주체인 동물들도 믿음과 욕망을 갖고,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능력을 갖고, 심리적인 동일성을 갖고, 자신이 경험하는 삶이 다른 존재의 유용성과는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잘 살거나 못 산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⁴²⁾인데, 이러한 삶의 주체도 존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 이 논리는 잘 기억해둬라.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②에 대한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는 인간 존재에게 선험적⁴³⁾이고, 본질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외적인 간섭이 있을지라도 불가능하게 할 수 없다.(침해될 수 없다.)

• 2015학년도 수능 4번

- 대전제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 이 대전제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반박하라고 출제하지는 않을 것임. 굳이 반박한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배타적 소유권을 지닌다. 따라서 만약 인간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정당하다.’ 정도가 되겠지만 이런 논리가 수능에 출제될 것 같지는 않다.

•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

- 대전제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인간 대상 실험은 바람직할 수 있다.

•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

- 대전제 :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① 이 대전제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반박하라고 출제되지 않는 것임. 굳이 반박한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배타적 소유권을 지닌다. 따라서 만약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다.’ 정도가 될 수 있다.⁴⁴⁾

② (문제의 맥락과는 조금 다르지만 사형제 찬성의 입장에서) 칸트에 따르면 살인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받아야만 한다. 응보적 정의는 오직 살인자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즉 인간을 ‘죽이는 것’이 올바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2014학년도 수능 5번

- 대전제 : 가치중립적인 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 이 대전제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반박하라고 출제하지는 않을 것임.

•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 대전제 :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 대전제 반론의 근거 : 이 대전제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반박하라고 출제되지 않는 것임. 아니면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형제 찬성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전제를 반박할 수는 있다.

● 제시문 분석, 독해 유형

•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번, 11번 (논술문 포맷), 15번

1. 유형 소개

생활과 윤리 과목은 윤리와 사상과는 달리, 윤리학 이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응용 윤리’적 성격을 지닌다.

‘제시문 분석, 독해 유형’은 이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석, 독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제시문 분석, 독해 유형’에서도 분명 변화가 있다. 생활과 윤리 예비시행 (2014학년도) ~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제시문 분석, 독해 유형’은 제시문을 쓱 읽고 선지를 보면 바로 바로 답이 나오는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였다. 하지만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부터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근 1년동안 생활과 윤리의 ‘독해형’ 문항들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쟁점별 독해’, ‘삼단 논법 전제 추론’ 유형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전 기출에 비해서 최근 기출은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논리적 복잡성이 증가했다. 특히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제시문의 길이가 ‘국어 문제’를 푸는 것 같이 길어지고 논리적 구조가 복잡해졌다.

‘제시문 독해 유형은 그냥 읽고 풀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능에서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논리적 복잡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쉬운 문항들에서도 ‘시간과 집중력’을 낭비할 수 있고, 킬러 문항에 사용해야 할 ‘시간, 집중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자의 돌 분석서’에서 대비법을 자세하게 제시할 것이므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시문 독해 방법론을 꼭 연습하길 바란다. (사실 위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쟁점별 독해도 제시문 독해 방법론 훈련의 일환이다.)

2. 유형 해결 방법

1) 단일 제시문 中 설명문

설명문 유형은 특정 주제(범주)를 여러 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식의 제시문을 말한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번 참조) 보통 설명문 유형의 경우 제시문을 잘 읽고, 선지와 대응을 시키면 쉽게 풀 수 있다.

제시문 독해

특정 주제(범주)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므로 잘 나눠서 읽고, 나눠진 항목들에 대한 필자의 가치판단에 주목해서 독해를 하면 된다.

선지

발문으로 보통 설명문의 입장이 아닌 것은? 혹은 입장인 것은? 이렇게 사실적 독해를 하는 문항이 나온다. 설명문의 필자의 입장과 선지를 대응시켜서 풀면 된다.

41)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꼼꼼하게 분석하였다.
42) 레건 『동물권 옹호』 2판(2004), 243p ; 최훈 등 5인, 『동물 실험 윤리』, 로도스, 113p 재인용
43) 선형적 : 경험에 앞선 것, 경험을 배제한 것.
44) 반론과 반론의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정리하였다.

2) 단일 제시문 中 논설문(논술문)

논설문(논술문) 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주장-논거의 논증 구조로 이루어진 글이다.

보통 논설문(논술문)의 유형의 경우, 주장-논거 구조의 제시문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유형이 출제된다.

제시문을 주장-논거 구조로 분석하고, 해당 주장-논거의 입장에서 선지를 평가하거나 해당 주장-논거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혀주면 된다.

제시문 독해

필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을 제시했는지,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선지

보통 필자의 입장에 대응하거나 반대하는 선지가 무엇인지 추론해야 하는 문항이 출제된다. 제시문 독해를 잘해서 주장-논거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맞춰서 선지를 해결하면 된다. 전체적으로 말은 복잡한데 실제로 해보면 별로 안 어렵다. 이제 연습해보자.^^

3.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 제시문 & 선지 분석 트레이닝

1) 단일 제시문 中 설명문 유형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번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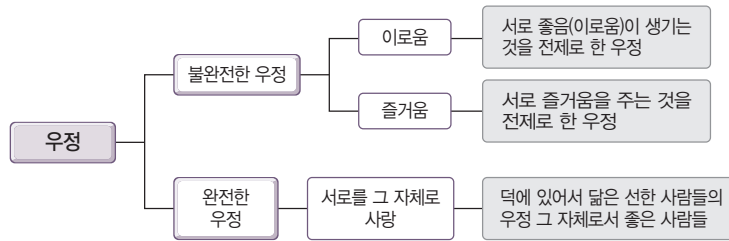
우정에는 각기 대응하는 사랑이 존재한다. 이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부터 어떤 좋음[善]이 생기는 한 사랑하는 것이다. 즐거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완전한 우정은 덕에 있어 닮은 선한 사람들의 우정으로 이 경우에만 서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 자체로서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① 유덕한 성품을 갖춘 사람들만이 완전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 ② 이익과 쾌락에 기초한 우정은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③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은 어떠한 우정도 맺을 수 없다.
- ④ 유덕하지 못한 이들의 우정에서는 어떠한 선도 생겨나지 않는다.
- ⑤ 모든 우정은 행위의 좋음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다.

★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제시문으로 출제된 내용이 수능에서 그대로 선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제시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자.

문제풀이 방법 적용

특정 주제를 여러 하위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자.



선지 분석

① 유덕한 성품을 갖춘 사람들만이 완전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

⇒ 제시문은 완전한 우정은 ‘덕에 있어서 닮은 선한 사람들’이 맺은 우정이라고 설명한다.

덕에 있어서 닮은 선한 사람이란 선한 사람이고, 좋은(善) 덕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유덕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유덕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 완전한 우정을 맺을 수 있는데 완전한 우정은 곧 ‘서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고, ‘그 자체로 좋은 사람들’(그 자체로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이로움(좋은), 쾌락 때문에 우정을 맺는 사람들은 서로 잘 되기를 바라거나 그 자체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움과 쾌락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유덕한 사람들의 우정 ‘만’ 서로를 좋아하거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따라서 결국 그들은 완전한 우정을 맺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유덕한 성품을 갖춘 사람들만이 완전한 우정을 맺을 수 있다고 개연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② 이익과 쾌락에 기초한 우정은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 ‘호혜적 관계’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서로 이익이나 쾌락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좋음이 생기는 한 사랑’하는 것,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곧 호혜적 관계이다.

③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은 어떠한 우정도 맺을 수 없다. (×)

⇒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은 상호 이익, 상호 즐거움을 전제로 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그들이 맺지 못하는 우정은 ‘완전한 우정’이다.

④ 유덕하지 못한 이들의 우정에서는 어떠한 선도 생겨나지 않는다. (×)

⇒ 유덕하지 못한 이들의 우정에서는 ‘상호 이익(Mutual interest, Mutual benefit)’을 얻을 수 있고, 본문에서 이것을 ‘어떤 좋음[善]’이라고 말한다. 평가원은 善이 ‘좋은 선’이라고 읽는 것 정도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에서 [漢字] 형식으로 [] 안에 한자를 넣어서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한자를 모르더라도 개연적으로 풀거나 개념 학습에서 익힌 내용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⑤ 모든 우정은 행위의 좋음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다. (×)

⇒ 이로움 혹은 즐거움 때문에 사랑하는 우정은 행위자의 성품이 아닌 행위자의 행동의 결과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가 아니고 그 행위자가 내게 줄 수 있는 (행위를 통해) 이익과 즐거움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완전한 우정을 맺는 유덕한 사람들은 행위의 좋음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사랑할 것이다. 행위자의 성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행위자의 덕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 덕은 Virtue이고, 실제로 생활과 윤리 1단원에서 ‘덕윤리’로 배우는 내용이다.

개념 학습에서 덕윤리가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자의 성품(도덕적 성품)’을 중요시하는 입장임은 공부했을 것이다.

더 알아보기

① 善(좋은, 선)의 의미

본 내용은 참고 사항이므로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면 좋겠다.

善(좋은, 선)은 철학적으로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의미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善은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덕에 있어서 닳은 선한 사람’에서 선(善)이란, 그리스 철학의 최고의 가치인 진선미(眞善美) 중 선을 말한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善은 존재의 목적(존재자, 사물의 존재 목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 윤리 학자 중 생명 중심주의인 폴 테일러가 말하는 ‘고유의 선(善 = 목적)’과 같은 의미이다.

• 2016학년도 수능

테일러 : ‘동식물은 고유의 선을 갖는 실체이다.’

•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테일러 :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이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어떤 좋음[善]’은 Good(이익, 좋은 것), Interest(이익)의 의미를 갖는다. 공익(The public good, The public interest)에서 말하는 선(Good), 이익(Interest)과 같은 의미이다. 이는 공리주의와 싱어가 강조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이는 공리주의와 싱어가 강조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칸트는 옳음[眞]이 좋음[善]보다 우선한다고 말하며 공리주의를 비판하는데, 여기서 옳음은 공리주의적 이익을 의미하기도 한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

• EBS 수능특강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곳에 우정⁴⁵⁾이 존재한다. 또한 우정은 반드시 선(善) 속에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우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⁴⁶⁾ 서로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정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자의 돌 평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에 대한 관점을 불완전한 우정과 완전한 우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반면 위의 EBS 제시문은 완전한 우정만이 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9월 평가원 지문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능은 평가원 기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위 지문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곳에 (완전한) 우정이 존재한다. 또한 (완전한) 우정은 반드시 선[善] 속에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완전한) 우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서로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우정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수능특강에서는 ‘우정은 반드시 선[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반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부터 어떤 좋음[善]이 생기는 한 사랑하는 것이다. (중략) 완전한 우정은 덕에 있어 닳은 선한 사람들의 우정으로 이 경우에만 서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 자체로서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좋음[善]을 얻는다고 말한다. 같은 한자인 善을 음과 뜻을 다르게 읽으면서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 이것이 수능에서 출제될 경우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우정이 구하는 좋음[善]은 Interest(이익)의 의미이고, EBS 지문의 완전한 우정이 반드시 선(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때의 善은 그리스 철학의 최고의 가치인 진선미(眞善美) 중 선(善)을 말하거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존재의 목적(존재자, 사물의 존재 목적)으로서의 선(善)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⁷⁾

• EBS 수능특강

친구를 위해서 좋은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참된 의미의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⁴⁸⁾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정은 그들이 선하게 사는 동안 유지된다. 그리고 선은 오래 지속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EBS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남과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였다.

관련 EBS 지문 정리

• 수능특강 78p

아리스토텔레스 :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곳에 우정이 존재한다. 또한 우정은 반드시 선(善) 속에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우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서로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정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친구를 위해서 좋은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참된 의미의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

관련 EBS 선지 정리

• 수능특강 78p :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일

- ㄱ. 친구가 옳은 행위를 실천하여 유덕해지도록 도와야 하지요. (○)
- ㄴ.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익이 아닌 도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요. (○)
- ㄷ. 친구는 사회적 관계의 초석이므로 형제자매 관계보다 중요시되어야 해요. (×)
- ㄹ. 친구를 자기 계발의 수단으로 삼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

45) 이 제시문의 ‘우정’은 문맥적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번의 ‘완전한 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6) 문맥적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번의 불안정한 우정, ‘이로움’으로 인한 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7) 둘 중에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眞善美의 善과 텔로스(목적)로서의 善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48)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의 입장에서 모든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목적, 목표, 본질(텔로스)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목적(목표, 본질,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삶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론적 사고가 환경윤리학자 테일러에게 이어졌다.

2) 단일 제시문 中 설명문 유형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

15.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과거보다 교묘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중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대중 예술에 투사된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는 기만적 대리만족이다. 문화 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개인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경제적·사회적 장치의 산물이다. 문화 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은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관철한다.

<보 기>

- ㄱ. 대중 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ㄴ. 대중 예술의 영역과 권력의 영역은 상호 무관하게 작동한다.
- ㄷ. 대중 예술은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대중 의식을 조작한다.
- ㄹ. 대중 예술의 감상은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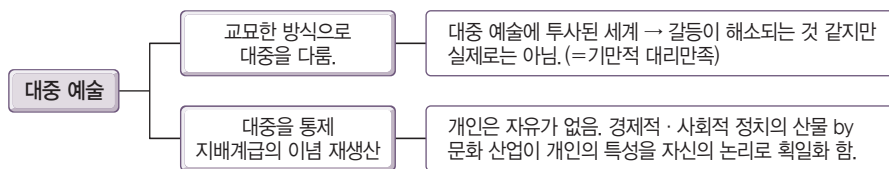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풀이 방법 적용

특정 주제를 여러 하위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자.



<보기> 선지 분석

ㄱ. 대중 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 제시문으로부터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대중 예술’이고, 그 상품이 ‘대중 예술품’이므로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대중 예술품’을 통해 대중을 통제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가 ‘대중’을 통제하는 목적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하려는 것이다. 결국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의 이념이란 ‘자본주의’일 것이고, ‘자본주의’의 특징은 사회의 모든 것을 재화와 서비스, 즉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그 특질을 바꾸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ㄱ은 제시문의 서양 사상가가 동의할 입장이다.⁴⁹⁾

ㄴ. 대중 예술의 영역과 권력의 영역은 상호 무관하게 작동한다. (×)

⇒ 제시문은 ‘문화 산업’이 ‘대중 예술’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화 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이는 곧 ‘지배계급의 이념’이 대중을 통제하고 문화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의 사상가는 대중 예술의 영역이 권력의 영역에 영향을 받으며 작동한다고 볼 것이다.

ㄷ. 대중 예술은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대중 의식을 조작한다. (○)

⇒ 제시문의 사상가는 대중 예술에 투사된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느낌을 주지만 그것은 ‘기만적 대리만족’이라고 말한다. 이는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하려는 문화 산업이 대중 예술을 통해 자신의 논리(=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하기 위한 논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이 이념을 재생산한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적 이념을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적 이념이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해서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러한 자본주의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했으며 결국 이는 소득, 부의 양극화를 야기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현대 사회는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부를 소유한 극단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는 실제로 엄청난 현실적 모순이 있다. 예컨대 ‘고기’에 대한 모순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자 나라에서는 1kg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수십 kg의 곡물을 소와 돼지에게 먹인다. 동시에 아프리카 등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극빈국의 사람들은 한 톨의 곡물조차 없어서 진흙을 파이처럼 구워서 먹는다.

제시문의 서양 사상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한 현실적 모순을 은폐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부자와 극빈층의 갈등을 ‘언터처블 : 1%의 우정’⁵⁰⁾과 같은 대중 예술품(영화)을 통해서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느낌’을 줌으로써 은폐한다는 것이다. 제시문은 이를 ‘기만적 대리 만족’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부유층과 극빈층 사이의 갈등이 현존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두 계층이 투사된 백인 부자와 흑인 빈자 사이의 우정을 통해 ‘기만’적으로 해소된다. 또한 실제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리 만족’인 것이다.^{51) 52)}

ㄹ. 대중 예술의 감상은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다. (×)

⇒ 제시문은 ‘문화 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이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관철한다고 말한다. 제시문의 학자는 대중 예술이 개인을 획일화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사상가는 대중 예술의 감상이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입장 : 아도르노 vs 워홀 비교

★ 아도르노 : 예술의 상업성 비판

• EBS 수능특강 163p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대중 매체는 극소수 독점 자본가들의 소유 아래 있으며, 그들은 단지 이윤 추구를 위해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와 예술을 상품화한다. 이러한 문화산업은 예술을 흉내 내는 것일 뿐이며 규격화된 획일성으로 예술을 재생산하여 왜곡함으로써 예술의 진지성을 해친다. 문화 산업의 본질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들의 요구와 반응을 조작하여 그들을 기만하는 데 있다.

<보기> 선지 분석

ㄱ. 문화 산업으로 인해 예술이 표준화되었다. (○)

⇒ 독창성 상실

ㄴ. 예술의 상업화로 인해 예술의 본질 실현이 어려워졌다. (○)

⇒ 예술이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예술의 역할인 ‘자본 논리로 움직이는 사회 비판’을 할 수 없어짐.

ㄷ. 대중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미적 체험이 가능해졌다. (×)

⇒ 오히려 아도르노(제시문)는 문화 사업이 예술을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상품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획일화된 예술품을 통해서 ‘다양한’ 미적 체험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49) 아마 많은 학생들은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지는 못하고, 그냥 선지 소거법으로 풀었거나 알쏭달쏭하지만 ‘그냥 뭐 맞겠지’라며 풀었을 것이다. 일단 시험인 만큼 그렇게라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능까지 1달 여의 시간이 남았으므로 이 분석서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열심히 독해와 선지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면 분명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0) 프랑스 영화로, 상위 1%의 나이 든 백인 부자의 간병인으로 하위 1%의 흑인 전과자가 취업을 하고 진정한 우정을 쌓는다는 이야기

51) 15번의 제시문과 선지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에는 해당 선지의 설명 맨 앞부분 한 문장 제시문의 사상가는 대중 예술에 투사된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느낌을 주지만 그것은 ‘기만적 대리만족’이라고 말한다.’를 찾아서 선지와 연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52) 한편, 이러한 갈등론적 서술에 대해서 필자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계급 갈등론적 시각을 지닌 아도르노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피스크의 사상에 동의한다. 필자는 이 책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며, 오직 제시문의 사상가의 견해를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자.

ㄹ. 문화 사업이 성장하면서 대중들의 사회 비판 의식도 강화되었다. (×)

⇒ 제시문은 문화 산업이 대중들의 요구와 반응을 조작하며, 기만한다고 말한다. 기만된 대중은 사회 비판 의식을 잃고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의견은 아도르노가 아닌 피스크의 입장이다. (수능특강 국어 130p의 비문학 문제 참고)

• EBS 수능특강 164p

현대 산업 사회에서 문화는 물신화-상품화되었다. 모든 예술적 가치는 오직 시장의 교환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즉 예술 작품들이 미적 가치가 아니라 교환될 수 있는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자본주의 경제 주체들에 의해 문화가 주도되고 형성되면서도 교묘하게 순수한 예술 작품의 자율적 형식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업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 : “예술이 지녀야 할 반성적이고 창의적인 면을 상실하게 된다.”

★ 앤디 워홀 : 예술의 상업성 긍정

• EBS 수능특강 158p

워홀 : 예술의 상업성을 옹호하며 자신을 ‘사업 미술가’, 작업실을 ‘공장’으로 표현함.

• EBS 수능특강 164p

“나는 상업 미술가로 출발하여 사업 미술가로 끝을 마치고 싶다. 사업과 연관된 것이 가장 매력적인 예술이다.”

예술의 상업화로 인한 문제

- ① 예술의 본질 왜곡 : 예술이 상업화 되면 예술 작품의 가치를 미적 가치가 아닌 교환가치(시장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이는 곧 예술이 자율성을 잃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며 하나의 재화(상품)로 취급받는 것이다.
- ② 예술의 획일화 : 예술품이 표준화되기 때문에 감상자의 감상까지 획일화 된다. 감상은 더 이상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비 양식에 따라 유도된 반응일 뿐이다.
- ③ 인간성의 황폐화 : 상업화된 예술은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선정성이 강해질 수 있다. 결국 예술의 수준이 저하되고, 바람직한 인간성을 왜곡, 파괴할 수 있다.

3) 단일 제시문 中 논설문(논술문) 유형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1번

11.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⁵³⁾

강연자 : “기업은 자유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시장 실패를 통해 그 부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사례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의 핵심은 환경오염의 처리 비용을 당사자인 기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미래 세대 같은 제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외부 효과 발생의 책임은 해당 기업이 져야 합니다. 설령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기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 ① 기업은 외부효과 방지를 위해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해야 하는가?
- ② 기업은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책무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③ 기업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 ④ 기업은 공공선을 위해 이윤 추구에 대한 제약을 승인해야 하는가?
- ⑤ 기업은 시장 실패가 지역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로 분석하기⁵⁴⁾

[제시문]

- 비판 대상 : 신자유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자유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주장 1 :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
- 논거 1 : 기업이 자유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시장 실패(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주장 2 : 기업은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논거 1 :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처리 비용을 당사자인 기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미래 세대 같은 제삼자가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 주장 3 : 기업은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선지 분석

① 기업은 외부효과 방지를 위해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해야 하는가? (×)

⇒ 제시문에 따르면 기업이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할 때,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하여 외부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53) 원 문항에 있는 강연자 그림은 생략

54) 주장 + 논거 분석은 적당히 하면 된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다. 제시문에 밑줄치고 주장, 논거라고 표시만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제시문을 논증 구조(주장 - 논거)로 독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참고용이니깐 꼼꼼하게 분석한 것임)

55) 깨끗한 물과 공기는 공공재가 아닌 공유재이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비 경쟁성을 지닌 재화’를 말한다. 하지만 깨끗한 물, 공기는 그 양이 제한된 희소한 자원(=환경 오염 등의 영향으로 현대 사회에서는)이므로, 한 사람이 소비를 할 경우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저해하는 ‘경합성’을 지닌 자원이다.(=희소 재화의 몫이 줄어들음) 이처럼 경쟁성을 지닌 재화를 경제학에서는 ‘공유재라고 한다.(물론 공유재, 공공재 모두 비배제성을 지닌다.) 평가원이 경제학 개념을 혼동한 것 같다. 물론 생활과 윤리에서는 공공재, 공유재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경제 선택자 참고용.

② 기업은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공재⁵⁵⁾에 대한 책무를 인정해야 하는가? (○)

⇒ 만약 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켜서 공기의 질을 낮췄다면, 기업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은 그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반 시민, 미래 세대 같은 제삼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당사자인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유재에 대한 책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 기업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

⇒ 제시문은 기업이 만든 부정적 외부효과(㉠ 환경오염)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제시문은 기업이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개연적으로⁵⁶⁾ 추론할 수 있다.

④ 기업은 공공선을 위해 이윤 추구에 대한 제약을 승인해야 하는가? (○)

⇒ 제시문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활동은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시문은 기업이 그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민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곧 공공선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개연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물론 제시문의 마지막 줄에 ‘기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곧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⑤ 기업은 시장 실패가 지역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는가?⁵⁷⁾ (○)

⇒ 제시문에 따르면 기업이 시장 실패가 지역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 기업의 역할을 이윤 극대화만으로 한정할 경우 일반 시민, 미래 세대라는 제삼자에게 자신이 불러온 부정적 외부효과(㉠ 환경오염)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시장 실패의 악영향을 인지한다면 시장 실패를 조심할 것이고 시장 실패가 발생해도 그것을 책임지려고 할 것이다.

※ ⑤ 선지의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만 아마 이런 의미로 출제된 것 같다.

더 알아보기

① EBS 읽기 자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개념 플러스] EBS 수능특강 145p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나 국가 경제 발전과 경제 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 [자료 플러스] EBS 수능특강 146p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프리드먼의 견해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직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업은 책임을 질 수 없다. 자유 경제 체제 하에서 경영자들은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소유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운영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회의 기본 규칙을 지키면서 가능한 최대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그가 만약 인플레이션 방지라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비를 늘리는 것을 참거나,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일 등을 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사회적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주체롭게 나서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프리드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일부 요약〉

EBS 해설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자유 시장 경제의 틀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기업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에 의하면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이윤의 극대화임을 강조한다.

② 2016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최근 사회 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국 사회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는 틀을 만들었다. 개인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와 훈련이라는 의미의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사회적 자본 이론의 핵심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스크루드라이버(물리적 자본) 혹은 대학 교육(인적 자본)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듯이 사회적 접촉 역시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듯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몇몇 사람들이 시민적 품성이라고 부르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민적 품성은 호혜적 사회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사회적 자본은 주목한다. 〈퍼트남, “나 혼자 불링”〉

EBS 해설 퍼트남에 의하면 사회 성원들 간의 신뢰, 사회 제도와 정책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정착되어야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 자본은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켜 사회적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 조직의 속성을 지칭한다. 사회 연결망, 신뢰, 호혜성 규범 등으로 이뤄지는 한 공동체의 사회 자본은 그 공동체의 민주주의, 경제 발전, 치안,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자본으로 인해 시민의 집단적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되며, 공동체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 공동체의 처지를 개선하며, 유용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4) 단일 제시문 中 논설문(논술문) 유형 : 신유형 분석⁵⁸⁾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1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기본적 권리는 문화라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문화적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경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집단 간 문화의 장벽을 영속화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주장이 _____ ㉠ _____ 고 생각한다.

- ① 집단 간 문화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문화보다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다문화주의가 법 적용의 일반성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이 보편적 인권과 어긋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56) 논리적으로 100% 엄밀하지는 않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57) 선지 문장이 조금 어색하다. 선지를 ‘기업은 시장 실패가 지역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정도로 다시 써볼 수 있다.
 58) 정확히 말하면, 이 문항도 신유형은 아니다. 2014학년도 수능 10번, 2015학년도 수능 12번,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에서 출제된 적이 있다. 하지만 2014학년도 예비평가부터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12회 240문항 중 3문항이 출제된 유형이므로 그리 흔한 유형은 아니다. 현자의 돌 수능 분석서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유형인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고 올해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유형이라고 이름 붙였다.

※ 참고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신유형 분석 가이드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논반재 분석하기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은 신유형의 제시문이다. 인문 논술(수시용)을 공부해본 학생들은 ‘견해쓰기’ 논설문(논술문)을 쓰는 방법을 알 것이다.

예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논술문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롤스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걷고,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의무이다. 부의 분배는 정의에 부합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여 각자의 신분과 능력, 편견을 고려사항에서 지울 때 우리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것이다. 그 정의의 원칙 중 2-⑥ 원칙이 바로 부의 재분배를 긍정하는 차등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의 과도한 재산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물론 어떤 학자는 부자의 재산은 그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체와 정신을 사용하여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서 소유권적 정의론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학자는 부자가 재산을 얻을 때 사용한 그의 재능은 자연적 행운일 뿐이고, 그의 재능이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자가 가진 재능과 능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큰 부로 보상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그런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으로 얻은 재산은 그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속하는 재산이 아니며,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할 권리를 가지므로 부자와 달리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최소 수혜자가 된 사람들에게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나눠줘야 한다.

방금 필자가 롤스의 견해를 참고하여, 즉석에서 써본 논설문(논술문)이다. 이 논설문을 분석해보자. 기본적으로 논설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필자의 주장-논거] → [예상되는 반론 + 해당 반론에 대한 재반론] : 주논반재

- 주장 :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걷고,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의무이다.
-
- 논거 : 부의 분배는 정의에 부합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여 각자의 신분과 능력, 편견을 고려사항에서 지울 때 우리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것이다. 그 정의의 원칙 중 2-⑥ 원칙이 바로 부의 재분배를 긍정하는 차등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의 과도한 재산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 ⇒
- 반론 : 물론 어떤 학자는 부자의 재산은 그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체와 정신을 사용하여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서 소유권적 정의론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
- 재반론 : 하지만 그 학자는 부자가 재산을 얻을 때 사용한 그의 재능은 자연적 행운일 뿐이고, 그의 재능이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자가 부자의 재능과 능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큰 부로 보상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그런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으로 얻은 재산은 그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속하는 재산이 아니며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할 권리를 가지므로 부자와 달리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최소 수혜자가 된 사람들에게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나눠줘야 한다.
- ⇒ 신유형에서는 재반론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② [주 + 논] + [반]을 통해 선지 판단하기

기본적으로 재반론(㉠) 부분에서는 [주장과 논거]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예상 반론]의 주장이나 논거를 반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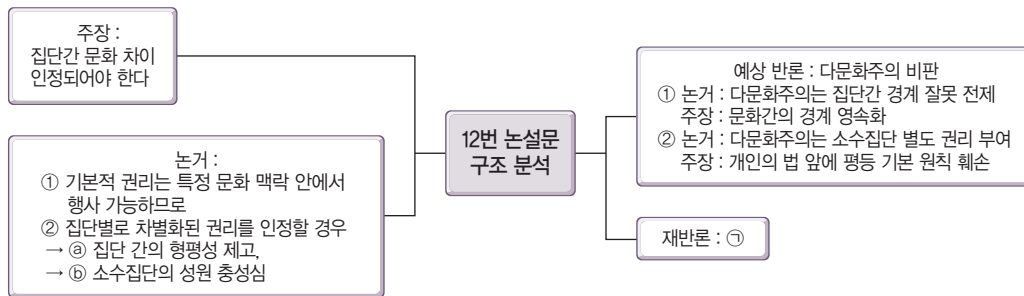
선지는 ‘~를 강조하고 있다.’, ‘~를 간과하고 있다.’가 출제된다.

- ~를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이 강조할 것은 [예상 반론]의 주장과 논거와 입장이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한다.
⇒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
- ~를 간과하고 있다. : [예상 반론]이 간과한 것은 필자의 [주장과 논거]와 입장이 같은 것이다.
⇒ [필자]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 + [반론 + 재반론]으로 분석하기

- 주장 : 집단 간 문화적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
- 논거
 - ① 기본적 권리는 문화라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 ②-㉠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 ②-㉠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한다.
 ⇒
- 반론 : 그런데 어떤 학자는
 - ①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경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집단 간 문화의 장벽을 영속화시킬 뿐 아니라,
 - ② 소수집단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라고 주장한다.
 ↓
- 재반론 : 나는 이 학자의 주장이 ㉠ 고 생각한다.



② [주 + 논] + [반론]을 통해 선지를 판단하기⁵⁹⁾

-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

59) 물론 이 책에서는 학습자들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주장-논거]를 꼬박 꼬박 나눠주고 있지만, 그냥 [주장-논거]를 하나로 통쳐서 정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단 [주장-논거]가 필자의 입장인지, 필자를 비판할 수 있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는 학자의 입장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 집단 간 문화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됨을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에서 어떤 학자는 ‘문화 간 경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라고 말하며(논거 1), 문화 간의 경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다문화주의가 ‘각 문화 간의 장벽(경계)을 영속화’시킬 것이라며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데 이는 ‘집단 간 문화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 다문화주의가 법 적용의 일반성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에서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가 소수 집단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고 ‘개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비판한다. (논거 2)

이 선지는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논거 2 + 주장 2)

• 간과하고 있다. : [필자]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⁶⁰⁾

㉢ 문화보다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주장-논거]에서 필자는 ‘문화라는 특정 맥락 안에서’,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논거 1) 이는 오히려 문화가 권리에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입장에서 선지 2는 우선시하는 것이 서로 바뀐 잘못된 선지이다.

㉣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이 보편적 인권과 어긋남을 간과하고 있다.

⇒ [주장-논거]에서 필자는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시킨다고 주장한다.

(논거 2-㉠)

즉, 오히려 필자는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을 긍정하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집단 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이 오히려 문화라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기본적 권리’(=보편적 인권)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논거 1)

따라서 필자의 [주장-논거]에 따르면 필자는 오히려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이 ‘보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만들 것이라 주장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차별화된 권리의 보장이 보편적 인권과 어긋남’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바로 [예상 반론]에서 어떤 학자가 주장할 내용이다. [예상 반론]에서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인권(=‘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 시킨다’고 주장한다. (논거 2)

따라서 선지 ㉣는 필자가 ‘~고 생각’할 수 없는 선지이고, 오히려 [예상 반론]에서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바이므로,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주장-논거]에서 필자는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할 경우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한다.’(논거 2)고 말한다. 집단 간의 관계가 형평성을 갖추고 소수 집단의 성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된다면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 집단들이 마치 샐러드 볼에서 다양한 채소들이 자신들의 색과 맛을 지키는 동시에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사회가 통합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 ㉤가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선지이다.

어떤 기출문제 해설서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들의 출제 원리이다. 12번 구조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상 반론]의 논거 1이 선지 ‘~강조하고 있다.’의 첫 번째 선지 ㉠로 출제되었고, 논거 2가 선지 ‘~강조하고 있다.’의 두 번째 선지 ㉢으로 출제되었다.

[필자]의 논거 1이 선지 ‘~간과하고 있다.’의 첫 번째 선지 ㉡로 출제되었고, 논거 2-㉠가 선지 ‘~간과하고 있다.’의 두 번째 선지 ㉢으로 출제되었고. 논거 2-㉡가 정답 선지이자 ‘~간과하고 있다.’ 선지의 마지막인 선지 ㉤로 출제되었다.

제시문(필자)의 [주장-논거] + (어떤 학자의) [예상 반론] 서술 순서와 선지의 정답/오답 판정의 순서가 정확히 동일하다.

이 문항의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기출 문제집들의 해설과 인강 해설들이 얼마나 표면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문항을 이렇게 출제 원리에 따른 문제 풀이 방법론으로 연습하고, 기술적인 방법을 써서 빠르게 판정하는 방법도 연습한다면 생활과 윤리 기출문제를 올바르게 공부할 것이고, 수능에서도 분명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술형 개념형 문제들에서도 이런 현실은 동일하다.

제시문을 보고 ‘롤스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모든 표현과 문장 하나하나를 꼭꼭 누르면서 기출을 학습해야 한다. 제시문과 선지의 논리적 연결고리도 꼭꼭 누르면서 하나 하나 따지면서 기출을 학습해야 한다. 선지의 표현들도 그 논리성과 의미를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분석해야 한다.

『현자의 돌 2016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분석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아, 물론 이 『현자의 돌 2017학년도 6, 9월 통합 생활과 윤리 분석서』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능까지 꼼꼼하게 읽기를.

㉢ (필자의) [주 + 논] + (어떤 학자의) [예상반론] 독해 유형 연습용 기출

아래 기출문제는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 텍스트 양이나 논리의 복잡도가 낮다. 아래 문제로는 연습용 훈련을 실시하고, 실전인 수능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공부하자.

2014학년도 수능 10번

1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좋은 음악이라면 유덕한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술에 내재된 미(美)는 우리의 정신을 고상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시(詩)가 도덕적이란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의 견해에 대해 ㉠ 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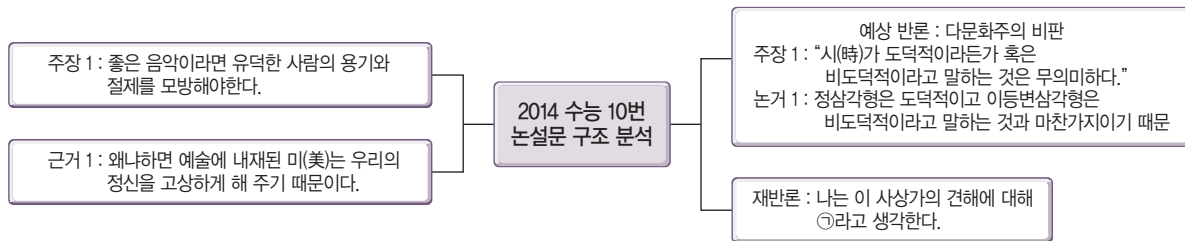
- ㉠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 ㉡ 예술이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 예술의 극치가 도덕의 극치와 서로 통함을 강조하고 있다.
- ㉣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 예술이 미(美)보다 선(善)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60) 물론 꼼꼼하게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한다. 내용도 안 읽고, 판단도 안 하고, 기계적으로 풀면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적용되는 규칙도 수능에서는 안 통하도록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Part 3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1(독해력과 논리력으로 풀리는 문항 / 제시문 & 선지 분석 트레이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꼭 주의하자. 문제를 맞히는 것은 꿈수나 기술이 아니고 본인의 독해력과 논리적 판단 능력이다.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꿈수나 기술도 유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위권 학생들도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배운다면 시간이나 집중력을 덜 쓰게 되니 당연히 이득이다. 그래서 이 분석서는 정석적으로 올바르게 푸는 동시에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까지 정리하는 것이다. 둘 다 익힐 것.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 + [반론 + 재반론]으로 분석하기

- 주장 1 : 나는 좋은 음악이라면 유덕한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논거 1 : 왜냐하면 예술에 내재된 미(美)는 우리의 정신을 고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 ⇒
- 반론 :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 주장 1 : “시(詩)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한다.
- 근거 1 :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 ↓
- 재반론 : 나는 이 사상가의 견해에 대해 ㉠라고 생각한다.



현자의 돌 평

논리 구조가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고, 쉬운 제시문이 제시되었다. 주논반재 구조가 그냥 제시문 한 문장씩으로 이뤄져 있지만 잘 봐둘 것.

② [주 + 논] + [반론]을 통해 선지를 판단하기

-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

㉠ 예술의 극치가 도덕의 극치와 서로 통함을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에서 어떤 사상가는 “시(詩)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한다. (주장 1)
 또한 시(詩)와 도덕성을 논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한다. (근거 1)
 이는 곧 예술(시(詩))과 도덕이 삼각형과 도덕만큼이나 무관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결국 예술의 극치와 도덕의 극치도 서로 통하지 않음을 개연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 예술아 미(美)보다 선(善)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상 반론]에 어떤 사상가는 예술과 도덕 사이의 무관함을 강조한다. 이때, 맥락상 도덕은 선(Goodness, 善)과 유사한 의미이다. 곧 선[善]을 추구하는 것은 곧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 간과하고 있다. : [필자]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

주장 1 : 나는 좋은 음악이라면 유덕한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거 1 : 왜냐하면 예술에 내재된 미(美)는 우리의 정신을 고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①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 [주장-논거]에서 필자는 예술에 내재된 아름다움이 우리의 정신을 고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논거 1)

좋은 예술(음악)은 유덕한 사람의 용기와 절제⁶¹⁾를 모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장 1)

이는 곧 예술의 역할을 우리의 정신을 유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선지 ①의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필자]의 [주장-논거]와 일치하는 것이다.

㉔ 예술이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선지 ① 분석에서 썼듯이 필자는 예술과 도덕 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필자]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㉕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선지 ① 분석에서 썼듯이 필자는 예술과 도덕 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필자]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2015학년도 수능 12번

12.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의 사명은 생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등을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작가는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는 것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작가의 견해가 _____ ㉔ _____ 라고 생각한다.

- ① 예술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예술은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을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예술과 도덕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예술이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 + [반론 + 재반론]으로 분석하기

• 주장 1 : 예술의 사명은 생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등을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

• 논거 1 :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기 때문이다.

⇒

• 반론 : 그런데 어떤 작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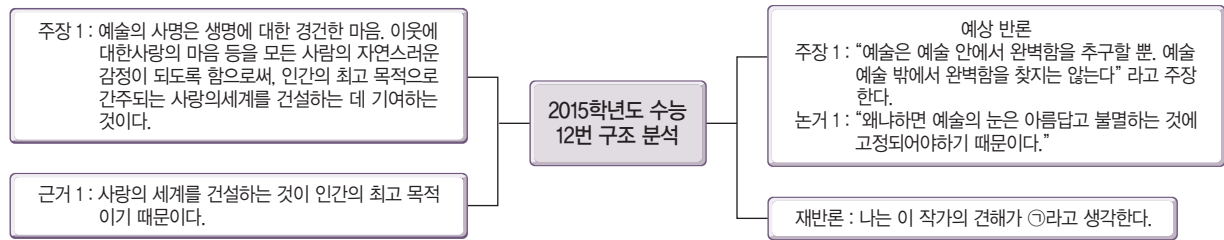
• 주장 1 :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는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 논거 1 :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는 것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 재반론 : 나는 이 작가의 견해에 대해 ㉔라고 생각한다.

61) ‘유덕한 사람의 용기와 절제’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덕(Arete)을 지혜, 용기, 절제와 같은 ‘탁월함’으로 보았다. 반면, 공맹 유교에서 말하는 덕[德]이란 도[道]를 행해서 체득한 품성, 인격을 의미한다. 한편, 노장 도가에서는 도[道]를 추상적인 우주 만물의 원리로 보았고, 덕[德]은 그러한 도가 현실세계에 구체화된 것으로 보았다. 물론 도가의 경우 ‘도가도 비상도(도를 도라 말하면 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언어화된 정의를 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② [주 + 논] + [반론]을 통해 선지를 판단하기

•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

㉠ 예술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에서 어떤 작가는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주장 1)
 ‘예술 안’이란 예술 그 자체를 말하며, ‘예술 밖’이란 예술 그 자체가 아닌 그 이외의 것, 예컨대 ‘도덕’을 말한다. 어떤 작가는 선지 ㉠이 말하는 ‘예술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는 것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1)

따라서 이 선지는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 예술과 도덕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에서 어떤 작가는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주장 1)
 ‘예술 밖’이란 예술 그 자체가 아닌 그 이외의 것, 예컨대 ‘도덕’을 말한다. 즉 어떤 작가는 예술은 도덕과 같은 예술의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하려 한다.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는 것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1)
 따라서 어떤 작가는 선지 ㉡가 말하는 ‘예술과 도덕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어야 함.’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 간과하고 있다. : [필자]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

㉢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주장-논거]에서 필자는 예술의 사명(=목적)은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논거 1)
 따라서 선지 ㉢의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함’은 [필자]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오히려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함’은 [예상 반론]의 어떤 작가가 주장-논거에서 한 말이다. [예상 반론]에서 어떤 작가는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주장 1)
 즉 어떤 작가는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 강조하는 입장이지, 간과하지는 않는다.

㉣ 예술은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을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주장-논거]에서 필자는 예술의 사명(=목적)은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논거 1)
 또한 필자는 그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등을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장 1)
 이는 곧 예술이 사람들의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선지 ㉣과 같은 맥락이라고 개연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 ㉣의 ‘예술은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을 도와야 함’은 [필자]의 [주장-논거]와 일치하는 것이다.

㉤ 예술이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주장-논거]에서 필자는 예술의 사명(=목적)은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논거 1)
 또한 필자는 그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등을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장 1)

따라서 필자에게 예술이 어떤 활동이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도덕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선지 ⑤는 [필자]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오히려 [예상 반론]의 어떤 작가가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는 것에 고정되어야”한다며(논거 1), 예술을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1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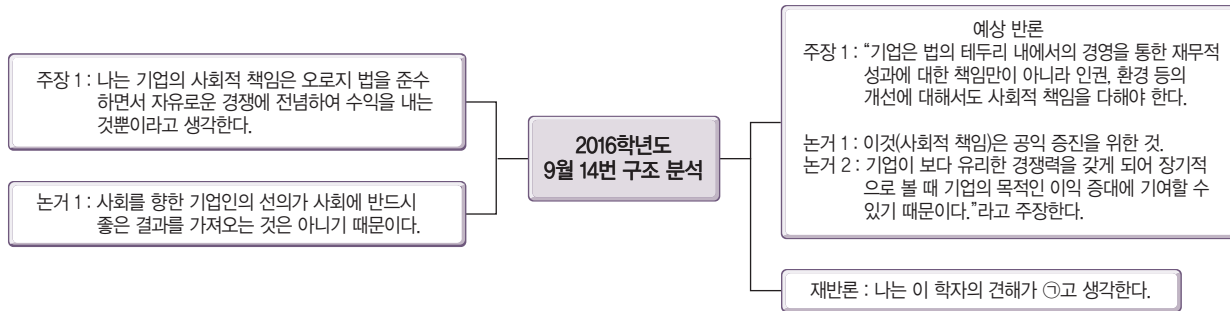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를 향한 기업인의 선의가 사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등의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공익 증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목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견해가 ㉠고 생각한다.

- ① 기업의 책임과 주주들의 이익 증진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기업의 이윤 추구와 공익이 양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기업의 공익 활동이 기업 경쟁력 상실의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합법적인 경영이 합리적인 이윤 추구의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주장 + 논거] + [반론 + 재반론]으로 분석하기

- 주장 1 :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
- 논거 1 : 사회를 향한 기업인의 선의가 사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 반론 : 그런데 어떤 학자는
- 주장 1 :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등의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논거 1 : 이것(사회적 책임)은 공익 증진을 위한 것.
- 논거 2 :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목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
- 재반론 : 나는 이 학자의 견해가 ㉠고 생각한다.



② [주 + 논] + [반론]을 통해 선지를 판단하기

•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

㉠ 기업의 책임과 주주들의 이익 증진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에서 어떤 학자는 “기업은 ~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주장 1)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거로서 기업의 책임(사회적 책임)이 결국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익을 증진 하는 것)에 부합하고, 논거 2에서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목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즉 어떤 학자는 기업의 책임(사회적 책임)이 장기적으로 주주들의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오히려 선지 ㉠은 [주장-논거]에서 필자가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주장 1)

라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공익이 양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에서 어떤 학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것(사회적 책임)은 공익 증진을 위한 것” (논거 1)

인 동시에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목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거 2) 라고 말한다. 이는 [예상 반론]의 어떤 학자가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공익이 양립될 수 있다고(논거 1, 2)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 기업의 공익 활동이 기업 경쟁력 상실의 원인을 강조하고 있다.

⇒ [예상 반론]에서 어떤 학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논거로서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목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논거 2)

고 말한다. 따라서 어떤 학자는 기업이 공익 활동(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예상 반론]의 주장-논거와 반대되는 것이다.

• 간과하고 있다. : [필자]의 [주장-논거]와 다른 입장의 선지는 지워라.

㉣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주장-논거]에서 필자는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주장 1)

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서 ‘사회를 향한 기업인의 선의가 사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거 1)

을 제시한다. 이는 기업이 공동선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추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필자의 [주장-논거]와 일치한다.

또한 [예상 반론]에서 어떤 학자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등의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 1)

따라서 어떤 학자의 견해에 대하여,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에 선지 ㉢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합법적인 경영이 합리적인 어윤 추구의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 [주장-논거]에서 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즉 필자도 기업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합법성)에 동의한다.

이때는 [예상 반론]의 어떤 학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예상 반론]에서 필자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라고 말하며 기업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합법성)에 동의한다. 따라서 선지 ㉤는 필자와 어떤 학자가 모두 동의할 공통 전제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법을 준수하여 경제 행위를 할 것’은 대부분의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동의할 명제일 것이다. 이런식으로 필자와 어떤 학자의 입장에서 공통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출제되기도 한다.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2

: 신개념 포함 기타 주제 ‘생활 윤리의 다양한 주제들(Applied Ethics)’ 분석

● 챗터 소개

올해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까다로운 독해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새롭게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된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평가원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선지들이 출제된 결과, 난이도에 비해 오답률이 높았다. 이런 이유로 신개념 및 다양한 주제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Part3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2(이후 Part3-2 표기)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다양한 주제 중 종교 윤리를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분석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중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번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출제된 시민 불복종, 정의 전쟁론을 꼭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하자.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활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출제된 ‘낮선 선지’에 나온 표현, 단어, 개념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한다. 분석서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다.⁶²⁾

● 신개념 포함 기타 주제 <생윤의 다양한 주제들 Applied ethics>

집필 시간과 책 분량의 문제로 아래 주제들은 온라인 칼럼으로 대신한다.

1. 윤리학의 분류

-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번 문항 (생략)
- 포인트 : 쉬운 주제로 기출문제만 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칼럼 : 2016학년도 수능 1번 윤리학의 분류 (<http://blog.naver.com/cucuzz/220811258386>)

2. 죽음 윤리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 문항 (생략)
-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6번 문항 (생략)
- 포인트 :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동양 죽음관만 출제되었으나 수능에서는 서양 죽음관까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온라인 칼럼 :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죽음관 (★생활과 윤리 새 교육과정 추가) (<http://blog.naver.com/cucuzz/220773466417>)

3. 부모자식 관계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번 문항 (생략)
-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문항 (생략)
- 포인트 : 기출문제를 풀어본 후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있는 내용만 읽어보는 정도로 충분하다.

4. 직업 윤리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문항 (생략)
- 온라인 칼럼 : 2016학년도 수능 9번 마르크스 vs 칼뱅 : 마르크스 : 칸트의 인간성 정식적 해석 수단 & 목적 칼럼 , 칼뱅 칼럼
(<http://blog.naver.com/cucuzz/220811264508>)

5. 규칙 공리주의

-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문항
- 온라인 칼럼 : 규칙 공리주의와 칸트 내용 정리해 놓은 포스팅 (<http://blog.naver.com/cucuzz/220794966912>)

6. 의식주 윤리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 문항 : 음식 윤리 (생략)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7번 문항 : 주거 윤리 (생략)
-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 문항 : 음식 윤리 (생략)
- ★ 포인트 : 수능에서 '의복 윤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있는 의복 윤리 내용을 읽어보자.

● 종교 윤리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7번

1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비종교적 인간은 성현(聖顯)의 시대에서 세속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성스러움으로 상징화된 초월적 존재의 창조물이다. 성화(聖化)된 자연 안에서 인간은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을 :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관찰 가능한 자연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갑은 종교가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 ② 갑은 비종교적 인간이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아도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과학이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초월적 신이 자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본다.

현자의 돌 평

갑은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단독 문항으로 출제된 바가 있는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엘리아데는 조금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더 알아보기에서 개념 칼럼을 통해서 엘리아데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62) 이 책을 쓸 때 여러 방향을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논리적 독해 문항', '사형제'에 집중해서 분석서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들은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를 통해서 보안을 하면 좋겠다. 또한 필자의 블로그에 가면, 현자의 돌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서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다. 특히 니부어는 현자의 돌 2016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현돌모)의 부록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는데 그 부록을 PDF 파일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자.

을은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의 입장으로 생활과 윤리 평가원, 수능에서 처음 나온 사상가이다. 도킨스의 주장은 간단해서 깊게 알 필요가 전혀 없다.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 더 알아보기에서 정리해보자.

제시문 분석 :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갑은 엘리아데이다. 제시문은 (1) 성현[聖顯]의 시대에서 세속의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종교적 인간이 생겼다고 말한다. 반면 (2) 종교적 인간은 자연을 성스러움으로 상징화한 초월적 존재가 만든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3) 성스럽게 상징화된 자연 안에서 인간은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갑)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엘리아데는 근대 사회가 세속적인 것에만 몰두하여 종교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종교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2)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자연 속에서 창조주인 신의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초월적 존재인 신이 만든 자연은 성화(성스러움으로 상징화, 聖化)된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3) 세속화된 근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인간의 본질인 종교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종교성(성스러움)을 존중하는 인간은 자연 속에서 성스러움의 드러남(성현, 聖顯)을 느끼며 그러한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을)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제시문은 리처드 도킨스이다.⁶³⁾ 제시문은 (1) 존재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고, 관찰 가능하지 않은 ‘자연의 배후’에는 초자연적 창조적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2)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인간의 윤리적 행동조차 다윈의 이론인 ‘자연 선택’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결과일 뿐이다.

(을)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제시문에 따르면 (1) 물리적인 세계(=자연)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초자연적 창조적 지성, 즉 ‘창조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자연과 인간의 윤리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가설’은 필요 없다. 과학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해설

㉓ : 제시문에서 을은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 가능’,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며, 과학을 통한 자연 설명을 주장한다. 또한 ‘자연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고 말하며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는 곧 선지 ㉓의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아도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과학을 통해)라는 것과 일치한다. 제시문만 잘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

오답 해설

㉑ 제시문에서 갑은 ‘자연은 성스러움으로 상징화된 초월적 존재의 창조물’이라고 말한다. 이는 갑이 자연(인간을 포함한)을 신이 만든 창조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자연을 그러한 성스러운 창조물로 인식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갑에게 종교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비종교적 인간’이 세속의 시대(근대)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곧 세속의 시대 이전에는 인간이 종교적 존재였고, 성현의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갑은 종교를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종교가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이다.

• 천재교육 195p

- 마르크스 : 종교는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관계가 낡은 부산물로서, 인민의 아편이다.
- 프로이트 : 종교는 유아기를 청산하지 못한 성인의 집착 산물로서, 성숙한 인격 형성에 장애가 된다.

② 갑은 종교적 인간이 자연을 성스러움으로 상징화된 창조물 즉 성화된 창조물로 본다 고 말한다. 이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성현)의 시대의 관점이다. 하지만 비종교적 인간은 성현(성화된 것으로부터 성스러움이 드러남)의 시대가 아닌 세속의 시대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비종교적 인간이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을은 제시문에서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 선택’이란 다윈니즘(다윈의 진화론)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결국 을이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원인을 과학에서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갑은 초월적 신이 자연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드러낸다고 보았다(성현). 이는 곧 초월적 신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을은 초자연적(=초월적인)인 창조적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라 보았다. 즉 을은 초월적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 ⑤의 초월적 신이 자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은 을의 입장이 아니다.

• 천재교육 195p

- 도킨스 : 종교는 진화론적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더 알아보기

1) 종교에 대한 다양한 입장

①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 올해 EBS 수능특강 160p

-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관찰 가능한 우주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고 몸보다 오래 사는 영혼은 없다.
- 진화된 존재인 창조적 지성은 우주에서 나중에 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주를 설계하는 일을 맡을 수 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신은 망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유해한 망상이다. 〈리처드 도킨스〉

EBS 해설 창조론과 진화론은 종교와 과학 간의 오랜 논쟁의 주제이다.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진화론과 유전자 결정론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초월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증한다. 그는 결과물만 보았을 때는 신에 의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생물들이

63) 어떤 사람은 생활과 윤리 문제를 풀 때, 해당 제시문이 어떤 사상가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시문 독해를 통해 제시문이 어떤 입장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으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개념 공부의 최소한으로만 중요한 내용만 집어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문항도 논리적으로 제시문을 읽고 선지를 판단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생활과 윤리는 ‘논리와 윤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논리적 사고력, 독해력이 중요하다. 그러한 능력을 이용해서 많은 문항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현자의 물)는 개인적으로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난다’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수험생은 논리의 날개와 개념의 날개를 갈고 닦아야 한다. 실제로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8번 문항 ① ‘노직: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라는 선지를 논리적 독해력만으로 풀 수 있었을까? 제시문에서 전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며 기존의 개념서, 문제집, 강의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다. (물론 현자의 물 생활과 윤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에서는 다른 내용이다.) 분명 논리적 판단력은 문제풀이 행동영역 중 중요한 능력이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그러한 능력만으로 모든 문항을 해결할 수 없다. 처음 보는 낯선 선지와 배운 적 없는 개념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력을 늘리는 동시에 생활과 윤리의 교과 개념들을 학습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익혀두는 것이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가장 좋은 태도일 것이다. 올바른 개념을 익히는 것과 문항들을 푸는 논리적인 접근법을 동시에 체화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사실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올해 EBS 수능특강 166p

“생명은 완만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EBS 자료 플러스 : 종교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입장 비교⁶⁴⁾

-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엘리아데>
-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영원히 어린 아이로 남을 운명이며 미지의 우월한 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고는 결코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라는 인격의 속성을 그 힘에 부여한다. 그는 스스로 신을 만들고, 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그 신에게 맞긴다. <프로이트>
- 종교적 고통은 진정한 고통의 표현인 동시에 진정한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종교는 억압받는 생명들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

EBS 해설 신(神)이나 종교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양하다. 신의 실재를 인정하는 입장도 있고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종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학자들 대부분이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현실적 고통과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본다.

2) '엘리아데의 성현' 심층 해설 및 개념 칼럼

엘리아데는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7번,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번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기출된 개념이므로 최소한 간단한 배경과 EBS에 나온 제시문과 선지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① 엘리아데의 삶

엘리아데는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비교종교학자다. 그는 8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는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종교를 비롯한 세계의 종교들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수려한 문학적 표현으로 옮겨 담았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 <성과 속>은 성스러운 것과 속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종교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② 엘리아데의 <성과 속>

엘리아데는 <성과 속>에서 근대의 사람들이 종교의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며, '이성,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엘리아데는 종교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서로 분리되어있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성'과 '속'이라는 두 세계에 동시에 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성과 속이라는 두 세계는 모두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엘리아데의 연구의 핵심은 '성현'이라는 개념이다. 그는 성스러움이 단지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현실의 세속적 삶에서 더불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③ 엘리아데의 성현(聖顯) : '성스러움의 드러남'의 개념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창조한 것은 신들이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서 신의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성현(聖顯) : 성스러움의 드러남’이다.

따라서 인간은 세속적 휴머니즘의 세계와 성스러움의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세속적 존재이며, 동시에 종교적 존재이다. 비록 근대인들이 스스로를 비종교적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근대인의 인식과 행동의 바탕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결혼, 출산, 입학, 사회적 진출 등의 중요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파티(축제)를 연다든지 그 일을 기념한다. 그러한 기념 의식은 종교적인 제의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비종교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결국 종교적인 제의를 따르므로 종교적 지향성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결국 성스러움과 인간의 삶은 단절되어있지 않다. 인간의 삶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에서는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聖顯)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종교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아데는 인간을 절대적 실체(신)의 창조물이며, 절대적 실체를 갈망하는 존재, 즉 종교적 지향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이에 엘리아데는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

- 인간은 삶의 유한성(죽음)과 불완전성을 자각한다. 그것을 자각한 인간은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결국 이러한 지향성은 종교적 지향성으로 연결된다. 인간은 영원한 삶(내세)과 절대적 존재(신)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 인간은 종교적 존재인 동시에 세속적 존재이다. 이 둘 중 하나라도 간과한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예컨대 세속성만 강조한다면 그는 신의 피조물로서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며, 종교성(성스러움)만 강조한다면 현실성을 잃게 되어 우상숭배, 독단주의 등 종교의 부정적인 면에 빠지게 될 것이다.
- 바람직한 종교적 자세란, 일상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며, 세속성(휴머니즘)과 종교성(성스러움)을 동시에 변증법적으로 경험하며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 나무의 은유
‘나무를 나무로’(세속적 의미의 나무) 승인하면서도 그것이 ‘나무이되 나무이지 않다’(종교적 의미로서의 나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범주⁶⁵⁾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해설 자연속의 나무는 세속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한 그루의 나무이다. 하지만 종교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 나무는 단지 한 그루의 나무를 넘어선, 신의 창조물로서, 신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성현(聖顯)인 것이다.

④ EBS 제시문과 선지

- 올해 EBS 수능완성 105p, 심화 학습 테마2 : 성과 속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순수한 상태로서의 비종교적 인간이란 심지어 가장 탈 신성화된 근대 사회에서조차 비교적 드문 현상이다. 비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할 때나 새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수반되는 축제는 비록 속화되기는 했을지언정 여전히 갱신의 의미를 드러내는 의례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결혼, 아기의 탄생, 취임, 승진 등에 따르는 잔치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중략) 엄격히 말해서, 무 종교적 인간의 대다수는 종교적 행동, 신화와 신화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희화의 지점까지 왜곡되고 따라서 그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버린 주술적-종교적 여러 관념의 쓰레기 아래서 휘청거린다. (중략) 철저하게 탈 신성화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안하고 덧없는 지속으로 나타난다.

64) 올해 EBS 수능특강 159p 자료 플러스

65) 동일한 자연으로부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와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동시에 체험, 경험할 수 있는 지각의 범주(사고의 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종교적 인간의 입장에서 관찰한다면, 세계는 성스러운 것, 따라서 존재의 다양한 양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계는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이다. 따라서 세계는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 신의 작품은 항상 어떤 종류의 투명성을 지니고 있는데, 즉 스스로 성스러운 것의 여러 양상을 제시한다. (중략) 여러 가지 우주의 리듬은 질서, 조화, 항상성, 풍요성을 명백히 드러낸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재적이고 살아 있고, 또한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그것은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제시한다. 현 존재와 성현(聖顯)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엘리아데 “성과 속”〉

EBS 해설 제시문은 종교학자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엘리아데는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그는 자신이 비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마저도 일상 속에서 성스러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라는 현상은 근원적으로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과 만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올해 EBS 수능완성 143p

인간은 성스러운 것 가운데 혹은 성화(聖化)된 사물에 가까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성스러운 것은 힘이며, 궁극적으로 무엇보다 실제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인간은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 실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 힘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종교적 인간은 또한 성스러운 세계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만 존재에 참여하고 진정한 실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올해 EBS 수능특강 163p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 올해 EBS 수능특강 166p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인간은 신성성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하며, 그의 생명은 우주적 생명과 일치하게 된다.

• 2016학년도 EBS 수능특강 105p 읽기 자료

비종교적 인간의 대다수는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비단 구조상 마술적, 종교적 성질을 가진 근대인들의 수많은 ‘미신’과 ‘금기’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비종교적이라고 느끼며 그렇게 주장하는 근대인들도 여전히 수많은 은폐된 신화와 변질된 제의(祭儀)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해를 맞이할 때나 새 집에 살게 될 때에 수반되는 축제는 비록 속화되기는 했을망정 여전히 갱신된 제의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결혼, 아기의 탄생, 새 지위의 획득, 사회적 진출 기타 등등에 따르는 잔치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성과 속〉

•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62p 20번 / 2016학년도 EBS 수능특강 163p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와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컨대 신의 현존에 의해 성화된 장소나 사물에서 보듯, 단지 신들에 의해 전달된 성스러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신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행했다. 즉 그들은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속에 다양한 성(聖)의 양태들을 드러낸다(현현한다).

EBS 해설 신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창조했고, 신이 창조한 자연에는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도 신의 성스러움을 관찰할 수 있다.

• 2016학년도 EBS 수능특강 159p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顯現)하는, 그럼으로써 이 세계를 성화(聖化)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성스러운 것, 즉 절대적 실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성스러운 것에서 기원하며, 인간 존재는 절대적 실재에 참여하는 정도(종교적인 삶)에 따라 그 모든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EBS 해설 초월적 존재, 절대적 존재를 갈망하는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

● 엘리아데 O, X로 선지 정리하기

다음 중 엘리아데의 견해로 옳바른 것은 ○, 옳바르지 않은 것은 ×로 표시하십시오.

1. 종교는 비과학적이므로 철저하게 배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10p)
2. 초자연적 것과 자연적인 것을 구분해 자연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10p)
3. 성스러움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62p)
4.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남을 알아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10p)
5. 인간은 내세에서만 성스러움을 접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62p)
6. 세속적인 삶 속에서는 성스러움을 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62p)
7. 비종교적 인간도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10p)
8. 종교인은 현실과의 단절을 통해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2016학년도 EBS 수능특강 163p)
9. 세계에 있는 자연을 통해 성스러움이 드러남을 깨달아야 한다.
(2016학년도 EBS 수능완성 162p)
10. 종교인은 이성적 판단을 금하고 종교적 신념에 충실한 사람이다.
(2016학년도 EBS 수능특강 163p)
11. 종교인은 세계 그 자체를 거대한 성현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다.
(2016학년도 EBS 수능특강 163p)

○	×
○	×
○	×
○	×
○	×
○	×
○	×
○	×
○	×
○	×
○	×

30. 종교를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과 만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비상교육 교과서 233p)

○	×
---	---

정답 및 해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29번 선지 : 비상교육 교과서 233p에는 “엘리아데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종교를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과 만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라고 말한다. 이는 ‘비종교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과 약간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엘리아데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라고 보았다. 비종교적으로 보이는 인간은 근대 사회의 세속화에 물들어, 본질에서 벗어나있지만 그 근본은 종교적인 것이다.

• 올해 EBS 수능완성 105p / 심화학습 테마2

“비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할 때나 새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수반되는 축제는 비록 속화되기는 했을지언정 여전히 갱신의 의미를 드러내는 의례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결혼, 아기의 탄생, 취임, 승진 등에 따르는 잔치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중략) 엄격히 말해서, 무 종교적 인간의 대다수는 종교적 행동, 신학과 신화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

3)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 : 볼테르 & 신문기사 자료

• 올해 수능완성 152p : 볼테르의 견해

- 우리가 지켜야 할 교리가 적을수록 논쟁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논쟁이 줄어들면 그만큼 참화를 겪을 일도 없어질 것이다. 종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은 후에도 행복해지기를 위해 만들어졌다.
-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욕심이다. 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예속시키려 하기 보다는 차라리 무력으로 세계를 굴복시키는 편이 훨씬 쉬우리라.

정답 선지 종교 간 차이를 인정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올해 수능완성 110p

종교적 갈등의 해결에서 티포텃(Tit for Tat) 전략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맞받아치기’ 또는 ‘응보적 정의’로 불리는 이 전략은 배반을 일삼는 악의적 상대를 만나면 보복의 악순환에 끌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상대의 마지막 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눈감아 주어 복수의 빚을 벗어남으로써 불가역성의 근경에서 서로를 구원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 간 공존과 화해를 위해서는 “태초에 신은 정의의 속성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결국 정의를 취하고 거기에 자비의 속성을 결합시켰다.”라는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정답 선지 타 종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대함을 지니자.

4) 교과서에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정리

• 천재교육 195p :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에 대한 다양한 견해)

- 칸트 : 종교는 도덕의 완성을 위한 요청이다.
- 마르크스 : 종교는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관계가 낳은 부산물로서, 인민의 아편이다.
- 프롬 : 종교는 성숙한 인격 형성에 공헌한다.
- 도킨스 : 종교는 진화론적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 프로이트 : 종교는 유아기를 청산하지 못한 성인의 집착의 산물로서, 성숙한 인격 형성에 장애가 된다.

cf) 프로이트 : 무의식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 유아기의 무력감과 압도적인 운명의 힘은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며, 그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동경에서 종교적 욕구가 유래한 것이다. (올해 EBS 수능특강 166p)

• 미래엔 242p : 풍류도, 우리 고유의 현묘한 도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道)가 있으니 풍류[風流]라고 이른다. 그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仙史]에 상세하게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삼교[三教 : 유교, 도교, 불교]를 이미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고 모든 생명을 가까이 사귀어서 감화시킨다.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니 그것은 공자의 가르침과 같고, 무위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가르침을 실행함은 노자의 주장과 같으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실행함은 석가모니의 교화와 같다. <최치원, '낭랑비서문'>

교과서 해설 유교, 도교, 불교의 정신을 조화롭게 담고 있는 풍류도는 우리 고유의 사상으로 오늘날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미래엔 243p

종교 간의 협력은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 신학자 쿡은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 없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라고 했다.

수업자의 품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3

: 사법 정의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

킬러 주제(사형제) 분석

● 챗터 소개

올해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까다로운 독해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반면 전통적인 킬러 문항들(니부어, 사형제, 분배윤리, 해외원조, 환경윤리)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킬러 문항인 만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Part3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문항 통합 분석 3(이후 Part3-3 표기)에서는 깊이 있고 심도 높은 학습을 위해 킬러 주제인 사형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기존의 킬러 주제들인 ‘니부어, 사형제, 분배윤리, 해외원조, 환경윤리’도 꼭 정리하도록 하자.

● 개념형 문항 : 원전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

생활과 윤리는 20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응용 윤리학’을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맞게 개론 수준으로 편집한 과목이다. 사실 응용 윤리학 자체가 외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응용 윤리학 연구는 외국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생활과 윤리 대비용 교재들도 한국의 응용 윤리학 연구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개념서들은 실제로 수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실제 수능에 나오는 내용은 적게 다룬다. 기존 교재나 강의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오류도 많았고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시중 강의나 개념서를 기준으로 수능을 출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교과서’와 ‘원전(사상가가 쓴 책)’, ‘논문’을 기준으로 수능을 출제하신다.

그렇기에 필자(현자의 돌)는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를 쓸 당시 ‘피터 싱어’, ‘존 롤스’, ‘임마누엘 칸트’ 등 생활과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학자들이 쓴 책과 관련 연구 논문들을 읽고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개념 서술과 선지 해설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과 논문들을 읽고 정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학생들은 EBS와 교과서, 기출 문항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다. 대신 ‘사형제’ 주제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상세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형제는 이 책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사형제와 형법, 법철학에 대해서는 6월 모의평가 이후 ‘칸트의 법철학’, ‘사형제’ 관련 책과 논문을 100편 이상 읽고 정리했다.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논문을 유료로 구입해서 읽었다. 70년대 논문부터 2016년 논문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논문은 다 구해 읽었다. 그렇게 원전들과 논문을 읽으면서 ‘형벌과 사형제’라는 주제에서 학자들이 논의하는 주된 쟁점이 무엇인지, 해당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들과 입장들의 대결 구도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사형제와 법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 고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과 평가원, 수능 문항들에서 ‘사형제’가 어떤 원리로 출제된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제시문, 선지가 출제될 것인지가 파악이 되었다. 이 책의 Part3-3의 ‘사형제 Master 칼럼’을 통해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개념들을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그리고 모든 기출과 올해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모든 문항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등의 원전에서 출제 가능한 낯선 제시문들을 뽑아놓았고, 모든 구절을 빼놓지 않고 해설하였다.

사회탐구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단순히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이 답은 아니다. 결국 사회탐구는 탐구영역이기 때문에 단 한 문제를 푼다고

해도 기존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문항의 발문/제시문/선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내용을 탐구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책은 그런 관점에서 ‘사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 ‘사형제’를 완벽하게 공부하여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 정의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

1. 우리가 사형제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따른 해결책

사형제는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항상 오답률 Top5에 들어가는 킬러 주제이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 사형제 문항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어떻게 해야 사형제 문항을 맞힐 수 있을까? 우리가 사형제 문항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보도록 하자.

② 정의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 Ruat Caelum)>

칸트(사형제) : 6평 12번, 9평 14번

우리가 사형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⁶⁶⁾

첫째, ‘칸트의 윤리학,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책이나 강의에서 칸트의 윤리학, 사형제를 잘못 다루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사형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설 문항(EBS, 사설 문제집, 사설 개념서, 사설 모의고사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교육청이 출제한 문항에서도 제시문이 오개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기출문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2013년 6월 고2 학력평가 20번

20. (가)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나)의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3점]

(가)	사법적 형벌은 결코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고, 항상 오직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형벌은 서로 다른 양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 평등성의 원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즉 누구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면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해악을 당해야 한다.
(나)	질문 1 : 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가? 질문 2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1	질문 2
①	예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하니까.
②	예	사회적인 선(善)을 증진시켜야 하니까.
③	예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니까.
④	아니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되니까.
⑤	아니요	그를 교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니까.

이 제시문과 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학생들이 기존의 강의와 개념서, 문제집을 통해서 ‘사형제, 사법적 형벌은 결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간(사람)은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단편적으로 배워왔다.

66) 사형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것만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서는 사형제 개념 공부를 충분히 하고,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었던 학생을 기준으로 그 이유를 찾았다. 만약 학습자 본인이 사형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 분석서의 사형제 분석 내용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읽어보도록 하자.

• 2014년 시행 3월 서울시 교육청 7번 문항

⑤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 (○)

• 2015학년도 수능 6번 문항

〈보기〉 선지 나. B : 칸트 :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⁶⁷⁾ (○)

하지만 이 두 선지에서는 어떤가? 위의 2013년 6월 고2 학평의 제시문에서는 분명 ‘사법적 형벌은 결코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어째서 2014년 3월 서울시 교육청 7번 문항과 2015학년도 수능 6번 문항에서는 사형제도가 ‘응보적 정의 실현,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기존 강의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 딜레마를 ‘예외’ 처리하고,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이라고 외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는 위험하다. 이런 이유로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다음의 선지가 출제되었을 때, 응시자의 40%가 이 선지를 잘못된 선지로 생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

잘못된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과 상충하는 기출 선지를 예외로 처리하여, 사후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는 수능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올바른 접근은 개념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학생의 영역이라기보다 학습서의 저자와 학교/학원 선생님의 역량일 것이다. 이 분석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생활과 윤리의 개념을 올바르게 학습하고 깊게 공부하여야 수능도 잘 볼 수 있고, 윤리적 감수성도 기를 수 있으며 (올바른 개념을 배워야 그 사상가의 입장과 의견에 공감할 수 있다.), 윤리적 의식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원 출제의 수능과 모의고사가 모순을 일으켰던 칸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 : 2013년 6월 고2 학평 20번의 제시문, 기존의 강의와 개념서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오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비판적 검토 ①

칸트의 사형제를 ‘어떠한 수단으로도 쓰일 수 없다.’로 잘못 해석한 경우 → 오개념!

• 2013년 6월 고2 학평 20번 제시문 (가)

사법적 형벌은 결코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고, 항상 오직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출제 오류]

위 제시문을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에서 찾아보았다.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⁶⁸⁾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⁶⁹⁾

“사법적 처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⁷⁰⁾ 수단으로 범죄자에게 시행될 수 없다. 사법적 처벌은 언제나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을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만으로 대할 수 없고, 또한 인간을 물권의 대상들 아래 뒤섞을 수 없기 때문이다.”⁷¹⁾

칸트가 정언 명령인 ‘사법적 형벌과 사형제’에 대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즉 칸트는 ‘사법적 형벌’을 공리주의적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지, ‘사법적 정의’, ‘공적 정의’, ‘응보적 정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이란 범죄자 자신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등 공리주의가 목표로 하는 선(善, goodness, happiness)를 말한다. 공리주의는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며 형벌의 주목적이 범죄자와 일반인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리의 원칙(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형벌관을 칸트가 비판하는 것이다.⁷²⁾

비판적 검토 ②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수단 대우 금지’로 잘못 해석한 경우 → 오개념!⁷³⁾

- 2013년 6월 고2 학평 20번 선지
- ④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되니까. [출제 오류]

이 선지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칸트가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일까?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이 타인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혹시 칸트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전제 하에는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통합 분석서에서는 평가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싣고자 한다. (평가원 답변 출처 : <http://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3026518&lev=0&m=0302&searchType=null&statusYn=W&page=4&s=suneung>)

67) ‘수단’이라는 표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이라는 부분만 놓고 판단을 해서 맞춘 학생도 있다고 한다.

68) 앞의 학평 제시문과는 달리 본 분석서에서는 ‘~하기 위한 한낱’이라는 제한된 전제조건이 명확하게 수단을 수식한다.

69)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1판 3쇄, 아카넷, 2015년, 292~293p B226

70) 이충진 교수님 책에는 ‘한낱’이라고 적혀있으나,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한낱’으로 수정함.

71) 임마누엘 칸트, 이충진 역, 『법이론』 1판 1쇄, 이학사, 2013년, 203p B226

72) 어렵다면 생활과 윤리 1단원의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내용 중 ‘칸트 의무론’, ‘공리주의’ 내용을 교과서나 수능특강에서 한 번 더 읽고 오는 것도 좋다. 혹은 이 책을 계속 읽다보면 정리될 것이다.

73) 수단으로 대우하는 측면이 일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금지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데서 오개념이 싹튼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이가 <사례> 속 A의 행동을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선의지는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사례〉

A는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원리가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후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예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였다. A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도움을 받은 친구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준 거야. 뭘 바라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야.”

- 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 ② 친구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 ③ 무조건적이고 필연적인 도덕적 명령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 ④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 ⑤ 친구를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평가원 답변

사회탐구 영역 : 유형(과목) :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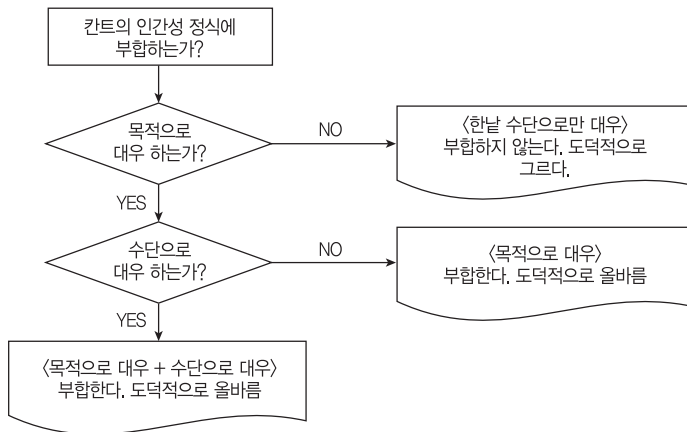
문항 번호 : 10

답변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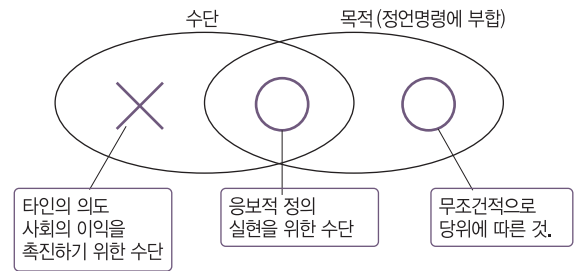
본 문항의 목적은 칸트의 윤리 사상에서 도덕적 행위의 사상적 근거를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내용의 요지는 답지 ⑤의 “친구를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가 친구를 수단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했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에 문제 오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지 ⑤는 칸트의 정언 명령 중 목적 자체의 정식을 2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며(천재교육 156쪽, 교학사 144쪽), 이러한 교과서 표현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B67)에 있는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표현을 충실히 원용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일상적인 상거래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행위로 인정합니다. 즉 친구를 수단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한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답지 ⑤는 칸트가 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옳은 이유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정답 : ②

정리하자면, 인간과 사법적 형벌(사형제를 포함한)을 항상 목적으로 여긴다면, 수단으로서도 대할 수 있다. 사람도 항상 목적으로 대우한다면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⁷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도표(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 1. 33~34p 발췌)⁷⁵⁾를 추가한다.



[칸트의 인간성 정식_순서도]



[칸트 사형제_벤다이아그램]

분석서에서는 위의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뒷받침하는 글을 넣었다.⁷⁶⁾ 또한 필자(현자의 돌)가 한국윤리학회 등 여러 철학/윤리학 학회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넣었다.

사형제가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개정 교육과정’의 ‘법적 정의’ 단원에 대한 개정 내용으로 기출을 재해석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책이나 강의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개정 전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기출문제인 ‘2016학년도 수능’의 19번 문항의 제시문 (을) 공리주의 제시문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된 ‘일반 예방주의’와 ‘특수 예방주의’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을 :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죄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이 제시문에서 말하는 형벌의 역할 중, ‘범죄자에게 교정과 무력화’는 바로 ‘특수 예방주의’의 입장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바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이다.

기출문제가 소중한 이유는 이렇게 제시문으로 출제된 내용이 다음 시험에서는 선지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선지 ㄴ
- ㄴ. B :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 (○)

이 선지에서 말하는 ‘일반인에게 본보기’는 작년 수능 제시문의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일반 예방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은 ‘범죄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작용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특수 예방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74)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은 항상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종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격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지킬 때에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을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동시에 내가 필요한 사랑을 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가능하나, 일제가 태평양 전쟁 당시 저지른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인간의 존귀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수단 대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사형제를 목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사형제가 그 자체로 자기목적적인 정언 명령이라는 것이다. 사형제가 정언 명령임을 인정하면, 공적 정의,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적을 살해하는 사법적 살인은 사형제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단 대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75) 위 도표는 칸트가 ‘도덕적, 당위적’으로 옳바르다고 생각한 것의 범주를 나눈 것이다. (고교 교육과정에 맞게 축약함.)

76) 마이클 샌델(하버드 대학교) 『정의란 무엇인가』, 폴 테일러(뉴욕 시립 대학교) 『윤리학의 기본 원리』, 가리타니 고진(컬럼비아 대학교) 『윤리 21』, 로버트. L. 에링턴(조지아 주립 대학교) 『서양 윤리학사』, 김재호(서울대학교) 『칸트, 『윤리형이상학의 정초』』, 문성학(경북대학교) 『인간 존엄성 테제에 대한 칸트의 증명과 문제점』 등

이렇게 개정 전 기출문제들을 재해석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읽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분석서에서는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립할 것이다. 개념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논의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입장이 바로 칸트의 응보론이기 때문에, 사형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술 순서는 사형제 논의의 시대적 순서(Chronological order)에 맞게 ‘서론 → 베카리아 → 루소 → 칸트 → 공리주의’ 순서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각 입장을 정리하면서, 관련 기출문제, EBS의 읽기자료, 제시문, 선지를 개정교과에 맞게 분석함으로써 수능에서 킬러 주제로 나오게 될 사형제를 완벽하게 대비할 것이다.⁷⁷⁾

더불어 필요한 경우 원전(칸트의 『윤리형이상학』,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등)과 연구/학위 논문 등으로부터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문단들을 발췌하여 사상가들의 사상을 심도 있게 다뤄볼 것이다. (단, ‘수능과 평가원 기출문제’와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범위 안의 내용으로 한정한다.)

지금까지 사형제가 어려웠던 이유와 올바른 공부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형제 기출문항의 출제 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총 12회의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에서 사형제는 9회가 출제되었고, 칸트의 입장은 8회 출제되었다. 이를 토대로 예상할 때, 올해 수능에서도 칸트가 나올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회차	문항 번호	출제 구도
2017학년도 9월	14번 (160p)	벤담 & 칸트
2017학년도 6월	12번 (145p)	베카리아 & 칸트
2016학년도 수능	19번 (139p)	칸트 & 공리주의
2016학년도 9월	미출제	미출제
2016학년도 6월	6번 (163p)	루소 & 공리주의
2015학년도 수능	6번 (132p)	루소 & 칸트 & 공리주의
2015학년도 9월	9번 (127p)	칸트 vs 베카리아
2015학년도 6월	미출제	미출제
2014학년도 수능	6번 (129p)	루소 & 칸트 응보론 입장
2014학년도 9월	미출제	미출제
2014학년도 6월	8번 (131p)	칸트 단독 문항
2014학년도 예비평가	18번	응보론의 입장 (칸트 & 루소)

2. 사형제 개념 마스터 칼럼 : 사법적 정의란 무엇인가? 기초부터 심화까지(Storytelling)

1) 서론 ① : 형법에 대한 고찰

사법적 정의의 단원은 형법에 의거한 형벌과 사형제를 다루는 단원이다. 형법, 형벌은 어째서 윤리적이어야 할까?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형벌로 고통을 가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여 생명을 종식시키는 것이 과연 ‘윤리적’일 수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했던 ‘국가의 법’, 우리의 자유를 한계 짓는 ‘법⁷⁸⁾’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생각해보았을까? 이번 칼럼은 생활과 윤리 과목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용하여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법’, 특히 형법과 형벌, 사형제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사회를 조직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형법과 형벌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법은 형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가혹한 처분(Hard Treatment)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형벌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가 필요하다.⁷⁹⁾ 형법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는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 칼럼에서는 고교 생활과 윤리가 다루는 ‘형벌’과 ‘사형제’에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서론 ② : 형법, 형벌에 대한 윤리적 접근 : 법적 정의 - 교정적 정의의 의미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형벌을 통해서 교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소개하며 사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교정적 정의란 ‘같은 상황은 같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 죄목에 대하여 동일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의 주어진 몫이 그의 자유 의사에 의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박탈되었을 때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⁸⁰⁾

• [자료플러스] EBS 수능특강 121p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탐욕스럽고, 공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올바름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공정한 것일 것이며, 올바르지 않음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또 공정하지 않은 것일 것이다. ... (중략)... 부분적 정의의 하나의 유형과 그것에 따르는 옳은 것의 한 유형은 정치적 체제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나 부(富)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의 분배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한 몫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중략)... 나머지 한 부류는 바로잡는 것이다. 이러한 올바름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부류에 속한다. 그런데 교섭에 있어서의 올바름도 어떤 종류의 동등함이고 또 올바르지 않음은 어떤 종류의 동등하지 않음이지만, 그 올바름은 다른 부류인 그 유형의 비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술적 비례에 따른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EBS 해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을 일반적(보편적) 정의라고 하고, 그 일반적 정의와 구별되는 특수적(부분적) 정의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를 들었다. 분배적 정의가 가치에 비례하는 몫의 분배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교정적 정의는 교섭에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추구한다. 교환적 정의는 물건의 교환과 관련된 정의이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이 교환되면, 그 교환은 올바르다.

쉽게 말해서, 교정적 정의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득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는 경우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500만 원의 이득을 취했으면 그로 하여금 그 500만 원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정의이다. 더 많이 반환하게 하거나 더 적게 반환하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500만 원의 손상을 가했다면 그로 하여금 그 500만 원을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정의다. 더 적게 변상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더 많이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등가성⁸¹⁾이다.”⁸²⁾

교정적 정의(=시정적 정의)에 있어서 등가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의’로운 형벌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등가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았듯, 형벌은 마치 물리학의 작용-반작용의 법칙처럼 범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반작용⁸³⁾으로서 범죄자에

77) 중간 중간 나오는 선지들은 (○), (×), [출제 오류]로 그 선지 자체의 참, 거짓을 표시한다.

78) 이 분석서에서는 ‘법’ 중, ‘형법’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형벌, 처벌’의 관점에서, 특히 ‘사형제’의 관점에서 다룬다.

79) 오세혁, 『형벌의 철학적 기초 - 영미 형벌 정당화이론의 동향』 8~12p 참고

80)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187p

81) 가치가 서로 같은 것을 요구하는 성질 (살인 피해자의 생명 = 살인자의 생명)

82) 이상수, 『교양 법학강의』, 필맥, 2010. 23~25p

83)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란 A가 B에게 N만큼의 힘을 가하면 (작용),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B가 A에게 N만큼의 힘을 되돌린다는 (반작용) 뉴턴의 운동 제 3법칙을 말한다. 칸트는 자신의 응보론을 곧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작용 -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유추했다.

게 가해지는 것, 위법 행위에 따른 대응으로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같은 상황은 같게’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범법과 처벌에 있어서 등가성 뿐만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등가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범죄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만인은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공평무사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 EBS 수능특강 123p : 공정한 처벌의 조건⁸⁴⁾
- ① 유죄 조건 : 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처벌해야 함.
 - 처벌 근거인 법이 존재해야 하며(죄형 법정주의) 그 법이 공정해야 함.
 - 혐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② 비례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 처벌의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함. (목적의 정당성)
 - 처벌의 수단이 처벌의 목적에 적합해야 함. (수단의 적합성)
 - 처벌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함. (침해의 최소성)
 - 처벌이 의도하는 공익상의 효과를 능가해서는 안 됨. (법익의 균형성)
- ③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함.

3) 본론 ③ : 근대적 형법정신의 정립 : 베카리아

형법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근대형법의 최고 이념으로 인정되는 죄형 법정주의의 정신이다.⁸⁵⁾

(중세시절) 형사처분에서도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잔인한 형벌이 적지 않았다. 고문도 합법적으로 이용됐다. 그 시대의 형법과 오늘날의 형법을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서 근대가 등장한 것과 연관된다. 앞서서도 수차례 보았듯이 근대 사회에 철학적 기초가 된 사상은 ‘개인의 자연권 내지 인권은 기본적인 가치이고,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형법도 그와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많은 변용을 겪게 됐다.

근대 형법정신을 가장 뚜렷하게 정립한 사람으로는 흔히 이탈리아 사람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를 든다. 그는 불과 26세에 『범죄와 형벌』(1764)을 썼는데, 이 책이 근대 죄형법정주의의 선언서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수, 『교양 법학강의』, 361~365p〉

중세 시절 형벌은 끔찍했다. 작은 절도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베카리아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형벌 관행에 대하여 비판하고, 사형제 폐지, 죄형 법정주의 등 근대적인 형법의 정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 베카리아가 말하는 죄형 법정주의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근대 법학의 원칙을 말한다. 베카리아는 왕과 재판관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판결하여 형벌을 남용한다고 보았다. 특히 베카리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양도 불가능한 인간의 본질적 권리로 보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남용되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했다.

베카리아의 입장⁸⁶⁾을 요약하면 베카리아(사회계약론 + 공리주의자)는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사형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칸트와는 달리 베카리아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 사회에게 위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 계약을 운운하며 사형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일 뿐이다. 또한 그는 사형제가 아니라 오히려 종신형과 같은 지속성 있는 형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베카리아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오판 가능성

판결을 내리는 인간은 ‘오판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런데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희생된 인간의 생명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

2. 생명권의 양도 불가능성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사회계약론적으로 타인, 사회, 국가에 양도될 수 없다.

3. 범죄 예방 효과 : 형벌의 기간의 측면

범죄 예방 효과는 순간적인 잔혹한 형벌(사형) 보다 장기적인 형벌(종신노역형)이 더 크다.

4. 범죄 예방 효과 : 지속성, 신속성, 확실성 측면

범죄 예방 효과는 가끔씩 범죄자를 본보기로 삼아 자극적으로 죽이는 것(사형)보다⁸⁷⁾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지속성, 신속성, 확실성)이 더 크다.

결국 사형제가 본보기로서 효과가 있다거나 잠재적 범죄가 실제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논거는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단두대의 칼날이나 교수대의 올라미가 반드시 두려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영국에서 소매치기하다 붙잡히면 사형에 처하던 시절, 소매치기 죄수의 목이 교수대에 매달리던 그 순간에도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물건을 훔치던 다른 소매치기들은 늘 있었다지요. 교수형이 자기 차례가 될 위협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20세기 초에 시행된 통계조사에 따르면, 목매달려 죽은 죄수 250명 중 170명이 이미 공개 처형을 참관한 바 있었답니다. 호기심 많은 관중의 입장에서 지켜본 것이었죠.

(제라드 도텔, 이유 있는 반대(사형제, 왜 문제일까?) 123p)⁸⁸⁾

원전 읽기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 수능, 평가원, EBS에 출제되었던 제시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베카리아의 사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해보자.⁸⁹⁾

『범죄와 형벌』⁹⁰⁾

새 번역판에 부쳐⁹¹⁾

xx~xxii⁹²⁾. : 그는 이러한 비인도적 형벌제도의 폐지를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도출해내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계약내용으로 제시할리 없다는 것, 자기보호본능에 위배되는 자백강요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계약론적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면, 고문은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사형의 범죄억제효과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는 논거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도출된다.⁹³⁾

84) 이것은 특정 사상가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법 정의 단원의 개념 서술이다.

85) 이상수, 『교양 법학강의』 361~365p 참고함.

86) 박홍규 교수의 『범죄와 형벌』 해제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4610에서 첨부(1)을 누르면 첨부파일을 받을 수 있다.

87) 예전에 사형은 본보기를 위해 가끔씩 공개 처형으로 이뤄졌던 이벤트(구경거리)였다. 따라서 신속성과 확실성(모든 범죄자를 바로 바로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속성’이란, 지속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신속성은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베카리아는 ‘사형’의 경우 수사 기간이 길고, 사형 집행까지 감옥에서 사형수로 복역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 사이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사이의 확실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일어난 즉시 신속하게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88) 개마고원_2014 초판 5쇄

89) 사형제 관련 책을 수십 권, 논문을 백 편 이상 읽었다. 하지만 이 분석서에서는 분량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메모만 200p가 넘는다.) 모든 내용을 쓸 수는 없고, 원전위주로, 중요하고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서술하겠다.

90) 체사레 베카리아_한인섭 신역_박영사, 2006년 12월 초판_2015년 10월 30일 증판

91) 한인섭 서울 법대 교수의 새 번역판 후기 중 책 서문 내용

92) 한인섭 서울 법대 교수의 새 번역판 후기는 라틴어 숫자로 순서가 표기되어 있다. xx는 20이고, xxii는 22이다. 즉, 20~22를 의미한다. 당연히 라틴어 숫자 읽는 법은 수능에 안 나오지만 질문이 들어와서 굳이 쓴다.

93)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베카리아는 영국의 프란시스 허치슨의 공리주의 윤리학을 받아 들여 법률가의 책임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지닌다. 그렇다면, 베카리아는 벤담적 공리주의자인가? 이 질문은 베카리아가 벤담보다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오히려 벤담이 베카리아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공리주의 철학을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주로 생활과 윤리에서 공리주의라 함은 벤담의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과 윤리 문제를 풀 때 베카리아 = 공리주의라고 치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냥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적 성격도 지닌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 적당한 형벌은 범죄자가 그 범죄로부터 받은 이익보다 형벌을 통해 가해지는 손실이 약간 많은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를 초과하는 모든 형벌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은 폭압적인⁹⁴⁾ 형벌에 해당한다. 만약 절도범죄가 6단위의 쾌락을 산출한다면, 그에 대한 형벌은 7단위의 고통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베카리아는 합리적 형벌제도의 '정밀한 기하학'⁹⁵⁾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⁹⁶⁾

Q. 베카리아도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겪을 위험을 피하려고 사회계약을 맺었다고 보나요?

A. 네.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⁹⁷⁾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형벌의 기원 11p 법은 고립된 독립된 인간들이 사회에 결속하기 위한 조건들을 말한다. 끊임없는 전쟁상태에 진력이 나고, 자유롭다고 해도 그 자유를 확실히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자유는 쓸모없게 되어 버린다. 이에 개개인들은 그 자유의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그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리고자 한다. 공공선을 위해 개개인이 희생한 자유의 몫의 총합이 한 국가의 주권을 구성한다. 주권자는 이렇게 모여진 자유의 정당한 수탁자요 그 자유의 관리자인 것이다.

2. 형벌권의 근본 원리 13p 절대적 필요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형벌은 압제적이다. (...) 주권자는 그가 위탁받은 공공의 자유와 복지를 개개인의 사적 침탈로부터 방어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주권자의 형벌권의 근거가 된다.

현자의 돌 평

베카리아는 루소와는 달리 사회 구성원은 자연 상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에 '개인의 자유의 최소한'을 양도하여 '일반 의사'를 만든다고 보았다. 베카리아의 국가는 '일반 의사'를 대변하는 존재일 뿐이므로, 인간의 최대한의 자유인 '생명권'까지 침해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사형제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을 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21. 귀족에 대한 처벌

형벌은 범죄에 의해 사회에 야기된 손해에 의해 양정⁹⁸⁾되어야지 범죄자의 감수성에 비례하여 내려져서는 안 된다. 범죄의 공적 피해는 범죄자의 신분이 높을수록 더욱 커진다. 형벌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양하기 때문에 형벌상의 평등이란 단지 외재적일 수밖에 없다. <88p>

현자의 돌 평

형벌은 범죄자의 신분이나 내적인 감수성이 아닌, 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야기한 공적 피해(사회의 손해)에 비례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위의 원문에서 말하는 '형벌상의 평등이 외재적'이라는 말은, 실제 사회에 끼친 피해(외재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해야지, 범죄자의 내적 감수성(내재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⁹⁹⁾

27. 형벌의 관대성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 형벌은 비록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벌 면제의 희망이라는 요행수와 결부된 무시무시한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것이 틀림없다. 처벌이 확실할 때는 최소한의 해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떨게 할 수 있다. <106p>

현자의 돌 평

여기서 말하는 ‘형 명제의 희망’이란, 처벌이 확실하지 않아서,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잡혀 적당한 처벌받을 확률이 40% 라면, 사람들이 60%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형벌에서 면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베카리아는 약한 강도의 처벌이라도 100%로 처벌이 시행된다면, 강도 높은 처벌이 40%의 확률로 시행될 때 보다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베카리아는 과도한 형벌은 범죄자들은 잔혹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더 대담한 2차 범행(= 목격자 살해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부작용을 제시하기도 한다.

(…)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잔혹한 형벌 그 자체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형벌을 통해 그가 받을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일념에서 여러 후속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107p>

(…)

한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범죄자가 형벌을 통해 받은 해악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정도로 충분하다. (…)
그 정도를 넘어선 모든 처벌은 불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폭압적인 것이다. <108p>

현자의 돌 평

베카리아는 ‘사형, 고문’과 같은 잔혹한 형벌에 반대하였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잔혹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더 대담한 2차 범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목격자 살해) 만약 온건한 형벌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일반 대중)에게 경고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잔혹한 형벌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약간이라도 커야 한다. 예컨대 가격 담합으로 100억을 번 회사에 벌금으로 10억을 부과한다면, 그러한 벌은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와 동일한 논리이다. 벤담은 베카리아의 『범죄와 처벌』에 큰 영향을 받은 공리주의 철학자이다.¹⁰⁰⁾

•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선지

ㄱ. 공리주의 :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하는가? (○)

28. 사형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그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인 것이다. <111~112p>

94) 폭력으로 억압하는

95) 범죄로 얻는 이익과 형벌 간의 비례적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96) 베카리아와 공리주의는 범죄, 공리와 형벌 사이의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한다. 한편 칸트는 1 : 1 대응의 산술적 비례를 추구한다.

97) 체사레 베카리아_한인섭 신역_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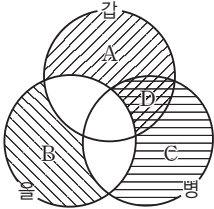
98) 형벌의 양정 :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 (참고) 양정하다 : ~을 헤아려 정하다)

99) 중세시절에는 평민은 작은 죄를 저질러도 사형에 처하고, 귀족은 큰 죄를 저질러도 작은 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중세 때는 귀족은 감수성이 풍부해서 약간의 벌만으로 죄를 뉘우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귀족, 감수성 이야기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쓰는 것임. 중요한 것은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에 미친 피해와 비례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100) 벤담의 대표적인 표어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베카리아가 먼저 사용했다.

베카리아와 공리주의는 구분을 해야 한다. 베카리아와 공리주의는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생명은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를 반대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의 이익이 증가된다면 사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p>(가)</p>	<p>갑 : 처벌에서의 형량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처벌은 규칙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p> <p>을 :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p> <p>병 :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는 세상에 없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며, 처벌의 효과도 종신노역형에 비해 훨씬 적다.</p>
<p>(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 갑만의 입장</p> <p>B : 을만의 입장</p> <p>C : 병만의 입장</p> <p>D :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보 기>

- ㄱ. A :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사형은 그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 ㄴ. B :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ㄷ. C : 형벌은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 ㄹ. D : 유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현자의 돌 평

평가원, 수능에 출제된 적 없는 갑/을/병 구도이다. 갑, 을, 병을 서로 비교하는 문항인 만큼 제시문과 선지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해보자.

제시문 분석 (약식)

갑은 제시문만 보고는 공리주의인지 베카리아인지 알 수 없다. 실제로 베카리아는 제시문 갑에 나온 세 문장 전부에 동의할 것이며, 실제로 자신의 책에서 세 문장과 같은 맥락의 논의를 반복한다.¹⁰¹⁾ 그런데 병이 확실하게 베카리아이기 때문에 갑을 공리주의라고 확정할 수 있다.

제시문은 처벌에서의 형량이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 얻게 될 이득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는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ㄱ 선지 'A :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하는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번에서는 ㄹ 선지로 'C :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해보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형벌이 방지할 해악(=일반인에게 경고, 범죄자 격리 및 교화하여 미래 범죄를 예방함.) > 형벌의 범죄자에 대한 해악(범죄자가 겪을 고통) >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을 이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베카리아도 동의할 내용이다. (물론 베카리아는 형벌을 위의 부등호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형제는 위의 부등호와 무관하게 반대한다.)

※ 참고

위의 부등호 관계에 대한 추가 설명

일단, 범죄자가 범법 행위를 해서 1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보다 더 큰 것이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벌의 범죄자에 대한 해악(고통) > 범죄자가 범법 행위로 얻을 이득’이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형벌이 고통을 가하는 악이지만, 형벌의 고통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예. 범죄 예방 효과)을 얻을 수 있다면, 형벌을 필요한 악으로써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벌이 방지할 해악 > 형벌의 범죄자에 대한 해악(고통)’이다.

이 부등호 관계는 곧 비례인데, 이를 통해 공리주의와 베카리아는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 & 형벌의 정도, 형벌로 방지할 수 있는 해악 (=증가시킬 수 있는 공리) & 형벌의 정도를 비례적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을은 루소이다. 칸트로 착각하면 안 된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과 ‘시민의 생명 보호(살인자로부터)’의 관점을 갖고 있다. 제시문은 시민(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사형)은 살인자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형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병은 베카리아이다. 베카리아의 경우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사회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형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행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처벌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의 효과란 공리성을 말한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완성되기 전부터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하며 ‘공리성’, ‘유용성’, ‘이익’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지 분석

ㄱ. A: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사형은 그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

이 선지는 갑(공리주의)만이 동의해야 벤다이어그램 A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선지가 된다. 하지만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으로 본 학자는 칸트가 유일하다. 사형 존치론자 중 루소의 경우, 사형은 사회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고 더 이상 국가의 시민이 아닌 ‘반역자, 범죄자, 적’에 대한 소멸을 행하는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사회 공리의 증감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보았고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했다. 따라서 ㄱ 선지에 대해서는 갑, 을, 병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 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다.

한편, 칸트의 입장에서 사형제는 ‘살인자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겠지만, 살인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인가?’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이다. 칸트는 사형제가 정언 명령이라고 보았다. 모든 정언 명령은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인간성 정식을 만족시켜야 한다.¹⁰²⁾ 따라서 사형제도 모든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칸트에게 종신노역형은 도덕법칙(정언명령)이 아닌, 가언명령이며 칸트가 인정할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종신 노역형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법이고, 보편화할 수 없는 법이다. 이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제시문 을(칸트)의 뒷부분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101) 베카리아와 공리주의는 구분을 해야 한다. 베카리아와 공리주의는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생명은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를 반대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의 이익이 증가된다면 사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02) 모든 정언명령이 인간성 정식과 보편성 정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내에도 잘 서술되어 있는 논리이다. (1단원 3.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칸트 의무론)

을: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ㄴ. B: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이 선지는 을(루소)만이 동의해야 벤다이어그램 B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선지가 된다. ㄱ에서 설명했듯이 루소(을)는 살인자를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로서 반역자, 범죄자, 적이라고 보았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공리주의(갑)는 살인자를 처벌하는 논거로 사회 계약을 논하지 않고 공리성을 따진다. 베카리아(병)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 자체에 반대한다. 따라서 ㄴ 선지는 을만이 동의하고, 갑과 병이 반대하기 때문에 B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이다.

ㄷ. C: 형벌은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

이 선지는 병(베카리아)만이 동의해야 벤다이어그램 C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선지가 된다. 병은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병은 제시문에서 사형이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처벌의 효과가 적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형벌의 강도가 약하지만 사형보다 범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좋다고 주장한다. 병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시키는데 충분한 정도의 강도로만 형벌을 가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갑(공리주의)은 제시문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처벌은 규칙이 정한 적절한 양의 고통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갑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형벌은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라는 ㄷ 선지에 대하여 동의할 것이다.

한편 을(루소)의 경우 사회 방위론의 관점에서 형벌을 범죄의 억제 수단 혹은 예방 수단으로 본다.¹⁰³⁾ 따라서 개연적으로 해당 선지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루소는 사회 방위론적 관점도 지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회계약론’의 큰 틀¹⁰⁴⁾에서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응보, 응징을 주장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에 100%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쨌든 ㄷ 선지는 갑은 확실히 동의하기 때문에 루소의 입장이 애매하더라도 (애초에 출제자가 루소의 입장에서 해당 선지를 완벽하게 판별하지 못해도 답이 나오도록 보기 선지를 구성했다.) 답을 구할 수 있다. ㄷ 선지는 갑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이다.

ㄹ. D: 유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먼저 공리주의자인 갑은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유용성을 판단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병의 경우 자신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형벌은 유용성을 판단 기준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사형에 대해서도 물론 ‘사회계약론’적으로 시민이 생명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는 하나, 동시에 사형은 종신노역형보다 범죄를 예방하는데 ‘유용하지 않다’는 것도 베카리아가 사형제에 반대한 논거이다. 따라서 유용성 ‘만을’ 판단 기준으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겠지만¹⁰⁵⁾ 유용성을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형벌의 대상인 인간은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벌은 오직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의 차원에서 가해져야 한다.

을 : 사형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벌이는 살인과 다름없다. 사형은 일시적 공포를 자아내지만 종신노역형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

<보 기>

- ㄱ. 갑은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ㄴ. 갑은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사형제도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출제 오류]¹⁰⁶⁾

현자의 돌 평

해당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다.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런데 ㄹ 선지는 출제 오류다. ㄹ 선지는 ‘칸트(갑), 베카리아(을)은 사형제도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당위적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제시문 분석 (약식)

갑은 칸트다. 제시문은 (1) 형벌의 대상인 인간 즉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만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¹⁰⁷⁾ (2) 따라서 형벌은 범죄자를 다른 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낱 수단만으로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정당한 보복 차원에서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을은 베카리아다. 제시문은 (1) 사형은 국가가 시민에 대해서 벌이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원문에는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출제자는 베카리아가 ‘국가는 시민들의 살인을 금지한다. 그런데 국가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모순이다.’라고 사형제를 비판한 것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쓴 것이다. 또한 제시문은 (2) 사형은 강력하지만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강도가 낮지만 지속적인 종신노역형에 비해 범죄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본다.

선지 분석

- ㄱ. 갑은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갑은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칸트다.
- ㄴ. 갑은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갑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제도라고 보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한다. 사형제도는 ① 살인자를 살인죄에 대해 오직 자신의

103) 일반 예방주의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루소는 ‘계약’의 위반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4) 사회계약론 (사회방위론 + 계약 위반에 대한 응보론)
 105)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입장뿐만 아니라 사회 계약론적 입장 또한 지닌다.
 106) 출제 오류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 선지 ①-⑤를 지웠다.
 107) 하지만 출제자가 제시문을 조금 잘못 구성했다. 정확한 표현은 ‘수단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한낱 수단으로만 취급될 수 없다.’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한낱 수단으로만’이라는 표현은 ‘목적이지 아닌 한낱 수단으로만’이라는 의미이다.

목숨으로 짓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② 종신노역형¹⁰⁸⁾을 하며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죄책감 등을 겪지 않도록 범죄자의 인격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칸트의 입장에서 사형제는 살인자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겠지만, 살인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이다. 칸트는 사형제가 정언 명령이라고 보았다. 모든 정언 명령은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인간성 정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형제도 모든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칸트에게 종신노역형은 도덕법칙(정언명령)이 아닌, 가언명령이며 칸트가 인정할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종신 노역형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법이고, 보편화할 수 없는 법이다. 이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제시문 을(칸트)의 뒷부분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을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ㄷ. 을은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을은 사형제가 종신노역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이는 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 논거 중 하나이다.

ㄹ. 갑, 을은 사형제도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출제 오류]

[출제 오류] 이것은 잘못된 선지다. 출제 오류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이 수능에서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 설명은 출제 오류임을 분석하고 올바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수능에 나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 괜찮다.¹⁰⁹⁾

칸트와 베카리아가 100% 동의하지 않게 만들려면 선지는 ‘칸트(갑), 베카리아(을)은 사형제도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위적 표현) 이렇게 출제해야 한다. 칸트에게 사형제도는 정언 명령이다. 칸트는 당위적으로 사형제도를 오로지 공적 정의, 응보적 정의의 실현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한 베카리아는 당위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교육청이 선지로 출제한 ‘칸트 & 베카리아 : ‘사형제도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선지는 칸트와 베카리아가 ‘사형제도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주장했다는 의미라기보다, 칸트와 베카리아가 ‘사형제도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가능성’을 묻고 있다. 어떤(any) 경우에서 칸트나 베카리아가 이를 인정했다면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동의하는, 사실 판단에 가까운 선지이다.

사형제에 대하여 윤리적, 당위적으로 칸트는 존치를 주장했고, 베카리아는 폐지를 주장한 것은 맞지만, 칸트와 베카리아는 예외적인 경우 ‘사형제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물론 공적 정의에 따른 사형제가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칸트가 고려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공적 정의가 원하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정언명령인 사형제를 시행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사형제가 결과적으로, 경험적으로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¹¹⁰⁾ 물론, 사형제가 도덕적 & 당위적으로 공익의 증진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칸트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사형제가 사회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정의가 원하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렇게 사형제가 정언 명령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전제한다면 그 이후에 공익 증진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다.¹¹¹⁾ 이는 인간성 정식과도 동일한 논리이다.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성 정식에 따라서, 우리가 식당의 아주머니를 단지 나의 음식을 만들어 주는 한낱 물건, 수단으로 취급하여 갑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다. 하지만 식당 아주머니를 자율적인 도덕 능력을 지닌, 이성을 지닌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 아주머니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러한 전제 하에서, 아주머니를 우리의 음식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것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베카리아도 사형제를 윤리적인 입장에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유일한 예외로서,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경우일 경우 사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어떤 살인자가 종신 노역형을 통해서 자유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만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의 죽음을 불가피하다고 말한다.¹¹²⁾

현자의 돌 평

위 해설에서는 \approx 선지가 어째서 오류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지엽적인 논의를 설명했다. 그 지엽적인 내용은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수준의 생활과 윤리에서는 그런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내용은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위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필자(현자의 돌)는 해당 선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선지 ‘칸트(갑), 베카리아(을)은 사형제도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올바른 선지로 수정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개념을 설명해주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위 \approx 선지가 출제 오류, 잘못된 선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항을 다루고 있는 모든 기출 문제집에서 \approx 보기 선지를 칸트가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이다.¹¹³⁾ 모든 기출 문제집이 해당 선지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 출제 오류인 선지를 놓고 맞다고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기출 문제집에 나온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학습을 해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필자(현자의 돌)는 기출 문제집 저자, 인강 강사, 학교 선생님이라면 선지를 올바르게 해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자 본인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관련된 전문 서적, 논문들을 수십 수백 권을 뒤적이면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개념을 전달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가원은 교과서와 원전, 논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평가원이 출제할 수 있는 선에서 학생들이 배웠을 때 좋은 내용들을 ‘원전/논문/영어 원서’에서 발췌하거나 요약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저자는 올해 초에도 칸트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분석하고 정리해서 수능 분석서에 실었고, 6월부터 9월까지 칸트와 사형제 관련 책과 논문을 백 권 이상 읽고 분석하고 정리하여 이 분석서에 실고있는 것이다. 이 책이 현재의 생활과 윤리 강의, 도서 시장에 건전한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출판사들과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108) 물론 종신 노역형이 공적 정의가 원하는 ‘동등성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맞다.

109) 이 분석서에서 폰트가 ‘기울어져’ 있는 내용은 모두 수능에 나오지 않을 내용이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110)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칸트는 다수의 국민이 왕에게 반하여 폭동/반란을 일으킨 경우 (국왕의 군대를 살해한다든지), 그 다수의 국민을 죽이는 것은 사회에 좋지 않으므로 용(주권자)이 살인자들을 사형에서 면제해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으로 제시한다.

111) 칸트 『윤리형이상학』 B231, B236에서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비상사태에서는 ‘주권자(왕)’이 사형 대신에 다른 형벌을 내리는 사면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한 논문 : 김세빈,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91p,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형벌과 도덕 - 칸트의 예방이론』, 윤재왕, 안암법학회, 〈안암 법학〉 제 40권, 2013, pp 537

112)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12p ~113p

113) 미래엔 생활과 윤리 기출 문제집(이룸이엔비) 해설지 66p, 502기출 문제집(메가북스) 해설지 4p(2015 시행 10월 교육청), 씨리얼(디딤돌) 생활과 윤리 기출 문제집 해설지 92p 등 모든 기출 문제집.

114) 이 문구는 범죄자를 인격체라기보다는 단순히 대상교훈(Object Lesson)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보여준다.

※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원문 & 기출과 EBS 문항 분석으로 돌아갑니다.

결심이 선 인간이 사회를 침해하는 것을 사형이 방지하지 못했음을 모든 시대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 지속도이다. 우리의 감수성은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충동보다는 비록 미약하더라도 반복된 인상에 의해 훨씬 쉽게, 영속적으로 자극받기 때문이다. <113p>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목격자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비슷한 짓을 하면, 오랫동안 저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겠구나.”¹¹⁴⁾하고, 이런 생각은 자주 반복되기에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 멀찍이서 흐릿하게 보는 죽음의 공포보다 이런 억제책이 훨씬 강력한 것이다. <114p>

형벌은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경꾼, 즉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중략) ...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 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하고 싶다. <115p>

사형은 한 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킨다. 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 분산된다. 바로 이것이 종신노역형의 상대적 이점이다. 노역형은 수형자보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불행한 순간순간의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지만, 수형자는 눈앞의 순간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 고통의 체험 속에 사는 수형자는 구경꾼들이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위안을 찾아낸다. 구경꾼은 불행한 수형자의 무감각해진 마음 대신 자신의 현재의 감수성으로 사태를 판단한다. 구경꾼에게 수형자의 모든 고통은 상상 속에서 더욱 증폭된다. <117p>

기출 및 EBS를 통해 확인하기 ②

• EBS 자료 플러스 : 사형제도에 대한 칸트와 베카리아의 관점 (칸트는 칸트 설명에서)

사형은 한순간 동안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 준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EBS 해설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효과적임을 근거로 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 위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117p의 원문이 이 EBS 자료 플러스에 나온 베카리아 글의 원문이다. 실제 수능에서는 교수님들이 EBS 자료를 보고 출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EBS의 자료의 출처(원전, 원문)를 보고 출제하시기 때문에 원문을 읽어두는 편이 유리하다.

• 번역자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석¹¹⁵⁾ 215p

후일(1792년) 베카리아는 오스트리아 정부를 위하여 사형에 관한 비망록을 마련하였다. 그 비망록에서는 본 장의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절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전적으로 오판의 여지 없는 사건에 대해서만 사형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무오류의 존재일 수 없는 까닭에 베카리아는 사형을 과할 정도의 충분한 확실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사형폐지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거 중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현대의 사형 폐지론도 이 논증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베카리아의 입장을 끝내고 루소의 입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카리아의 견해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

베카리아가 사형제를 반대한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의 오판 가능성, 사형의 회복 불가능성
- ② 공리주의 : 범죄예방(사회 이익, 공리) 효과에 있어서 : 종신노역형 >> 사형
- ③ 사회계약론 : 시민들은 인간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을 사회계약을 통해서 타인, 사회에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¹¹⁶⁾

베카리아는 형벌, 사형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킨 근대의 학자이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유럽의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베카리아의 근대적 형법 사상은 많은 국가와 계몽 군주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각국의 형벌 체계의 개혁(고문 금지 등), 사형제 폐지 등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중학교 사회, 고1 공동사회에서도 나오는 ‘사회계약론’은 홉스,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등 근대 시대의 유럽의 사상가들이 주목했던 주제였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사형제 폐지에 대한 근거로 ‘③ 사회계약론’을 사용한 것은 근대의 많은 사상가들의 동의와 비판을 불러왔다. 그 중에서 루소와 칸트의 비판을 살펴보자.

4) 본론 ② : 근대 사회 계약론자 : 루소의 사형제 옹호론

본 내용에서는 루소와 칸트가 비판했던 베카리아의 원전 주장을 해설하여 사형제 반대론의 입장과 찬성론의 입장을 대비하면서 루소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 베카리아의 사회계약론적 입장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그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인 것이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11~112p〉

법은 공공의사의 표현이다.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또 처벌한다.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시민들보고 살인하지 말라면서 공공연한 살인을 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18~119p〉

115)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9장 215p 주석

116)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나, 공공선을 위해서 개인들의 자유의 일부는 희생할 수 있다. 예컨대, 벌금을 통한 재산권의 침해는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베카리아에게 사회계약이란 끊임없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자유의 일부분을 희생하여 법을 만들고 사회를 형성하는 가상적 계약을 의미한다. 그렇게 희생한 자유의 일부분이 모여서 한 국가의 주권을 구성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회 계약의 목표는 개인들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¹¹⁷⁾ 이런 의미로 볼 때 형벌권은 사회계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은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형벌권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이다.¹¹⁸⁾ 베카리아는 ‘사형’이 바로 사회계약이 정당화하지 못하는 한계점이라고 보았다. 사형이 침해하는 법익인 범죄자의 ‘생명’은 시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에 양도한 ‘최소한의 자유’가 아니라, 양도하지 않은 ‘최대한의 가치, 자유’인 생명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에 대한 베카리아의 입장은 루소의 입장과 대립한다. 베카리아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 ‘특수익사(자유)의 극히 일부분’을 양도했다고 보는 반면 루소는 사회 구성원이 ‘공적인 의지’를 모아서 사회계약을 맺고 사회를 구성했다고 본다. 루소에게 사회를 대표하는 의지는 ‘일반의지’이며 일반의지는 오로지 사회의 공적인 판단만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루소는 ‘일반의지’에 따라서 국가의 주권자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베카리아는 국가가 시민들의 살인 행위는 금지하면서, 정작 국가는 사형제를 통해 공공연한 살인을 명한다고 비판했다. 루소는 이에 대해 ① 사형은 살인자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②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인자에게 희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계약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하기는 커녕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들 가운데 자신이 교수형을 당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한다.

〈루소, 사회계약론(이재형 역), 서울 : 문예출판사, 2014, 51p〉¹¹⁹⁾

루소는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첫째, 루소의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사회방위론과 응보론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루소의 사회 방위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루소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본다. 그 계약의 목적 중 하나가 생명의 보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소는 사형제도를 인정하며 범죄 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둘째, 응보론적 입장¹²⁰⁾은 다음과 같다. 살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도 빼앗길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이다. 살인자를 희생시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살인자가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¹²¹⁾ 루소는 일반의지의 대행으로서 주권(국가를 운영하는 의지)이 개인들로부터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편, 루소와는 달리 베카리아와 칸트는 ‘사회 계약의 내용 안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¹²²⁾

따라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적 사형제도 존치론을 응보론으로 해석한다면,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온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와 루소의 입장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물론 루소의 응보론적 성격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극히 낮다.¹²³⁾

★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공적인 의지¹²⁴⁾를 모아서 일반의지라는 공적 의지의 총체를 만들었다고 본다. 국가의 주권과 법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반의지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한다. 만약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사회 계약을 위반한 범죄자를 처벌한 권한을 양도했다면, 결국 국가(주권¹²⁵⁾)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 한편 베카리아는 루소와는 달리 사회 구성원은 자연 상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¹²⁶⁾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에 ‘개인의 자유의 최소한’을 양도하여 ‘일반의사’를 만든다고 보았다. 베카리아의 국가는 ‘일반의사’를 대변하는 존재일 뿐이므로, 인간의 최대한의 자유인 ‘생명권’까지 침해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사형제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을 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출 및 EBS를 통해 확인하기

EBS 수능완성 144p 6번

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회 계약은 그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수단은 위험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의 생명을 내어 줄 줄 알아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나)	질문자 :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자 : _____ (A)

- 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 ② 인간은 오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 ③ 범죄 예방의 효용이 사형의 해악보다 적을 경우 폐지해야 합니다.
- ④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 ⑤ 사회 구성원이 국가에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주었으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자의 돌 평

위에서 본 루소의 원문을 약간 읽기 좋게 순화한 제시문으로 선지도 쉽다. 선지들이 기출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해볼 점은 많다. 같이 살펴보자.

제시문 분석

(가)는 루소의 입장이다.¹²⁷⁾ 제시문은 사회계약은 계약의 당사자(시민)들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자기의 생명을 내어 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117)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형벌의 목적 중 하나로 보았다.
 118) 윤영철,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형법관에서의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강원법학 제41권, 2014, 754~755p 요약
 119) 김세빈,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118p, 재인용
 120) 재작년 EBS 수능특강 70p와 작년 교육과정 교회사 122p에서는 루소가 응보론의 입장으로 소개되었다. 물론 루소가 응보론이나, 아니냐 하는 암기형 문제는 내신 시험이 아닌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매우 낮다. 특히 개정교육과정에서 루소의 사형제에 대한 견해의 비중도 줄어들었기에 더욱 확률이 낮다. ‘사회계약 위반에 대한 보복, 대가로서 형벌을 가함.’ 정도로는 출제 가능하다.
 121) 루소는 베카리아와 달리 각 구성원이 사회 계약을 맺어 공동체에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고 보았다. (오세혁, 『법철학사』, 새창출판사, 163p 참고), 단 생명권에 있어서는 자신이 살인을 범한다고 하는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성립된다. (김세빈,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대학원, 118p 참고)
 122) 칸트 칼럼 맨 뒷부분에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문항의 상세한 해설이 있다. 이 페이지부터 해설의 페이지까지 꼼꼼히 공부하면 올해 6, 9월 평가원에서 출제된 사형제 문항의 제시문과 선지를 100%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어렵겠지만, 힘을 내자!
 123) 임수민,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분석서 2016학년도 수능』, 46p
 124) 사적인 욕심과 같은 것은 제외하고, 공적인 것만 모았기 때문에 일반 의지는 공적 대표성을 지닌다.
 125) 엄밀히 말해서 루소는 국가(정부)와 주권을 다르게 보았지만 **생윤**에서는 일단 구분하지 말자.
 126) 루소는 자연 상태를 투쟁 상태가 아니라 목가적(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이고, 평화로운 상태로 보았다.
 127) 올해 EBS 수능완성에서도 루소를 다루기는 하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루소의 입장은 중요도가 낮아졌다.

말한다. 만약 시민이 살인을 할 경우 그는 ‘살인자, 범죄인’이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다. 그(범죄인)는 사회의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만 한다는 내용이 사회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지 분석

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

⇒ 루소는 사회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생명권)을 위해서 사형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오히려 베카리아가 동의할 것이다.

② 인간은 오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

⇒ 루소는 사형제 존치론자. 베카리아가 주장한 내용¹²⁸⁾으로, 사형제 폐지론자의 대표적인 논거이다.

③ 범죄 예방의 효용이 사형의 해악보다 적을 경우 폐지해야 합니다. (×)

⇒ 루소는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형제의 사회 방위적 효과를 긍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를 사회 방위적 효과(사회의 이익, 효용)만으로 사형제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파괴한 살인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보론적 입장이 지닌다. 따라서 만약 사형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이 사형제도로 인한 사회적 해악보다 작을 경우에도 루소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도 만약 사형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이 사형제도로 인한 사회적 해악보다 클 경우에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물론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적 논거를 통해 사형제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베카리아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 사형을 당한 생명의 회복 불가능성, 생명권(사회계약으로 양도 불가능)의 논거를 통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라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루소, 베카리아와는 달리 사회 제도와 법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로서 ‘공리의 원리’를 추구한다. 이를 2016학년도 수능의 12번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주고,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이다.” 라는 제시문으로 표현하였다. 결국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는 ‘정의’¹²⁹⁾가 아닌, 쾌락과 고통의 양적 계산이라는 공리의 원칙을 통해서 법률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사형제도(법률) 또한 ‘효용’과 ‘해악’을 비교하여 존폐를 결정할 것이다.

④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

⇒ 칸트가 동의할 것이다. ① 살인자를 살인죄에 대해 오직 자신의 목숨으로 짓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② 종신노역형¹³⁰⁾을 하며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죄책감 등을 겪지 않도록 범죄자의 인격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칸트는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사형제 존치를 주장한다.)

한편 루소에게 살인자는 사회의 적이며 말살의 대상이다. 베카리아는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 공리주의자는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 살인자를 처벌하여 일반인에게 경고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살인자를 교화(教化)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취급한다.

⑤ 사회 구성원이 국가에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주었으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

⇒ 루소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다. 루소는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가에 양도했다고 본다. 반면 베카리아는 사회 구성원이 국가에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이것은 칸트도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다. 칸트는 베카리아의 입장을 비판한다. 칸트는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¹³¹⁾ ‘사회 구성원들의 입법적 이성’이 시원적 계약¹³²⁾을 통해 공적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에게는 범죄와 동등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입법을 했다고 보았다. 이는 곧 사회 구성원들이 선형적¹³³⁾으로 국가(특히 공적 정의의 대변자인 법정)에게 살인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준 것이다.

더 알아보기

• 장 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1762년) 제 2권.¹³⁴⁾ 5장. 삶과 죽음의 권리 → 사형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

이 질문은 자주 제기된다. 어떻게 개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데, 개인이 주권자(현자의 둘 : 일반의지의 총체, 정부, 군주 등)에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가? 개인들 자신도 갖지 못하는 권한을 어떻게 양도한다는 것인가? 이 질문은 잘못 제기되어 답하기 어렵다. 모든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고자 자신의 몸을 창밖으로 내던진 이가 자살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해진 적이 있던가?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폭풍을 만났다 죽었다고 해서, 자살에 대한 죄를 묻은 적이 있던가?

사회 계약의 목적은 사회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계약을 지킬 수단을 찾을 것이다. 그 수단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심지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필요할 경우, 자신의 생명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 내어 주어야 한다. 게다가 법이 시민에게 그 위험성을 감당하라고 요구할 때 그 시민은 더는 그 위험에 관해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군주가 “네가 죽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시민은 죽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국가, 군주)이 그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의 삶은 자연이 베푼 은혜 일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건부로 선물해준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에게 가해진 사형 제도는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살인자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인을 할 경우, 사형에 처해지는 데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이 계약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교수형을 당할 것이라고 짐작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 계약을 공격하는 모든 범죄자는 반역자로 명명되며, 국가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경우, 국가를 보존하는 것과 그 범죄자를 보존하는 것은 모순된다. 따라서 그 범죄자는 반드시 소멸당해야 한다.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은 시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을 죽이는 것이다. 그 재판과 판결은 그 범죄자가 사회 조약(계약)을 위반했다는 증명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국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자로서 혹은 공공의 적으로서 사형을 시켜서, 그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4) 본론 ③ : 근대 사회 계약론자, 선형주의적, 절대주의적 응보론자 : 칸트의 사형제 옹호론

칸트 또한 베카리아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며 형법과 사형제에 대한 자신의 법철학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베카리아에 대한 칸트의 비판이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문항으로 출제되었다.¹³⁵⁾ ‘사법 정의, 사형제’ 주제 중 가장 중요한 칸트의 윤리학(법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다. 어렵지는 않지만 그동안 어떤 강의나 책에서도 배울 수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다. 이 칸트 Part를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수능 사형제 문항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8) 베카리아, 1792년, 오스트리아 정부를 위하여 사형에 관한 비망록

129) 베카리아와 공리주의자는 사회와 인간에게 ‘정의’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문항 해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30) 물론 종신 노역형이 공적 정의를 원하는 ‘동등성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맞다.

131) 칸트의 사회계약론적 입장은 형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칸트의 정치철학 전반에 걸친 논리이다. 칸트의 응보론적 형법관 역시 칸트의 사회계약론적 법철학, 정치 철학에 기초하는 것이다. 물론 수능 생활과 윤리의 ‘사법 정의, 형법’ 단원에서 칸트의 사회계약론적 입장을 물어보는 선지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교과외의 설명이기는 하나, 형법, 사형제 논의에 있어서 ‘시민적 계약’ (=사회 계약)은 칸트의 법철학의 기본 전제이며,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다른 학자들의 입장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스토리텔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칸트 제시문과 ④, ⑤ 선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가 도입한 것이다.

132) 칸트는 자신의 사회 계약을 시민적 계약이라고 칭했다. 칸트에게 이는 경험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선형적으로 요청되는 계약임을 의미한다. 한편 롤스도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자연 상태’ 대신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칸트적 사회계약론을 전개했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기존의 철학적 개념을 자기 언어화하여 재정의하곤 한다.

133) 선형적 : 경험에 앞선 것, 경험을 배제한 것.

134) 이 번역은 필자가 원문을 보고 직접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디테일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능에 루소 제시문이 출제될 경우 이 지문에서 출제될 확률이 90% 이상이므로 꼭 읽어보길 바란다.

135) 이번 2017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통합 분석서의 ‘사법적 정의’의 테마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문항이다. 12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형법과 사형제에 대한 근대 사회계약론적 접근이다. 낯설겠지만 스토리 중심의 서술(Storytelling)이므로 스토리 위주로 이해하면서 반복해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베카리아에 대한 칸트의 비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¹³⁶⁾

- ① 칸트는 의무론의 입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② 살인자는 도덕적 의무를 어긴 자로서 형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져야만 한다. 심지어 칸트는 시민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인해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모든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 ③ 형법으로서 사형제는 정언 명령이다. 그러므로 사형제는 사회의 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언 명령은 어떠한 조건(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한낱 수단이 아니며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¹³⁷⁾ 또한 살인자도 인간으로서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한낱 수단, 물건으로 취급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사형제가 사회의 이익(예) 일벌백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경고 하여 범죄를 예방)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존엄한 인간이 사회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수단이자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사형제는 사회의 이익 증감 여부에 따라 가변적으로 행해지는 가언 명령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정언 명령으로서의 사형제에 따라 살인자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는 근거는 오로지 살인자가 살인을 했다는 이유이고, 살인자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충분하다. 이를 칸트는 정의의 기준인 ‘탈리오법칙¹³⁸⁾’에 따른 ‘응당한 보복(응보)’이라고 보았다.
- ⑤ 특히 사형제는 인간의 입법적 이성이 정의로서 선형적¹³⁹⁾으로 원하는 것이다. 공적 법칙인 법률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곧 공적 정의를 달성하는 것이며,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⑥ 사형제는 인간의 입법적 이성이 정의로서 의욕한 것이고, 사형제의 시행은 결국 인간의 입법적 이성이 원하는 공적 정의가 달성된 것이므로, 결국 사형제는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시에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¹⁴⁰⁾이므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원전 읽기

칸트의 『윤리형이상학-법이론』¹⁴¹⁾에서 수능/평가원/EBS에 출제되었던 제시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칸트의 사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해보자.

그러면 다시 베카리아가 불러온 ‘사형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논쟁’으로 돌아가자. 칸트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위 ①~⑥을 참고) 칸트가 보았을 때 베카리아가 주장한 ‘사형은 근원적 시민 계약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인도주의에 의한 감상적 동정심의 발로일 뿐이다. 특히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자가 살인죄에 대한 처벌로 스스로의 생명을 잃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카리아의 논리는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칸트의 비판을 원전을 통해 분석해보자.

먼저, 사회 계약에 있어서 칸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자유를 지닌 존재이지만 인간이 타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자유가 상충하고,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적인 인간은 각각의 자유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¹⁴²⁾ 법을 세운다(인간의 입법적 이성). 칸트에게 법이란 서로의 자유를 보편 법칙에 의거하여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조건들의 총체를 말한다.

사회 계약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외적 자유를 포기하는데, 그것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말해서 국가로 여겨지는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외적 자유를 즉각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이다. [이때] 우리는 '국가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득적¹⁴³⁾인 외적 자유의 일부를 어떤 목적을 위해 희생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는 야만적이고 무법칙적인 자유를 남김없이 버린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자유 일반을 하나의 법적 예속[예속 상태], 즉 법적 상태에서 온전히 또다시 발견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이 가능한 것은] 그와 같은 예속 상태가 그 자신의 입법적 의지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칸트, 이충진 역, 『법이론』 이학사, 179p〉 ⇒ 수능 출제 ×

현자의 돌 평

칸트는 사회계약을 통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야만적이고 무법칙적인 자유)를 포기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포기는 야만적이고 무법칙적인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즉각적으로 되돌려받는 것이므로,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유를 희생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법적 상태에서 자유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외부의 강제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입법적 이성, 의지가 명령한 것에 따르는 자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유가 희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베카리아가 말한 '개인의 자유의 일부만을 사회에 양도한 것이지, 개인의 자유의 큰 부분을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다. 칸트는 사회계약을 맺기 위해서 개인이 자유를 공동체(사회)에 양도하는 것은 자유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개인들이 법을 세우고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양도할 경우, 그 개인들은 즉각적으로 '입법적 의지'가 세운 보편적인 법에 따른 자유를 온전히 돌려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입법적 의지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는 타율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칸트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경험적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입법적 이성'에 따른 선험적¹⁴⁴⁾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이념(Idea)이다.¹⁴⁵⁾ 칸트는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현상)과 세상 자체로서의 세상(물자체)이 바로 칸트가 나누는 세상이다.¹⁴⁶⁾ 비슷하게 칸트는 인간도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바라본다. 칸트는 인간이 경험적 세계인 '현상적 세계'의 존재이자 동시에 선험적이고 이성적, 윤리적 세계인 '예지적 세계'의 존재라고 보았다.

우리가 시공간적 제약을 겪으며 삶을 경험하는 차원이 현상적 세계이고, 우리의 이성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형제, 형법을 포함한 '도덕법칙'을 세우는 차원을 '예지적 세계'라고 이해하면 된다.¹⁴⁷⁾

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는 베카리아의 왜곡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도입한 칸트의 전형적인 이율배반(모순) 해결 방식이다.

136) <http://blog.naver.com/cucuzz/220814117437>에서 MP3 오디오 강의를 들을 수 있다.

137) 칸트에 따르면, 경험적인 기준(사회적 이익)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에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 등 형벌이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당한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38)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로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대등한, 평등한) 처벌을 의미한다.

139) 선험적: 경험에 앞선 것, 경험을 배제한 것.

140) ① 살인자를 살인죄에 대해 오직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② 종신노역형을 하며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죄책감 등을 겪지 않도록 범죄자의 인격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141) 수능과 EBS 제시문의 기준인 백중현 교수님 번역, 『윤리형이상학』 1판 3쇄, 아카넷(2015년)을 기준으로 발췌하되, 이충진 교수 번역, 『법이론』 1판 1쇄, 이학사(2013년), 그 이외 연구논문들의 부분 번역을 보충적으로 선택하여 발췌 인용했다. 또한 용어의 통일을 위해 임의로 용어를 수정했다.

142) 이충진, 『독일 철학자들과의 대화_칸트의 법철학-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이학사, 2010, 20p

143) 생득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또는 그런 것.

144) 선험적: 경험에 앞선 것, 경험을 배제한 것.

145) 오세혁, 『법철학사』, 제2판, 새창출판사, 2012년, 172p 참고

146)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와 우리의 경험에 독립해서 존재하는 세계를 말한다. 이 부분은 딱 이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그 이상의 내용은 필요 없다.

147) 칸트의 이원론적 인식론/인간관이 수능에 출제될 일은 없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된, 앞으로 서술할 베카리아에 대한 비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도입한 것이다. 칸트의 이원론적 입장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해당 문항의 제시문과 선지를 칸트의 법철학에 따라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일단 읽어 나가보자. 이 책의 끝부분까지 읽은 후 다시 돌아와서 읽어볼 것.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원전을 살펴 보면서 칸트의 형벌과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적용해서 2017 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을 풀어보자.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득적¹⁴⁸⁾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방호해 준다. 그의 형벌에서 그 자신이나 동료 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中 법이론』 292~293p〉

현자의 돌 평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中 법이론』에서 사법적 형벌이 ‘범죄자 자신,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법적 형벌이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공적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사법적 형벌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범죄와 대응되는 그에 응당한, 응분의 보복 즉 응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법적 형벌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따라 응보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할까?

그것은 ‘형벌의 법칙’이 ‘하나의 정언 명령’이기 때문이다. 정언 명령이란 ‘무고한 타인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와 같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 규칙을 말한다. 이 경우 사형제는 조건 없이 그 자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가언 명령이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선(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와 같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조건)에 따른 명령을 말한다. 이 경우 사형제라는 도덕명령¹⁴⁹⁾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가언 명령)이 된다.

정언 명령인 ‘형벌의 법칙(형법)’은 사형제를 집행한 이후에 얻을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서 도덕 법칙을 어겼다는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변하지 않는 일이고, 결국 정언 명령에 부합한다. 또한 칸트는 인간이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보다 더 지속성과 사회적 유용성이 큰 종신노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즉, 칸트는 그러한 공리주의적 행동이 범죄자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한 것이 아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도구와 수단은 ‘물권의 대상’인 ‘물건’에나 해당하는 것이다.

칸트는 비록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더 이상 시민이 아닌 범죄자로 규정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가 태어날 때부터(생득적으로) ‘도덕적 인격’, ‘예지체 인간’으로서 인격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에게 형벌을 가할 때조차 그를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인간에게 형벌을 가할 때는 자신이나 사회의 이익을 따지기 전에 그가 실제로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 즉 그가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유죄 상태에 있는 것이 확실할 때만 응보적 정의의 실현으로서 형벌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말했듯 형법은 정언 명령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벌인 일(범죄 행위 사실)에 대해서 응분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기출 및 EBS를 통해 확인하기

• EBS 수능특강 124p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EBS 해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사형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사형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EBS 수능특강 126p

6.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사법적 처벌은 범죄자나 시민사회의 선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 준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므로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 ①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가?
- ② 정당한 응보를 실현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 ③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 존중의 차원에서 폐지해야 하는가?
- ④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형제도 폐지의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가?
- ⑤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이 보다 지속적이고 큰가?

현자의 돌 평

제시문 갑의 내용은 위 『윤리형이상학』 원전의 내용과 일치한다. 선지도 사실 위의 원전 내용에 대한 필자(현자의 돌)의 해설과 일치한다. 갑은 칸트이고, 을은 베카리아다.

선지 분석

- ①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가? (×○)
⇒ 제시문 갑은 ‘시민사회의 선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형제가 시행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갑은 이 선지에 대하여 반대한다. 을은 범죄 예방 효과가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더 좋으므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칸트는 이를 ‘인간은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148) 생득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또는 그런 것.

149) 칸트에게 법은 도덕법칙(정언 명령)의 특수한 경우이다.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김세민, 15p) 보통 도덕법칙은 인간의 내적 의도만을 도덕적 판단의 고려하는데, 법은 그 의도가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 위법 행위)를 고려하여 인간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질문이 들어와서 굳이 쓴다.

② 정당한 응보를 실현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

③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 존중의 차원에서 폐지해야 하는가? (×○)

⇒ 베카리아가 말하는 ‘생명권의 양도불가능성’은 곧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인간의 생명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이에 대해 찬성한다.

④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형제도 폐지의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가? (×○)

⇒ 베카리아는 벤담 이전의 학자지만 공리주의의 선구자격인 인물로서,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유용성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¹⁵⁰⁾’을 말하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

⑤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이 보다 지속적이고 큰가? (○○)

⇒ 칸트는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는 모든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윤리형이상학』에서 말한다. 오히려 칸트에게 종신노역형은 평생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양심의 가책 등)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비인격적인 형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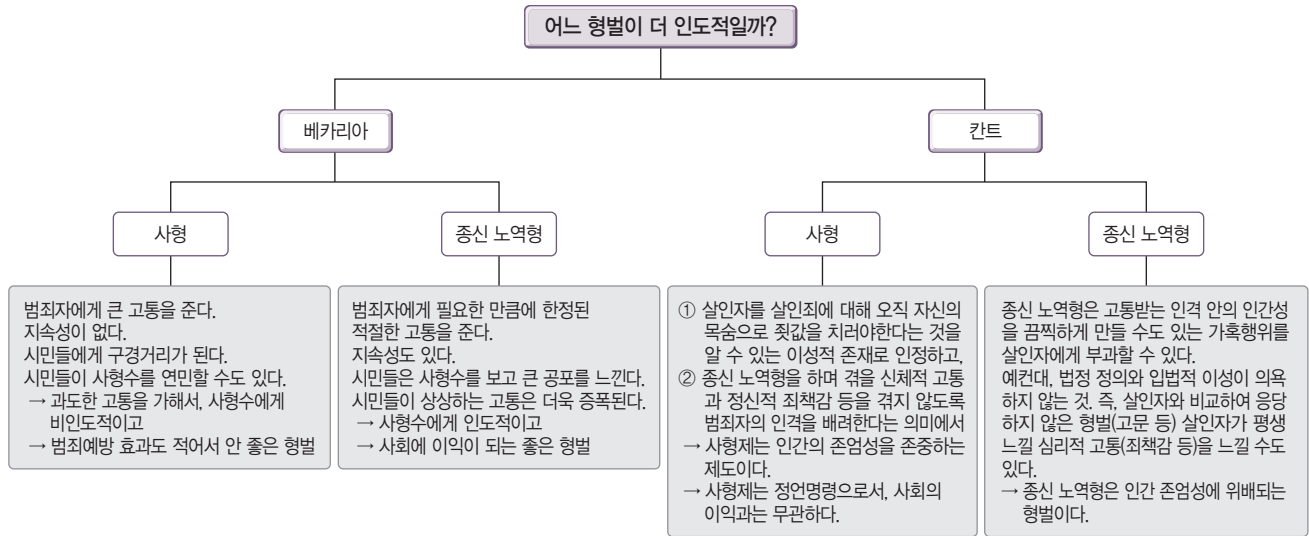
베카리아 또한 이에 동의한다. 선지 ⑤의 ‘사람들’은 제시문의 ‘구경꾼’을 말한다. 즉 종신노역형에 처해진 죄수를 지켜보는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고통이 사형에 처해진 죄수를 지켜볼 때 보다 더 크고 지속적이다. 실제로 베카리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구경거리이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경멸감과 뒤섞인 연민의 대상이다.”¹⁵¹⁾라고 말한다. 오히려 베카리아는 다음과 같이 썼다.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목격자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비슷한 짓을 하면, 오랫동안 저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겠구나”¹⁵²⁾하고, 이런 생각은 자주 반복되기에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 멀찍이서 흐릿하게 보는 죽음의 공포보다 이런 억제책이 훨씬 강력한 것이다.”¹⁵³⁾

이때 말하는 ‘억제책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은, 종신노역형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범죄자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실효성이 있는 경교로써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살인자 자체에게 가하는 고통은 다르다.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지속적인 고통을 살인자에게 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맞지만 살인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고통의 크기’ 측면에서는 사형이 종신노역형보다 더 크다고 보았다. 그는 사형을 ‘순간적인 고통’이 그 사형이 방지할 수 있는 해악(범죄 예방)에 비해서 과도하게 큰 ‘불필요하고 폭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종신노역형은 그러한 고통을 평생의 시간에 걸쳐 나눠서 살인자에게 가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인도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했다.¹⁵⁴⁾ 베카리아는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도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고통)가 아니라 지속도”¹⁵⁵⁾라고 보았다. 또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¹⁵⁶⁾라고 말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번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범죄자도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p> <p>을 : 범죄 예방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強度)가 아니라 그 지속성이다. 범죄자의 사형 장면을 보는 것은 중신형과는 달리 범죄 억제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p>
(나)	

<보 기>

- ㄱ. A :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이다.
- ㄴ. A : 범죄 예방과 억제가 사형제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ㄷ. B :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ㄹ. C : 사형제도 존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0) 벤담의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대표하는 슬로건인 이 문구는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 인용한 것이다.
 151) 체사레 베카리아, 위 책, 115p
 152) 이 문구는 범죄자를 인격체라기보다는 단순히 대상교훈(Object Lesson)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보여준다.
 153) 체사레 베카리아, 위 책 114p
 154)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한인섭 신역, 박영사, 117p, 요약
 155)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한인섭 신역, 박영사, 113p
 156) 체사레 베카리아, 위 책, 106p

현자의 돌 평

아주 좋은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항에 대한 해설은 EBS 수능특강 126p 6번 문항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선지 분석

답은 ㄴ, ㄹ이다.

ㄷ. B :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 칸트는 당연히 × (이유는 위에서 설명), 베카리아도 ×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표로 일반 예방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즉 일반 대중들에게 경고하여 미래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히려 이는 벤담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특수 예방주의’의 목표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선지 ㄷ.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대한 벤담(Jeremy Bentham)의 입장(가변적)과 특수 공리주의의 입장(사형 폐지 주장)

벤담은 공리주의자로서 사형이 주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 범죄에 대한 형벌은 보다 큰 해악을 방지하는 한에서만 정당하다고 한다.

그는 범죄를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형벌은 범죄를 치료하고 예방하고 보상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형벌은 사회의 자기보존수단으로서 한편으로는 예방적 차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이후의 재범 방지와 개선의 차원이라고 하였다. 그는 전자를 일반 예방이라고 했고 후자를 특수 예방이라고 하였는데 사형을 특수 예방의 수단으로서는 긍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형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⁵⁷⁾

하지만 이것만으로 벤담이 주장한 형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목표 중 하나라면 인정) 벤담이 주장한 형벌의 궁극적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벤담이라는 사상가를 벗겨내고, 그냥 공리주의적 입장 중 ‘특수 예방주의’의 입장으로 본다면,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는 특수 예방주의의 궁극적 목표가 맞다. 이런 관점에서 특수 예방주의는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

6.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감, 을의 주장을 (나)의 학생 발표로 요약할 때, A, B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감 : 모든 인간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고 한다. 그 누구도 살해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계약에 동의한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둔다.</p> <p>을 :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만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그 누구도 결코 타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p>
(나)	<p>학생 x : 감은 “사형제도는 <input type="text" value="A"/>”라고 주장합니다.</p> <p>학생 y : 을은 “사형제도는 <input type="text" value="B"/>”라고 주장합니다.</p>

< 보 기 >

- ㄱ.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 ㄴ. 범죄자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니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ㄷ.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치되어야 한다. ㄹ. 범죄자도 교화를 통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0"> <tr><td style="text-align: center;"><u>A</u></td><td style="text-align: center;"><u>B</u></td></tr> <tr><td>① ㄱ</td><td>ㄴ</td></tr> <tr><td>④ ㄴ</td><td>ㄹ</td></tr> </table> | <u>A</u> | <u>B</u> | ① ㄱ | ㄴ | ④ ㄴ | ㄹ | <table border="0"> <tr><td style="text-align: center;"><u>A</u></td><td style="text-align: center;"><u>B</u></td></tr> <tr><td>② ㄱ</td><td>ㄷ</td></tr> <tr><td>⑤ ㄷ</td><td>ㄹ</td></tr> </table> | <u>A</u> | <u>B</u> | ② ㄱ | ㄷ | ⑤ ㄷ | ㄹ | <table border="0"> <tr><td style="text-align: center;"><u>A</u></td><td style="text-align: center;"><u>B</u></td></tr> <tr><td>③ ㄴ</td><td>ㄷ</td></tr> </table> | <u>A</u> | <u>B</u> | ③ ㄴ | ㄷ |
| <u>A</u> | <u>B</u> | | | | | | | | | | | | | | | | | |
| ① ㄱ | ㄴ | | | | | | | | | | | | | | | | | |
| ④ ㄴ | ㄹ | | | | | | | | | | | | | | | | | |
| <u>A</u> | <u>B</u> | | | | | | | | | | | | | | | | | |
| ② ㄱ | ㄷ | | | | | | | | | | | | | | | | | |
| ⑤ ㄷ | ㄹ | | | | | | | | | | | | | | | | | |
| <u>A</u> | <u>B</u> | | | | | | | | | | | | | | | | | |
| ③ ㄴ | ㄷ | | | | | | | | | | | | | | | | | |

정답은 A : ㄱ, B : ㄷ이다.

해설은 생략한다. 감은 루소이고, 본 분석서의 루소 칼럼 부분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다. 을은 칸트이고, 칸트 또한 별도로 설명하였으며 위 제시문 내용과 ㄷ 선지도 설명되어 있다. 한편, ㄴ은 베카리아의 대표적인 입장이고, ㄹ은 공리주의의 특수 예방주의의 대표적 입장이다.

원전 읽기

그러나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정의의 천칭의 지침의 상태에서) 동등성[평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네가 국민 가운데 타인에게 아무런 잘못 없는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너는 그것을 네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욕하면, 너는 그로써 너 자신을 욕하는 것이다. 네가 그에게 도적질을 하면, 너는 그로써 네게서 도적질을 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때리면, 너는 그로써 너 자신을 때리는 것이다. 네가 그를 살해하면, 너는 그로써 네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다. 오직 보복법[탈리오법칙]만이—그러나 물론 (사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여타 모든 것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섞이는 다른 고려점들로 인하여 순수하고 엄밀한 평결과의 부합성을 가질 수 없다.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中 법이론』 292~293p>

157)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이상훈,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63p~64p 이런 관점에서 벤담이 사형제를 반대한 글을 쓴 적도 있다. 하지만 수능 생활과 윤리에서는 벤담은 공리주의로 보는 것이 맞고, 공리주의는 공리의 증감에 따라 일반 예방주의에 따라 사형에 찬성할 수도 있고, 특수 예방주의에 따라 사형에 반대할 수도 있는 상대적 관점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

현자의 돌 평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단이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㉔ 선지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를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선지라고 생각했다. 이 칼럼에서 반복해서 말했듯이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느냐가 문제이다. 사형제도는 사회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공적 정의, 사회적 정의,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법의 성립 전부터 ‘정의’는 전제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이고 선형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¹⁵⁸⁾라는 말로부터도 알 수 있다.

위 본문에서 말하는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살인자=사형’이라는 동등성, 평등의 원리, 응보의 원리를 말한다. 심지어 칸트는 범죄자가 타인에게 범죄를 행하는 것은 곧 범죄자 자기 자신에게 범죄를 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범죄자는 현상계의 인간으로서 범죄를 범한 것이지만 그는 동시에 예지적인 인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지적 인격은 자율적(자기 규범적) 존재로서 자기가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므로 현상적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공적 정의’의 대행자로서 혹은 ‘보편적-공동 입법 이성’의 입장에서 ‘법정’이 심판(판결)으로써 범죄자에게 범죄의 대가를 동등하게 돌려주는 응보의 법을 시행하여 응보의 법을 대변해야 한다.¹⁵⁹⁾

위 원전의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다시금 ‘정언 명령’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문구이다. 위에서 말하는 ‘여타의 모든 것’은 ‘보복법[탈리오 법칙]’ 이외의 것으로서 공리주의자들이 형벌을 가할 때 사용하는 원리인 ‘공리의 원리’와 같은 것을 말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섞이는 다른 고려점’은 바로 ‘고통’, ‘쾌락’, ‘이익’, ‘공리’와 같은 경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들을 말한다. 즉 가언적인 명령인 ‘공리의 계산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형벌관은 결국 공리의 계산에 따라 형벌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순수하고 엄밀’하지 못하여 ‘부합성’을 갖지 못하는 잘못된 법칙인 것이다.

• EBS 수능완성 79p : 사형제도에 대한 칸트의 관점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와 어느 정도의 처벌을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점시저울에서와 같은 평형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다른 국민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만일 ... (중략)...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너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야 어찌 되었든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¹⁶⁰⁾ <칸트, “윤리형이상학”>

EBS 해설 응보주의적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칸트는 이러한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을 정당화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준 해악의 사실을 토대로 법적 처벌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는 그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셈이라고 보았다.

16.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형벌 제도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한 자들에게 그들이 유발한 해악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을 해야 한다. 살인을 저지른 극악한 범죄자는 죽어야만 한다.

(나)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나쁜 결과보다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가 더 클 경우 처벌은 필요하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하면 된다.

- ① 사형제도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 ③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④ 흉악범에게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다.
- ⑤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함을 모른다.

현자의 돌 평

칸트의 사형제 존치론의 입장에서功利주의의 사형제에 대한 가변적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답은 ㉔이다.

선지 분석

㉔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함을 모른다. (○)

⇒ 선지 ㉔에서 사형제도가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곧 사형제도가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이다. 2014년 기출로서 상당히 오래된 기출이다. 2014년에도 사형제도가 ‘응보’를 위해 수단화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존재했다.

2015학년도 수능 (위 2014년 3월 모의고사를 본 후 약 9개월 뒤에 있었던 같은 연도의 시험)에는 6번의 <보기> 선지로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가 출제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칸트는 수단 ×’라고 암기하여 틀렸다. 개념을 올바르게 학습하고 제시문과 선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8. 다음 가상 대담 속의 ㉔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자 : 선생님은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셨지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형사적 처벌의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상가 : 형사적 처벌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하지요.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은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가 : 사형제도는 _____ ㉔ _____

- 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② 공공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 ③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 ④ 범죄자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⑤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158)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中 법이론』 297p
 159) ‘현상계 인간, 예지계 인간’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어도, 계속 읽어보자. 뒷 부분에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형제 문항을 해석할 때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160) 이 문단은 미래엔 생활과 윤리 교과서 191p, 천재교육 교과서 161p에도 적혀있는 내용이다.

현자의 돌 평

답은 ⑤ : 쉬운 문항이다. 재미있는 것은 평가원은 2014학년도부터 사형제도가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존재한다. (○)’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즉 사형제도는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 응보)을 위한 수단’ (○)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수능에서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 선지가 칸트가 부정할 선지라고 생각한 많은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이 칼럼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칸트는 수단’ (×)라고 암기하며 공부했었을 것이다.

2015학년도 수능 6번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일반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p> <p>을 :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p> <p>병 :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p>
(나)	

<보 기>

- ㄱ. A :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 ㄴ. B :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 ㄷ. C :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 ㄹ. D : 사형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현자의 돌 평

2015학년도 수능에서 37%의 학생만이 정답을 맞춘 문항이다. 60% 이상의 학생들이 ㄴ. ‘B :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 선지가 칸트가 부정할 선지라고 생각했다. 좋은 문항이지만 이미 제시문과 선지를 이전 문항들에서 해설했으므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자.

선지 분석

ㄱ. A :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

루소만 동의하고, 칸트와 공리주의가 부정해야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이다.

루소 ○, 칸트 ○, 공리주의 △

⇒ 공리주의 :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 박탈 권한을 지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조건적으로만 허용된다.

ㄴ. B :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

루소는 상관없고, 칸트만 동의하고 공리주의가 부정해야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이다.

루소 △, 칸트 ○, 공리주의 ×

⇒ 루소는 응보론의 입장을 지닌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사회계약 위반에 대한’ 보복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공리주의는 사형제도를 범죄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리의 원칙에 따라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ㄷ. C :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

루소와 공리주의는 상관없고, 칸트가 긍정해야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이다.

루소 ○, 칸트 ○, 공리주의 ×

⇒ 루소는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살인범이 아닌 사회계약 당사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생명권의 보호는 곧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살인범은 루소에게 사회계약을 위반한 국가의 적으로서 말살당해야 할 존재이지 존엄하게 다루어야 할 존재는 아니다. 칸트는 ① 살인자를 살인죄에 대해 오직 자신의 목숨으로 짓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② 종신노역형¹⁶¹⁾을 하며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죄책감 등을 겪지 않도록 범죄자의 인격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리주의는 사형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공리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 본다. 인간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칸트의 입장에서 사형제는 살인자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겠지만, ‘살인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인가?’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이다. 칸트는 사형제가 정언 명령이라고 보았다. 모든 정언 명령은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인간성 정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형제도 모든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칸트에게 종신노역형은 도덕법칙(정언 명령)이 아닌, 가언명령이며 칸트가 인정할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종신 노역형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법이고, 보편화할 수 없는 법이다.

이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제시문을(칸트)의 뒷부분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을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ㄹ. D : 사형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

루소와 칸트는 상관없고, 공리주의가 긍정해야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이다.

루소 △, 칸트 ×, 공리주의 ○

161) 물론 종신 노역형이 공적 정의가 원하는 ‘동등성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맞다.

⇒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회 방위론적 입장을 지닌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하는 판단 이유 중 하나가 살인자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은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따지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익만으로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살인범을 살려주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살인범은 사회계약의 위반자로서 국가의 적이므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런데 ㄹ은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공익만이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따지는 유일한 기준인가?’로 읽힌다. 따라서 루소는 ㄹ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는 사형제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공리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곧 공익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답은 ㉟.

EBS 수능특강 129p 6번

6. (가)의 서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p>가 :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그러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없애려 한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의 원리에 의할 때, 만약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p> <p>을 : 형벌에 있어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살인을 한 자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것이 그를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끄적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p>
(나)	<pre> graph TD Start[형사 처벌에 관한 가,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예 --> G[가의 입장] A -. 아니요 .-> C{C} C -- 예 --> E[을의 입장] </pre>

- ① A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 ② A - 형사처분의 근본적 목적은 범죄의 억지¹⁶²⁾와 예방에 있는가?
- ③ B - 처벌은 필요악이므로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하는가?
- ④ C -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인가?
- ⑤ C - 사형은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가?

현자의 돌 평

제시문이 상당히 좋다. 특히 가은 공리주의로서, 공리주의의 정수를 표현하고 있다. 을과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 제시문이다. 그래도 다시 살펴보자.

제시문 분석

가은 공리주의이다.

제시문은 (1) 법의 목적은 공리의 증가라고 말한다. (2) 따라서 공리를 감소시키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3) 범죄는 공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다. 그러나 공리의 원리에 의하여 처벌의 이득(=더 큰 악인 범죄를 예방) > 처벌의 손해(=처벌로 인해 범죄자가 아픔, 처벌로 인해 사회가 경직됨.)일 경우 처벌은 필요악으로서 정당화된다.

을은 칸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형이 ‘인격(예지계의 존재의)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형이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수단인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에서 ‘칸트 :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 (○)’라는 선지와 일맥상통한다. 형벌로 인한 과도한 고통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존엄하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인간의 인격성은 곧 입법적 이성으로서 범죄자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 동등한 정도로 처벌할 것을 응보적 정의에 따라서 의욕한다(원한다). 그런데 만약 살인자가 응보적 정의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형벌에 처해지고,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곧 ‘입법적 이성’으로서의 ‘인간의 인격성,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만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형벌을 가한 것이다.

선지 분석

옳지 않은 선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① A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

A는 공리주의 ○, 칸트 × 이어야 옳은 선지이다.

⇒ 칸트는 응보주의적 입장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응보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즉 이는 옳지 않은 선지이다. (정답)

② A - 형사처분의 근본적 목적은 범죄의 억지¹⁶³⁾와 예방에 있는가? (○)

A는 공리주의 ○, 칸트 × 이어야 옳은 선지이다.

⇒ 공리주의의 경우, 처벌의 목적은 범죄 억제를 통한 사회의 이익 증대이다. 하지만 칸트의 입장에서 형사처분을 해야 하는 근본적 목적은 응보적 정의의 실현이다. 이는 곧 응분의 보복을 받을 만한 범죄 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응분의 보복을 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②에 대하여 공리주의는 긍정하고, 칸트는 부정하므로 이는 옳은 선지이다.

칸트는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런 점에서 예방론과는 달리 응보론은 과거 지향적이며 회고적이다.”¹⁶⁴⁾

한편, 공리주의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처벌한다. 여기서는 형벌이 세계 내 악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며, 이런 점에서 이 이론은 전망적, 미래 지향적 성격을 띤다.”¹⁶⁵⁾

현자의 돌 평

응보론은 일어난 사건(살인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 ‘회고적’이다. 한편, 공리주의는 처벌을 통해 미래에 얻을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망적’, ‘미래 지향적’이다. 칸트는 그러한 이익은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것이므로, 미래의 이익에 근거하여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없다고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칸트는 공리주의적 도덕 법칙은 ‘가언 명령¹⁶⁶⁾’ 이고 자신의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이라고 말한다.

162) EBS에는 억지라고 나와 있다. (억지 : 억눌러 못하게 함.)

163) EBS에는 억지라고 나와 있다. (억지 : 억눌러 못하게 함.)

164) 변종필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강원법학, 2015, 20p

165) 변종필, 위 논문 7p

166) 조건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부 명령 (☹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타인을 돕는다.)

③ B - 처벌은 필요악이므로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하는가? (○)

B는 칸트의 견해와 상관없이 공리주의 (○)이어야 맞는 선지이다.

⇒ 공리주의는 제시문에서 말했듯이 처벌을 필요악으로 본다. 또한 처벌은 범죄 피해로 인한 공리의 저하(= 악)를 막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된다. 이 말은 곧 필요'악'인 처벌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정도로만 알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처벌을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지도 옳은 것이다.

한편 칸트는 형벌을 정의가 원하는 응보로서 '정언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칸트는 정언 명령에 따르는 것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본다. 즉 칸트에게 형벌은 올바른 것이다.(=③ 선지에 반대함) 따라서 이 선지도 옳은 것이다.

④ C -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인가? (○)

C는 공리주의는 상관없고, 칸트가 ○이면 맞는 선지이다.

⇒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의 법칙(탈리오법칙)이라고 보았다. 한편 공리주의에게 형벌은 범죄와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가져올 공리의 하락보다 적은 양의 공리를 하락시킴으로써, 큰 악(=공리의 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즉 형벌은 범죄가 가져올 피해보다 덜 피해가 가도록 가해져야 한다.

⑤ C - 사형은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가? (○)

C는 공리주의는 상관없고, 칸트가 ○이면 맞는 선지이다. ⇒ 반복해서 말했듯이 칸트는 ○, 공리주의는 ×

EBS 수능완성 85p 9번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와 어느 정도의 처벌을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접시저울에서와 같은 평형의 원리이다. 만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만일 -(중략)-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너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야 어찌 되었든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 ① 범죄와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 ②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 ③ 공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 ④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 ⑤ 사회 안정을 위해 범죄자를 희생시킨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현자의 돌 평

제시문은 정말 원문에서 설명한 그대로이다. 그래도 이 제시문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기는 하다. 선지는 너무나 쉬우니 그냥 생략하겠다. 답은 ①이다.

제시문 분석

앞에서 설명한 부분은 빼고, 마지막 문장을 보자. “너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야 어찌 되었든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중요하다. 이 문장은 베카리아에 대한 칸트의 비판(칸트 칼럼의 마지막에서 다룸)을 의미한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을 맺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회계약 위반(불법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칸트의 입장에서 ‘범죄자’는 현상계의 존재로서 입법적 이성도 아니고, 입법적 이성을 대행하는 ‘법정’도 아니다. 단지 현실의 존재, 현상계의 존재인 범죄자 개인의 판단과 ‘응보적 정의의 실현’은 무관하다.

응보적 정의의 실현인 ‘응분의 보복’을 의욕(원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성적 존재, 예지계의 존재인 입법적 이성(실천이성) 뿐이다. 그러한 입법적 이성은 특정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동의 법칙을 의욕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입법된 도덕법칙, 형법을 집행하는 것은 입법적 이성, 공적 정의를 대행하는 ‘법원’이다. 오직 법원만이 응분의 권리에 따라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

한편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는 현상적 존재이고 경험적 존재인 ‘개인’일 뿐이다.¹⁶⁷⁾ 이 개인은 입법에 참여할 수도 사법에 참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너 자신)의 판단은 입법이나 판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는 2017학년도 12번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논리이다. 우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처벌의 근거는 범죄자 자신이 원하는 바(의욕하는 바)와 무관하다. 게다가 칸트는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을 의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응분의 보복을 의욕하는 주체는 신성한 입법자인 ‘입법적 이성, 예지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등성¹⁶⁸⁾은 없으며,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는 모든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시민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써 해체될 때조차도 (예컨대 섬에 거주하는 국민이 서로 헤어져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을 결의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누구든 자기의 행실에 값하는 것을 당하고, 살인죄가 이러한 처벌을 촉구하지 않았던 국민에게 씌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처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정의를 공적으로 침해하는 데 참여한 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보복법에 따른 재판관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만 가능한, 형벌의 이와 같은 (범죄와의) 동등성은, 그를 통해서만 범죄자들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사형선고가 내려진다.

(중략)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이고 선형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中 법이론』 295p, 297p〉 ⇒ 수능 출제 ○

현자의 돌 평

지금까지 본 원전, 기출문제, EBS와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살인자는 입법적 이성이 세운 정언 명령으로서의 ‘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응분의 보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죽인 피해자의 생명은 살인자 자신의 생명을 제외한 다른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응보는 오로지 ‘사형’만을 요구한다.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 인간성을 존중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살인자가 종신노역형에 처하게 된다면 그는 평생 고된 노동을 해야 하고,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형은 살인자가 느낄 수 있는 양심의 가책과 같은 내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예지체적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공적 정의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응보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인격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응보적 처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과거의 사실만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의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만약 사회가 해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회가 미래에 얻을 이익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칸트는 범죄자(특히 살인범)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보복법(탈리오법칙¹⁶⁹⁾)은 정언 명령으로서 사회의 존속 유무와 같은 가변적인 경험 세계와 무관하게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응분의 보복, 살인자에 대한 처형은 사법권의 이념인 ‘정의’¹⁷⁰⁾가 보편적인 공동-입법적 이성이 선형적으로

167) 칸트는 인간이 예지체 인격과 현상체 인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본다. 칸트의 입장에서 예지체 인격을 말할 때는 한 사람의 초월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에 주목한 것이고, 현상체 인격을 말할 때는 그의 경험적인 부분에 주목해서 말하는 것이다.

168) ‘살인을 통해서 피해자를 죽인 살인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아무리 끔찍한 형벌을 가한다고 해도, 그것은 피해자의 생명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성, 동종성(같은 종류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칸트는 응보론의 입장에서 무고한 인간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69) Lex Talionis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 법칙을 의미한다.

170) 칸트에게 정의는 법의 근본 전제이다.

그리고 초시간적으로 입법한 법칙(도덕법칙, 법률)에 따라 원하는 것이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정의는 살인자가 처형되기를 원한다. 이는 정언 명령-도덕법칙에 따른 것이다.”

기출 및 EBS를 통해 확인하기 ①

2014년 7월 고3 학력평가 10번

10. 서양 사상가 갑, 을이 사형제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견해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갑 :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정의를 충족시킬 다른 방법은 없다. 시민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처형되어야만 한다.
 을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처벌의 형량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처벌은 각각 개개의 위법 행위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보 기>

ㄱ.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ㄴ.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ㄷ. 범죄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ㄹ.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개선에 있다.

- | | | |
|-------------|-------------|-------------|
| 갑 을 | 갑 을 | 갑 을 |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 ④ ㄷ ㄹ | ⑤ ㄹ ㄴ | |

현자의 돌 평

아주 쉬운 문항이다.

제시문 분석

갑은 칸트인데 위에서 해설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각한다. 을은 공리주의인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도 있고, 이 칸트 설명이 다 끝나면,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공리주의 vs 칸트 사형제 문항을 설명할 때 공리주의를 꼼꼼히 설명할 것이다.

선지 분석

갑은 칸트이고, 사형제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시문의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정의를 충족시킬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만이 동등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 갑 : ㄱ
 을은 공리주의로, 사형제도든 형벌이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고자 한다. 이 문항은 2014년 7월 교육청에서 출제된 문항이다. 실제로 교육청이 발표한 답은 ‘공리주의 : ㄷ’라고 말하고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수 예방주의의 입장도 공리주의의 입장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ㄹ’도 답이 된다.
 또한 공리주의자 벤담 또한 2016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제시문에서 ‘형벌은 범죄자에게는 교정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는 처벌의 목적 중 하나로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개선을 들 수 있다.¹⁷¹⁾

답은 을 : ㄷ, ㄹ이다.

•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문항 제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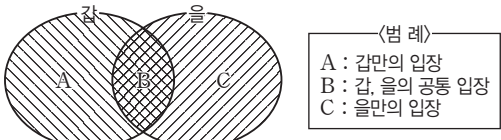
갑 :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이 제시문에서는 형벌의 주목적 중 하나가 범죄자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선지로서 “ㄴ. B :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가 벤담의 입장에서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다. 이를 볼 때 개정 교육과정에서 벤담은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도 형벌의 목적으로 본다고 파악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출문제에는 2014년 7월 교육청 10번의 ㄹ을 벤담이 동의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지 않다. ‘ㄹ 선지는 사형제 반대 논거이다.’ 라고만 해설한다. 이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해설을 새로 쓰지 않고, 그냥 지난 교육과정에서 썼던 해설을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다른 예로는 ‘용광로 모델’을 들 수 있다. 용광로 모델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동화주의의 사례¹⁷²⁾이고,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다원주의의 사례¹⁷³⁾였다. 그런데 마더텅 해설지(검정색) 221p에 보면 용광로 이론이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의 사례로 설명되어 있다.¹⁷⁴⁾ 다른 기출 문제집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만 명이 응시하는 ‘생활과 윤리’ 과목이고, 그 학생들이 기출 문제집을 구입해서 공부한다. 따라서 유명 기출 문제집들 출판사는 과거에 쓴 해설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관행을 버리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서 올바른 해설을 쓰고, 개정 전 기출문항을 올바르게 해설해야 한다. 이는 교육 출판사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일 것이다.

2016학년도 수능 19번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 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p> <p>을 :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죄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p>
(나)	

<보 기>

- ㄱ. A :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 ㄴ. B :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 ㄷ. C :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ㄹ. C : 사형은 범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1) 물론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경우 이미 죽은 범죄자를 교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될 처벌이 무엇인지 경고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그 결과 공리가 증가한다면, 공리주의자는 그에 동의할 것이다. (일반 예방주의적 입장)

172) 2017학년도 EBS 수능특강 171p 등에 문화 동화주의의 사례로 나와 있다.

173) 용광로 모델은 더 이상 문화 다원주의의 사례가 아니다. 주의할 것.

174) 이미 마더텅 출판사에 제보를 한 상태이며, 내년부터는 수정된 책으로 나올 것이다.

현자의 돌 평

작년 수능 사형제 문항이다.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퀄리티는 아주 좋은 제시문과 선지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 위 설명을 꼼꼼히 잘 읽은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 2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아래 해설은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에서 인용)

★ 벤다이어그램과 순서도를 풀이하는 방법이 다르다.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 1에 잘 설명되어 있다.

블로그에 칼럼(<http://blog.naver.com/cucuzz/220500534948>)도 있다.

제시문 분석: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갑은 칸트이다. 칸트가 사형제 존치에 동의하는 이유도 인간성 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EBS 수능특강 20p)

제시문에서 칸트는 ‘(1) 사형제는 정언 명령이어서, (2) 사형제는 정의가 선형적인 법칙들에 따라 원하는 것이어서 존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갑)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학생들은 ‘칸트는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형제를 옹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인간성 정식과 사형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시문은 사형제가 정언 명령 즉 인간성 정식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칸트는 사형제를 통해 인간 존엄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을 구현한다는 것은 인간을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피해자의 희생된 생명, 인간성은 존엄한 것이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오로지 희생된 생명은 같은 생명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비례적 응보주의). 이는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구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인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살인자 또한 본질적으로는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 자율적 존재이다. 그의 도덕적 이성은 모든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자신의 죄는 자신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음을 알 것이다¹⁷⁵⁾(1 : 1 산술 비례적 응보주의).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 도덕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의 인간성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주는 것, 즉 인간 존엄을 구현하는 것이다.

• 비상예뉘 181p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

(2) 칸트에 따르면 ‘사형제’는 사심 없이 ‘공적으로’ 집행될 때 정의로운 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형제도를 통한 정의 실현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이 원하는 도덕 법칙과도 부합한다.¹⁷⁶⁾

(을)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을은 공리주의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1)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정하고 무력화하고, 대중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을)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최대 행복의 원리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칙을 말한다. 공리주의자는 공리의 원칙에 따라 사형제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즉 공리주의는 사형제에 대하여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2) 제시문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범죄자를 감옥에 가둬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무력화, 교정하고, 대중들에게 본보기를 보인다면 형벌이 가져다줄 피해보다 더 큰 공리의 증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오직 그런 경우에만 형벌은 공리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의 기출 제시문을 소개한다.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

정답 해설

ㄱ. A :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

A는 칸트만 동의할 진술이 들어갈 자리이다. 칸트에 따르면 살인범은 도덕 법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¹⁷⁷⁾ 살인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것은 살인범의 인격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ㄱ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는 사형의 논거를 인격 존중이 아닌 공리의 원칙에서 찾았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는 ㄱ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 : A’는 옳다.

ㄷ. C :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C는 공리주의만 동의할 진술이 들어갈 자리이다. 공리주의자는 형벌을 공리의 원칙만을 따져서 부과할 것이다. 공리의 원칙에 따라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을 ‘일반 예방주의’라고 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특수 예방주의’라고 한다.¹⁷⁸⁾ 따라서 공리주의자 옳은 ㄷ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일 뿐이다. 만약 사회적 이익(공리)을 위해 형벌을 가한다면 그것은 인간(범죄자)을 사회적 이익만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한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ㄷ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ㄷ : C.’는 옳다.

오답 해설

ㄴ. B :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

B는 칸트와 공리주의 모두 동의할 진술이 들어갈 자리이다. 먼저, 칸트는 형벌은 응보로서만 가해져야(=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한다고 본다. 따라서 칸트는 ㄴ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는 형벌을 보복이 아닌 ‘최대 행복의 원칙’만을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ㄴ : B는 틀린 선지이다. 한편 ㄴ은 B가 아닌 A에 들어가야 적절한 선지가 될 것이다.

ㄹ. C : 사형은 범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

이 선지는 언어 논리적으로만 보아도 틀린 선지이다. ‘그 자체로 선’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175) 주의 : 살인자에게 사형을 가해야 하는 이유가 살인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칸트는 살인자가 살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가해야 한다고 보았지, 살인자의 깨달음이나 반성을 고려하여 사형을 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76) 안진, 『살인 범죄자에 대한 인간 존엄의 실현 방법으로서의 사형 - 사형에 대한 윤리학적 성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90~398p에서 전개된 내용을 수능에 알맞게 변형

177) 모든 인간은 현상학적 인격, 예지적 인격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살인범에게도 예지적 인격이 있다. 따라서 도덕 법칙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살인범이 살인을 한 것은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여 만든 행위 준칙(Maxim)이 도덕 법칙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편 살인범이 형법, 형벌을 의욕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칸트는 살인범의 현상학적 인격에 주목해서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지적 인격은 초월적, 보편적으로 입법을 하는 공동의 입법 주체라는 점에서 ‘살인자 개인’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즉 살인범은 도덕 법칙을 지킬 자율성을 지닌 존재이나, 도덕 법칙을 입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178) 공리주의적 입장은 살인자에 대한 사형에 찬성하는 일반 예방주의와 사형에 찬성하는 특수 예방주의적 입장이 있다. 특수 예방주의는 범죄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교화라는 형벌의 목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반대한다.

‘어떤 학생은 ‘특수 예방주의가 왜 사형제 반대로 딱 정해진 것인지, 공리의 증감에 따라 사형을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할 수 있다. 간단히 생각해서, 공리주의적 판단 중에서, 사형제가 공리를 증가시키므로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을 일반 예방주의로,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공리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을 특수예방주의로 명칭을 정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교육과정 외) 하지만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예방이론에서도 소극적 일반예방론(생윤 교육과정 인)과 적극적 일반예방론이 있고 (교육과정 밖) 적극적 일반예방론적 입장에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현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제 찬성= ‘일반 예방주의’, 사형제 반대= ‘특수 예방주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말이다. 그런데 ρ 은 ‘범죄 예방 효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사형이 그 자체로 선이라고 말한다. 이는 모순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무조건 틀렸다.

개념적으로도 살펴보자. C : C는 공리주의만 동의할 진술이 들어갈 자리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에게 형벌은 악이다. 왜냐하면 형벌이란 고통을 가하는 것인데 공리주의는 고통을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리주의는 형벌이 더 큰 악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필요악으로 본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ρ 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칸트는 사형제가 정언 명령에 부합하기에 ‘그 자체로 선’이라고 본다. 하지만 선지 ρ 은 ‘범죄 예방효과’라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그 자체로 선으로 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범죄 예방효과’는 가변적인(가언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그러한 가언적(가변적)인 조건은 칸트가 윤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는 사형제가 ‘살인 행위’(이미 벌어진 사건이므로 불변)에 대한 정언명령적 처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도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ρ 선지는 A, B, C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이 사형제 Master 칼럼이 기존의 강의와 개념서들과 다른 방식의 설명 방향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난도가 높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베카리아가 루소가 칸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그들의 책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서와 논문 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논점들을 다뤘던 것은 어째서일까?

여기까지 읽어온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바로 이 지문과 다음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문항이 칸트의 ‘현상계/예지계’라는 일견 복잡해보일 수 있는 논리를 수능 생활과 윤리에 도입한 이유이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남은 몇 페이지를 충분히 소화해내면 올해 수능에서 칸트가 출제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이 길고 긴 사형제 Master 칼럼의 주제는 ‘베카리아의 사회계약론적 사형제 폐지론’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루소와 칸트의 ‘사회 계약론적 사형제 존치론’ 논쟁이다. 그것이 근대 사형제 논쟁에 주요한 논점이고, 결국 교수님들이 수능 생활과 윤리 사형제 주제에서 A 사상이 vs B 사상을 출제하는 학문적 원리이다.

그러면 다시 베카리아의 사회계약론으로 잠깐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베카리아는 사형제가 정당하지 않다는 그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펼쳐나간다. 우선 사회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존재로서 ‘자연 상태’에서 겪을 위험을 피하고자 ‘사회계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싶어 한다. 베카리아에서 사회 계약은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통해서 성립된 사회, 국가는 사람들의 생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 오로지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에 양도한 약간의 자유¹⁷⁹⁾에 대해서만 간섭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사회계약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최고의 자유이다. 따라서 최대한의 자유인 생명권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는 부적법(사회계약에 따른 법과 어긋남)하며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제시문

- (1) 이에 반해 마르케스 베카리아¹⁸⁰⁾는 과도한 인도주의에 의한 감상적 동정심에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였다.
- (2) 사형은 근원적 시민 계약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 중 누구나 그가 카령(국민 중) 타인을 살해한다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에 동의해야만 할 터인데,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¹⁸¹⁾. 그러나 이러한 논변은 모두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 (3) 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무릇 누군가에게 그가 의욕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벌은 아니며, 형벌받기를 의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 (4)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살해한다면, 나는 형벌받기를 의욕한다.’고 말함은 ‘나는 여타의 모든 이들과 함께 국민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형법률이 될 법칙(법률)에 복종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 (5) 형법률을 구술(명)하는 공동입법자로서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 무릇 그러한 자로서, 곧 범죄자로서 내가 입법에서 표를 가질 수는 없다. (입법자는 신성하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로서의 나에 대해 하나의 형법률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순수한 법적으로 – 입법(법칙수립)하는 이성(예지체 인간)이며, 이 이성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로서의, 따라서 하나의 다른 인격(현상체 인간)으로서의 나를 시민연합체 중의 여타의 모든 이와 함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국민(즉, 국민 중의 각 개인)이 아니라, 법정(즉, 공적 정의)이,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구술(명)하는 것이며, 사회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 (6) 무릇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한다면, 이 자에게 형벌 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겠고,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
- (7) 이러한 궤변의 착오의 주요점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 자신의 판단을 – 이것은 사람들이 그 이성을 필연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 일인데 –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앗는 의지의 결정으로 보고, 동일한 인격 안에 법의 수행과 법의 판정이 합일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 데에 있다.¹⁸²⁾

현자의 돌 평

(1)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하였고, 인간이 고통을 싫어하는 특성을 지녔으며, 사형은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도 사형을 반대하였다. 특히 베카리아는 중세적 형벌로서 가해지던 고문을 동반한 사형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칸트는 이러한 베카리아의 사형제 폐지론이 과도한 인도주의와 감상적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¹⁸³⁾ 칸트에게 동정심은 도덕적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도덕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분석서를 써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정언 명령을 의무로서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도덕법칙(정언 명령)을 의무로서 행하려 할 때 ‘학생들에 대한 배려심, 애정, 동정심’이 도움이 된다면(즉 정언 명령에 1차적 근거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의 감정은) 그러한 감정들은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언 명령, 도덕법칙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만 근거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이다.

앞에서 보았듯, 칸트에 따르면, 공적 정의가 요구하는 원리는 보복법(탈리오법칙¹⁸⁴⁾), 동등성의 원리이다. 무고한 인간을 죽인 살인자는 ‘정언 명령’에 따라 죽어야만 한다. 만약 그러한 정언 명령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가혹행위, 양심의 가책 등으로 인한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안의 인간성을 불쌍하게 여기고 구하고자 하는 감정이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즉, 감정만으로는 안 되지만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따른다는 전제하에 감정은 도덕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칸트는 베카리아가 감정적 이유만을 가지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본다. 칸트는 도덕법칙에 따라 사형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기에 그런 베카리아의 감정은 ‘과도한’ 것이며, ‘감상주의적’인 것이다.

(2) 베카리아는 사형이 근원적 시민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 중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에 동의해야 할 텐데,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사회계약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베카리아의

179) 베카리아의 견해: 인간이 가진 전체 자유의 극히 일부분을 사회 계약을 통해 양도함.

cf) 생명권은 인간의 최대의 자유임. 따라서 일부분의 자유를 양도받은 국가/사회는 생명권 침해 불가능!

180) 베카리아의 이름은 Cesare Bonesana Marchese di Beccaria이다. 풀 네임은 체사레 보네사나 마르케스 디 베카리아. 밀라노 출신 귀족이어서 이름이 길다.

181) 취소선을 그은 것은 베카리아의 입장으로, 『윤리형이상학』에서 베카리아를 비판하고자 칸트가 베카리아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칸트는 취소선의 베카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라고 말한다.

182)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中 법이론』, 297~298p., (1)-(7) 구분은 설명의 용이성을 위하여 현자의 돌 본인이 표시한 것.

183) 물론 칸트도 고문에는 반대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칸트가 도덕법칙은 동정심에서 비롯될 수 없다고 본 점이다.

184) Lex Talionis: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 법칙을 의미한다.

논리는 칸트가 보기에 ‘형법’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의 궤변이고 왜곡이다. 위의 다른 원전 해설에서도 말했듯이 칸트에게 있어 법은 도덕법칙의 특수한 형태로서, ‘정언 명령’이다. ‘정언 명령(도덕법칙)’은 현실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현상체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중 선형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실천이성, ‘입법적 이성(예지체 인간)’이 만든 것이다. 칸트는 현상체 인간과 예지체 인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형법의 성립과 형법의 수행을 논한다. ‘입법적 이성’이 형법을 의욕한 것¹⁸⁵⁾은 맞지만, 그것이 범죄자 ‘자신(현상체 인간)’을 직접 형법을 의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칸트는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논변을 전개한다.

(3) 칸트는 범죄자가 형벌을 받을 때는, 그 범죄자(현상체 인간)가 형벌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범죄, 도덕법칙의 위반)를 저질렀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벌을 의욕할 수도 없지만, 만약 범죄자가 형벌을 받기를 원한다면(의욕한다면) 형벌을 가하는 것이 그 범죄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일 텐데 그것은 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범죄자는 형벌을 의욕할(원할) 수 없다.

(4) 만약 범죄자가 ‘내가 누군가를 살해한다면 나는 형벌받기를 원한다(의욕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자가 형벌의 집행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한 말은 단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편적인 정언 명령인 형법에 복종하겠다.’라고 말한 것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형벌로 처벌받는 현상체 인격¹⁸⁶⁾은 형법의 수립과 형벌의 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5) 칸트는 말한다. ‘형법률을 명하는 공동입법자로서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 전자는 신성한 존재, 순수한 법적-입법적 이성을 지닌 예지체 인간으로서 도덕 법칙, 형법률을 수립할 수 있는 존재인 반면, 후자의 존재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경험적 존재로서 현상체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국민들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입법한다기보다,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입법의 주체로서 형법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범죄자를 벌한다는 것은 ‘현상체 인간인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개인의 동의)과는 무관한 것이다.¹⁸⁷⁾ 쉽게 생각해서 칸트도 자기 자신의 생명권 양도가 사회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것은 현상체 인간이 입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지체 인간으로서는 실천 이성, 공적 정의에 따라서, 정언 명령이자 도덕 법칙인 형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인정한다.

(6)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형벌을 가하는 자’인 법정(공적 정의, 사법적 정의)의 사형판결은 범인의 어떠한 개인적 약속, 동의, 의지와 무관한 것임을 확실하게 말한다. 만약 범인의 의사표현이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놓여있어야 한다면 결국 그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이율배반, 모순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7) 왜 베카리아가 이런 모순을 범한 것일까? 칸트가 보았을 때 베카리아는 경험적 존재인 범죄자로서의 ‘현상체 인간’과 선형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인 ‘예지체 인간’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현상체 인간의 의견과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법을 수립할 수 있는 입법적 이성 ‘예지체 인간’에 근거한 것이며, 그 법의 대변자인 법정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즉 칸트는 “처벌을 입법하는 자신(예지적 인격체)과 처벌에 구속되는 자신(현상적 인격체)을 구별하여 베카리아를 비판하고 있는 것”¹⁸⁸⁾이다. “결국 사회 계약 안에 사형에 관한 합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사형이라는 형벌권을 부정하려는 베카리아의 오류는 예지적 존재의 이성 - 실제로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입법 권한과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특정 집단들 - 만이 행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을 현상적 존재의 주관적인 “의지의 결심¹⁸⁹⁾”과 혼동한 데에 존립한다.”¹⁹⁰⁾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1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큼니다.

을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¹⁹¹⁾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현자의 돌 평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오답률 1위 문항으로 오답률이 60%였다. 특히 선지 ④를 답으로 선택한 학생이 42%나 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⑤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학생이 60%나 되었던 것이다. 사실 40여 페이지 넘게 사형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것도 바로 이 문항 때문이다. 이 문항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형제에 대한 기존의 어설픈 개념 학습을 새롭게 바꿔야만 했다. 이 문항 해설은 더욱 꼼꼼하게, 많은 학생들이 가졌던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진행하겠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형제 칼럼을 꼼꼼히 따라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설을 하겠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사형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모두 빠르고 정확하게 맞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시문 분석 :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갑은 베카리아이다. (1) 제시문은 형벌로 인한 결과의 선함이 형벌 자체의 악함보다 클 경우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2) 이런 관점에서 사형과 같은 극형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3) 또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더 좋다고 본다.

(갑)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제시문에서 말하는 형벌로 인한 결과의 선함은 곧 형벌로 인한 결과의 이익(공리)을 말한다. 형벌 자체의 악은 형벌이 가지고 있는 특정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속성으로 손해(공리의 감소)를 말한다. 이는 베카리아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베카리아는 벤담이 공리주의를 정립

185) 형벌을 만들었다(수립했다)는 의미이다.
 186) 예지체 인격은 항상 실천이성에 따르는 인간의 선형적이고 초월적인 인격이며 반면 현상체 인격은 인간의 경험적인 면을 말함.
 187)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는 예지적 인격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현상체 인격이다. 현상체 인격이 사회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상체 인격이 스스로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을 사회 계약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이해하면 쉽다.
 188) 김석수, 「칸트에 있어서 죄와 벌의 관계 - 흄스, 벤담, 헤겔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철학회, 1998 158p
 189) 베카리아가 말하는 '범죄자가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을 말한다.
 190) 김수배, 「칸트 법철학에서 '등가성의 원리'와 형벌의 균형 사이의 긴장 관계 - 사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칸트학회 『칸트 연구』 제19집, 2007
 191) 여기서 말하는 '의욕'이란 원함(Will)의 의미이다. 하지만 단순한 Want와는 다르다. 오히려 '보편적 법칙으로 원함'이라는 의미로 합리적이며 강한 의지의 Will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응보'는 공적 정의가 의욕할(원함) 수 있는 것이지만, 범죄자가 의욕할(원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시초가 된 형법학자이다. (2) 이런 관점에서 사형과 같은 극형의 남용은 그로 인한 손해가 이익보다 크다. 인간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3) 또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같은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을)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1)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다는 것은 범죄자에게 형벌은 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2) 사형은 살인이라는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이다. (3) 또한 사형은 사형수의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형벌이다.

(을)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제시문에서 말하는 범죄자의 ‘처벌 받아야 할 행위’는 위법 행위를 말한다. 칸트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리주의’는 사회의 이익(공리)의 증가를 위해서라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억울한 용의자를 처벌해도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칸트는 그러한 공리주의의 경향을 비판한다. 오직 범죄한 자만 처벌해야 한다. (2) 살인자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 생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따라서 살인자 생명으로만 피해자의 생명을 갚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은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는 사형을 통해서 살인자가 범한 범죄와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3) 또한 그러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양심을 지녔기에,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낄 것이며 그 죄책감은 살인자의 인간성을 해칠 것이다. 그런데 살인자를 사형시키면 살인자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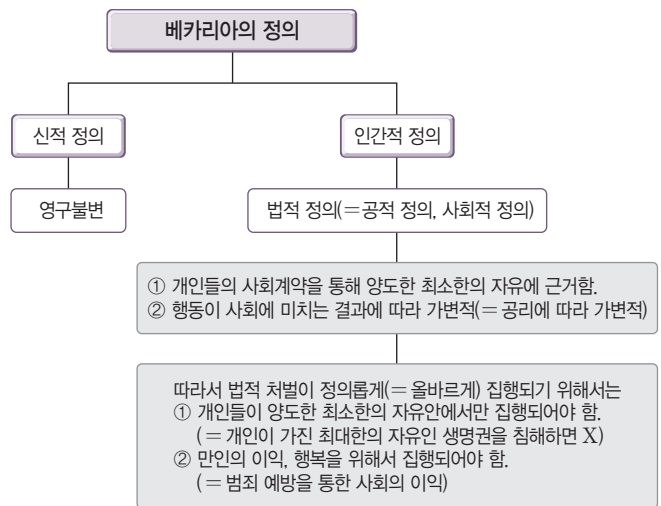
정답 해설 ¹⁹²⁾

㉔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

먼저, 베카리아는 사형제를 부정하였다. 살인 피해자의 생명을 살인자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동등성의 원리 또한 베카리아의 관점이 아니다. 베카리아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자 한다. 그런데,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보다 살인자를 종신노역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인들에 대한 경고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종신 노역형에 처할 것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베카리아의 ‘공적 정의’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정의를 신적 정의와 인간적 정의로 나누었다. 신적 정의는 영구불변하지만, 인간적 정의는 인간의 행위가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베카리아는 인간적 정의의 기초는 각 개인들이 맺은 사회계약이라고 보았다.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맺은 이유는 사회가 개인들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행복)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유용성, 효용성, Utility)의 개념이 사회와 정의의 기초인 것이다. 따라서 베카리아에게 형벌적 정의란,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베카리아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형벌이란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집행되는 형벌을 말한다. ¹⁹⁴⁾



베카리아의 입장을 이어받은 공리주의¹⁹⁴⁾ 또한 범죄와 형벌은 서로 1 : 1로 동등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리주의 또한 이미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사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처벌한다. 또한 ‘공적 정의’에 있어서 벤담은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벤담은 정의(正義)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그는 사람들이 때때로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들이 만든 환영을 내세우고 이를 정의라고 부르는데, 정의의 명령은 자신의 명령을 수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벤담에게 있어서 정의는 일정한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효용의 명령에 대한 수사학적 치장에 불과할 뿐이었다.”¹⁹⁵⁾

한편, 칸트(을)가 말하는 형법, 사형제는 시원적 계약¹⁹⁶⁾을 통해 만들어진 정언 명령,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시대,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해서 이성적-자율적 존재인 예지체적 인간이 선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원하는 것이지, 경험적으로 사회가 이익을 얻는 것과 무관하다.

선지의 ‘공적 정의’는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가 말하는 ‘공적 정의’란 시대나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입법적 이성이 요청하는 선형적인 것이다. 공적 정의란 “인간들이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의 상태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인간들 상호간의 법적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인 원리를 말한다.”¹⁹⁷⁾ 법은 자유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것(=불법적 행위)을 제한하기 위한 ‘강제력, 강제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한 법의 강제력은 ‘정의’를 원리로 삼아서 행사되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정의(Definition)¹⁹⁸⁾를 기억하고, 2016학년도 수능 19번 제시문을 분석해보자.

“정언 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이 제시문에서 말하는 ‘정의’는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법률, 사형제를 의욕하는 것이다. 결국 공적 정의는 사형제와 같은 법률을 만들어서 인간들 상호간의 법적 상태를 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 사이의 자유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에 따라 의욕한다’고 말할 때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 중 하나가 바로 ‘보복법(=응보, 탈리오법칙¹⁹⁹⁾)’이다.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EBS 수능특강 124p에는 정확하게 공적인 정의가 동등성의 원리에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192) 어렵다면, 사형제 칼럼 전체를 수능 전까지 2~3번 정도 꼼꼼하게 읽어보길 바란다. 분명 수능에서 사형제 칼럼 문항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3)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p & 15p 요약

194) 베카리아와 벤담의 공리주의는 구분을 해야 한다. 베카리아와 공리주의는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생명은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를 반대하는 반면, 벤담의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의 이익이 증가된다면 사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리주의의 ‘정의’에 대한 입장은 그냥 참고용으로 넣은 것이다)

195)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세혁 교수(서울 법대, 법학박사, 사시 제28회), 『법철학사』, 제 2판, 새창출판사, 2012년, 193p

196) 칸트는 자신의 사회 계약을 시원적 계약이라고 칭했다. 칸트에게 이는 경험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선형적으로 요청되는 계약임을 의미한다. 한편 롤스도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자연 상태’ 대신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칸트적 사회계약론을 전개했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기존의 철학적 개념을 자기 언어화하여 재정의하곤 한다.

197) 김수배, 위 논문, 57p

199) Lex Talionis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 법칙을 의미한다.

• ⑤번 선지 관련 QnA

Q1. 칸트에게 목적적 존재는 ‘인간’ 뿐이며, 사형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지 않나요?

A1. 칸트에게 인간, 동물, 식물과 같은 ‘존재’ 중에서 목적적인 존재는 인간뿐인 게 맞다. 하지만, 사형제는 ‘존재’가 아니다. ‘목적적인 존재는 인간뿐이다.’라는 말과 ‘사형제’는 서로 범주가 다르다. 사형제(법률)는 도덕법칙의 특수한 사례이다. 칸트에게 도덕법칙은 정언 명령으로 어떠한 가언적 조건이 없이 그 자체로 자기목적적인 것이다.²⁰⁰⁾

Q2. 사형제도는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지 않나요?

예) 질문자의 논리 : “사형제도는 정언 명령으로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사형제는 생명을 해친 것에 대한 비례적 보복의 수단일 수는 있다. 하지만 ‘공적 정의’와 같은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²⁰¹⁾

A2. 현자의 둘 생활과 윤리 2016학년도 수능 분석서 Part2 34~46p에서도 상세하게 분석했듯이 칸트는 사형제를 정언 명령으로 보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형제를 무조건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가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의미는 형벌로 인한 사회의 이익과 같은 경험적 효과와 사형제의 윤리적 정당성이 무관하다는 것이다.²⁰²⁾

즉 칸트는 사형제가 선지 ①에서 말하는 ‘유용성의 원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칸트는 형벌은 ‘이미 벌어진 행위(범죄)’만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형벌이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공적 정의는 다르다. 위 선지 ⑤ 해설에서도 말했듯이 오히려 법은 공적 정의가 보복법(응보)과 같은 선형적인 원리에 따라서 의욕하는 것이다.²⁰³⁾ 즉, 법에는 공적 정의가 원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²⁰⁴⁾ 따라서 사형제가 공적 정의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사형제가 정언 명령이고 그 자체로 목적적이라는 칸트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는다.

칸트에게 사형제는 도덕, 윤리, 정의, 공법의 요청, 공적 정의, 정언 명령, 도덕법칙, 인간성 실현, 인간 존엄성 실현, 사법 정의의 실현, 사회 정의의 실현 등을 위한 수단이다.²⁰⁵⁾

Q3. 공적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향상된다고 보면 안 되나요?

A3. ⑤선지에서 설명했듯, 칸트의 공적 정의란 이익과 무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북한의 테러리스트가 서울시에 핵폭탄을 설치했다고 하자. 폭파까지 1시간이 남은 상황이고, 만약 이 폭탄이 터질 경우 서울 시민 대다수가 죽을 것이다. 테러리스트를 잡았지만, 그 테러리스트는 단순한 설득으로는 폭탄 해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폭탄을 해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테러리스트를 고문하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비록 테러,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인간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테러리스트를 고문하는 것은 정의가 의욕하는 바가 아니다. 공적 정의에 따른 선택으로 인해서 서울 시에 핵 폭탄이 터졌다. 결과적으로 공적 정의로 인해서 사회 이익이 감소했다.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칸트의 공적 정의 개념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손해는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다.

한편, 공적 정의를 통해 형벌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이익에 대해서 칸트가 윤리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불이익(피해)도 윤리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

갑(베카리아)은 사형이 인간 존중 이념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유용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다. 제시문은 ‘사형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 한다.’라고 말하며 사형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을(칸트)에게 사형제는 인간 존중의 이념에 부합하며, 오히려 유용성의 원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

갑(베카리아)은 범죄의 예방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을(칸트)은 응분의 보복(응보)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았다. 형벌은 응분의

보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 2015학년도 수능 : L.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응분)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

베카리아는 사형제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칸트는 사형제의 사회적 이익(효과)과 무관하게, 형벌은 정의가 응분의 원리에 따라서 의욕하는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²⁰⁶⁾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

베카리아는 범죄자의 의지가 원하기²⁰⁷⁾ 때문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형법이 정한 형벌을 범죄자에게 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런 형벌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경고를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사회적 이익 증가)을 위해서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선지 ④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라는 선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베카리아가 반대한 것은 ‘사형’이지, ‘확실한 처벌’이 아니다. 베카리아도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해당 문항은 응시생의 42%가 ‘칸트가 동의할 선지’라고 생각했던 선지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언어 논리적 해결

A와 A의 B는 다르다. 2015학년도 국어B 신채호 지문에서 ‘비아’와 비아속의 ‘아’가 다르듯이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것과 응분의 보복(=처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한 것은 다르다.

응분의 보복은 처벌을 의미하고, 응분의 보복을 받을 행위는 범죄를 의미한다.

제시문은 ‘처벌받아야 할 행위’(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지 선지 ④처럼 ‘응분의 보복’(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선지 ④는 제시문과 다른 이야기이므로 틀린 것이다.

이런 해설의 한계점

제시문의 말과 선지가 서로 다를지라도 칸트가 둘 다 긍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2015학년도 수능을 보자. 제시문에서는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말은 곧, 사형제가 정언 명령이고 “사형제는 사회의 이익 등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 가해져야 한다.”라는 말과 같다. 그런데 선지로는 L.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 응분)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가 출제되었다. 실제로 이 문항은 37%의 학생들만 맞췄고, 63%의 학생이 틀린 선지라고 생각해서 틀렸던 문항이다. 독해형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사형제와 같이 개념이 중요한 킬러 문제에서 단순하게, 제시문과 선지의 표현이 다르다고 해도 선지가 반드시 틀렸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언어 논리적으로만 해설해주는 것은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는 일회용 해설이다.

오히려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 들어가서 왜 평가원 교수님들이 이런 선지를 출제하셨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0) 김세빈,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3p에도 유사한 내용이 쓰여 있다.

201) 이것은 틀린 논리이다. A2에서 확인해보자.

202) 형벌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입장은 형벌이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는 가변적인 모습을 보인다. 칸트는 형벌이 정언 명령으로서 무조건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형벌은 사회적 이익과 같은 가변적인 목적에 근거를 두어서 안 된다고 보았다. 정언 명령인 형법률은 어떠한 사회적 이익 등의 가변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적 성격을 지닌다.

203) 보통 의지를 지닌 주체는 인간인 것이 상식이나, 칸트는 정의가 의욕한다고 썼다. 이를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 예컨대, 이충진 교수님은 이를 공적 정의의 대리인인 법관이나 재판관으로 번역하기도 하신다는 점을 참고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6학년도 수능 제시문에서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정의가 의욕하는 바’라고 말한다. 따라서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앞으로 익숙해져보자. ‘실천 이성의 명령’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204) 칸트는 『실천이성비판』 V38에서 “모든 형벌 자체에는 필경 첫째로 정의가 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05) 외울 필요 없다.

206) 여기서 말하는 ‘의욕’이란 원함(Will)의 의미이다. 하지만 단순한 Want와는 다르다. 오히려 ‘보편적 법칙으로 원함’이라는 의미로 합리적이며 강한 의지의 Will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응분’은 공적 정의가 의욕할(원함) 수 있는 것이지, 범죄자가 의욕할(원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7) 따라서 베카리아도 선지 ④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는 선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 개념적 해결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칸트는 사형이 사적 복수가 아닌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²⁰⁸⁾(선지 ⑤ 해설 참고) 이때, 공적 정의가 형벌의 원리로서 의존하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동등성의 원리란 범죄와 처벌이 서로 1 : 1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원리인데, 이는 곧 ‘응분의 보복’(=응보)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응분의 보복’, ‘처벌(형벌)’을 범죄자에게 가하는 주체는 범죄자가 아니고 법정이다.

[자료와 친해지기] EBS 수능완성 79p : 사형제도에 대한 칸트의 관점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와 어느 정도의 처벌을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접시저울에서와 같은 평형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다른 국민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만일 ... (중략)...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너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야 어찌 되었든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EBS 수능완성 79p에서 볼 수 있듯 칸트는 공적인 정의는 평형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그것은 ‘그를 죽인 너 자신’(=살인자)의 개인적 판단은 상관이 없으며 오직 법정이 응보적 권리에 따라 처벌의 질과 양을 정하는 것이라고 썼다. 결국 칸트의 입장에서 범죄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의욕하는 것)’은 처벌에 있어서 아무런 고려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선지 ④를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근거가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 ④는 틀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칸트는 범죄자의 ‘처벌(응분의 보복)’받겠다는 의지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법정의 결정만이 처벌의 근거라고 본 것일까?

많은 학생들이 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④ 선지는 42%의 학생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문항인 만큼, 평가원에 최고 많은 수의 이의제기가 올라왔던 선지이다. 따라서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

• ④번 선지 관련 QnA

Q1.

질문자 : 아래 제시문(을)에서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의욕했다는 것은 ‘원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런데 칸트가 동기를 중요시한 의무론자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원한 것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1. 칸트는 이미 벌어진 범죄라는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았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마음만 먹었다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유죄 조건 : 근대의 응보주의자인 칸트는 처벌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원칙은 유죄 조건으로, 처벌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리는 것²⁰⁹⁾이지 그 어떤 다른 이유, 즉 범죄 예방이나 교화 때문에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157p〉

위 칸트 윤리형이상학 원전의 맥락에서 볼 때, 칸트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다.(원했다.)’를 말한 것은 ‘형벌 받기를 의욕함’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지, 그럴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을 아는 교수님들이 제시문의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를 선지 ㉔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응보=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와 대비되는 의미로서 출제하신 것이다. 이를 칸트의 동기를 중요시한 의무론적 입장에서 다시 고찰해보면 칸트가 살인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씨가 B씨를 살해했습니다.(결과) 이는 형법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 행위는 ‘응분의 보복’(응보)로서 처벌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에게 사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했다는 유죄 조건의 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A씨의 행위 결과만으로 ‘처벌’의 본질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A씨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A씨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²¹⁰⁾입니다. 칸트는 A씨의 법률 위반이 곧 A씨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준칙에 의한 것일 때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²¹¹⁾ 만약 A씨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B씨를 죽인 것이 아니라면, A씨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즉 칸트는 범죄 행위를 하여 이미 법률을 위반한(유죄 조건을 충족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근거로서 범죄자의 자유의지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자신의 준칙²¹²⁾에 따라서 ‘의욕했다(원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을(칸트)의 제시문 내용)

왜 범죄자의 ‘자유 의지’로부터 ‘의욕(원함)’된 ‘법률 위반(=처벌받아야 할 행위)’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될까요? 그것은 “책임은 우리가 자유 즉, 자기가 원인이라고 상정할 때에만 존재하기 때문”²¹³⁾이다.

정리하자면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제시문 을의 첫 문장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의 올바른 의미는 형벌은 처벌 받아야 할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그 범행을 자유의지로 행했을 경우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8) 사실 ㉔가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㉔는 틀린 선지일 수밖에 없다. 12번의 ㉔와 ㉕ 선지는 서로 경쟁 답안이다. 선지 ㉔는 범죄자 사적 의지를 형벌의 근거로 본 선지이고, 선지 ㉕는 공적 정의를 형벌의 근거로 본 선지이다.

209)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의 법론에서, ‘형법이란 외적인 강제’라고 말하며, 개인이 실제로 형법을 어겼다는 결과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210) *수능에 안 나오는 내용 각주* 이때 말하는 자유의지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의 경험적인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 존재로서,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의무)에 따른, 초경험적인 당위를 말한다. 따라서 만약 A씨가 의도치 않은 과실치사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B씨 살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A씨가 B씨를 죽였다는 것은 사형을 당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맞다. 그런데 이 각주는 복잡하니까 학생들은 넘어가자. 이 각주는 이 책을 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썼다.

한편, 어느 학생이 그러면 칸트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인 군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칸트의 사형제 논의는 무고한 인간을 살해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논의이다. 따라서 칸트는 전쟁 상황은 무법적인 상태라고 말하며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비록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전쟁을 규탄하고 영구 평화를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국가들이 국제 연맹을 맺어서 일종의 사회 상태(법적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쟁은 존재한다. 따라서 칸트는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칸트는 국가들이 자연 상태에 있는 경우(= 국제 연맹을 맺지 않은 상태) 합법적인 전쟁이 존재하며, 전쟁 중에는 법률이 침묵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권리에 대해 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칸트는 방어전에서 침략을 받은 국가가 국민을 간첩, 암살자, 독 살포자, 저격병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국민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 보지만, 그 국가는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칸트는 전쟁 중의 정당한 방법으로 군인이 타 국의 군인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군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도 좋을 것 같다. 칸트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살인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형한 사람(처형자, 교도관)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한 살인자인가? 그런 논리로 본다면, 살인자를 죽인 교도관도 죽이고 그 교도관을 죽인 교도관을 죽이고 이렇게 단 한 사람이 남을 때 까지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논리적으로 연역될 수 있다.

칸트가 처벌하고자 하는 자는 시원적 계약을 통해, 입법적 이성이 공동으로 제정한 정연 명령인 형법을 어긴 자 일뿐이다. (이는 당연히 수능에 안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군인도 사형에 처해야 하냐고 많이 물어봐서... 굳이 넣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211)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79p, B208-B029

212) 준칙(Maxim)이란 도덕 법칙과 구별되는 개인적 행위 규칙으로 ‘격률’이라고도 한다.(미래엔 생활과 윤리 교과서 30p) 준칙 중 어떤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준칙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준칙이 될 수도 있다. 칸트의 언어로 볼 때, 법범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는 그러한 범죄 행위의 규칙(준칙)을 의욕한 것(원한 것)이고, 이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213)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윤리21』, 사회평론, 77p

Q2.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것이 맞지 않나요?

응보주의적 입장에서 칸트는 살인자에게 사형은 적합한 형벌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최후의 살인자를 먼저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사형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상에듀 181p>

첫째, 응보주의 관점이다. 이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본다. 칸트는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미래엔 189p>

질문자 논리 위의 교과서에서 나와 있듯, 칸트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근거로서 범죄자가 이성적 존재이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보면 즉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자율적 선택이다. 범죄는 범죄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인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²¹⁴⁾

그러므로 ㉔는 칸트의 입장에서 긍정할 수 있지 않나요?

A2. 우선 앞의 ‘개념적 해결’에서 논증했듯이 선지 ㉔는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근거가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칸트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근거로 범죄자 개인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았고 오로지 법정의 판결만을 범죄자를 처벌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만 보아도 해당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또한 제시문에서 칸트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선지는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두 문장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칸트의 정확한 견해는 무엇일까?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에서 ‘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무릇 누군가에게 그가 의욕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벌은 아니며, 형벌받기를 의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라고 쓰고 있다.

칸트는 어째서 범죄자가 형벌 받는 것을 의욕할(원할) 수 없다고 보았을까?

그것은 칸트가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을 현실적인 존재로서(감성계의 인격으로서) 정념, 욕구(경향성)를 지닌 존재이므로, 올바르게 못한 행위(범죄)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칸트는 그러한 현실적 존재인 ‘감성적 인간’은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칸트는 법(도덕법칙)은 경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언 명령적으로 선형적으로 만들어져야 불변의 의무로서 정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을 동시에 지성적인 존재로서(지성계의 인격으로서) 도덕적 - 법적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인격은 선형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는 보편성 정식에 따라 도덕법칙과 법을 ‘정언 명령’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한 법은 인간들이 서로를 목적적 존재로 존중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계약의 결과이다.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항상 ‘공적 정의’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입법적 이성과 공적 정의의 대행자인 ‘법정’이다. 칸트가 법정이 보복법[응분의 원리, 탈리오 법칙²¹⁵]에 따라 범죄자의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곧 입법적 이성과 공적 정의에 근거하여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선지 ④는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근거가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인데, 위에서 살펴보았듯 칸트는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근거로 범죄자 개인의 의지가 아닌, 입법적 이성, 공적 정의 혹은 그의 대행자인 법정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 것이다.

오히려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상예두 181p>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²¹⁶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미래엔 189p>

위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 칸트가 이성적 존재인 범죄자(살인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하는 이유는 ‘자율적인 행위=스스로 저지른 살인 행위’, ‘자신의 행동=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함이다. 이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을 제시문에서 말하는 ‘범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스스로 저지른 살인 행위, 자신의 행동,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교과서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 칸트가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 근거는 범죄자가 처벌(=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다.

Q3. 칸트에게 ‘응분의 보복’은 곧 ‘처벌, 형벌’의 동의어입니까?

A3. 법철학의 대가 빈프리트 하세머 교수는 『범죄와 처벌-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84p에서 “응보론은 무절제한 처벌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비례성 원칙을 끌어들이 필요 없다. 균형이 맞지 않는 형벌은 애당초 ‘응보’가 아니기 때문이다.”²¹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응보론에서 처벌이란, 곧 응당한 보복(범죄와 처벌의 1 : 1 비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칸트도 『윤리형이상학』에서 공적 정의는 ‘보복법[탈리오법칙²¹⁸]’을 형벌의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다고 말한다.²¹⁹ 칸트에게 형벌은 ‘응보=응분의 보복=응당한 보복’인 것이다. 따라서 선지 ④의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라는 말은 곧 ‘처벌(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로 치환할 수 있다. 이는 제시문에서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처벌과 ‘응분의 보복’이 같은 의미임을 제시하고 있다. 수험생은 충분히 이로부터 추론 가능하다.

Q4. 아니 왜 평가원 교수님들은 이런 제시문과 선지 ④, ⑤를 낸 것인가요?

A4. 이 12번 문항은 지금까지 평가원과 수능에서 출제된 모든 사형제 문항 중 가장 법 윤리학/법철학적²²⁰으로 심화된 문제이다.

베카리아(갑)와 칸트(을)의 구도에서 칸트가 베카리아의 ‘사회계약론적 사형제 반대’ 입장을 ‘사회계약론적 사형제 찬성’ 논리로 정면으로 논파한 내용을 을의 제시문과 선지 ④, ⑤로 준 것이다. 12번 해설에서는 물론 그 전 원전에서도 베카리아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잘 살펴보았다. 선지 ④와 선지 ⑤가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경쟁 답안이라는 것도 알아보았다.

214)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율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형법을 의욕(= 응분의 보복을 의욕)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질문자의 논리는 틀린 논리이다.

215) Lex Talionis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 법칙을 의미한다.

216) 법정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과 범죄자가 스스로의 범죄 행위의 형벌을 원하는 것(= 형법의 입법 과정에 범죄자의 의지가 관여하는 것은 다르다.

217) 응보란 범죄와 형벌 사이의 1 : 1 비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응보’라는 개념 자체만으로 산술 비례적이다. 비례가 이미 존재하므로, 추가적으로 비례성원칙을 끌어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218) Lex Talionis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 법칙을 의미한다.

219)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B227

220) 법 윤리학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생활과 윤리는 윤리학적 지식을 생명 과학, 경제학, 법 등 다양한 학문에 적용하는 학제적 성격을 지닌 응용 학문이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 간단히 요약하자면, 베카리아는 범죄자가 자신의 생명을 사회계약을 통해 양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칸트는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형벌의 근거를 ‘예지적 인격(입법적 이성), 공적 정의’로 보았고, ‘현상적 인격, 범죄자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여 사형제를 옹호하였다.

한편, ④ 선지는 법 윤리학/법철학의 다른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이는 대륙계 법철학의 대표인 독일 법철학(법 윤리학)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지이다. 물론 이것까지는 수능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에도 다루고 있는 철학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나름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선지를 출제하신 것이다.

여기서 다들 철학자는 바로 ‘포이어바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④는 칸트가 아닌 칸트의 영향을 받은 법철학자 포이어바흐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동의론’의 입장에서 긍정할 선지다.

포이어바흐 : 독일의 형법학자, 철학자로 1813년 바이에른 형법을 기초하고, 1814년 안스바흐 고등 법원 원장이 되었다. 근대적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즉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범죄 형벌에 있어서는 범죄의 충동을 억압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서의 심리적 강제-위협설을 내세웠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191p>

포이어바흐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법철학자이지만 칸트의 법철학, 법 윤리학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리주의에서나 다름 법한 ‘예방론’을 처벌의 근거로 삼았다. 생활과 윤리 4종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근대 형법에 도입한 매우 중요한 법철학자이다. 물론 수능에서 포이어바흐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을 서술하는 이유는 수능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교수님이 해당 선지를 어떤 학문적 배경에 근거하여 출제하신 것인지를 알아보고 칸트의 사형, 형벌에 대한 입장을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고자 함이다.

바꿔 말하자면, 국민(즉 국민 중의 각 개인)이 아니라, 법정(즉 공적 정의)이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구술(명)하는 것이며, 사회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중략)
무릇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한다면, 이 자에게 형벌 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겠고,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298p>

12번 문항의 원전 소스로써, 바로 위에서 살펴본 칸트의 원전의 일부이다. 연세대학교 사회철학과의 남기호 교수의 해설을 보자. “여기서 칸트는 사회계약과 그로 생긴 법의 근거로는 오직 입법적 이성을 지닌 인격, 공적 정의만이 인정될 뿐이고, 감성적 존재인 개인의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약 ‘처벌 권한’에 ‘처벌받기를 의욕(원하는)하는 범죄자의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될 것이고,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²²¹⁾”

그런데 포이어바흐는 ‘동의론’의 입장에서²²²⁾,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범죄자, 개인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본다.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법철학 연구로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신 김세빈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이어바흐는 형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행한 자는 형벌 자체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며, 그 범죄자는 따라서 사회계약의 이행을 할 권리를 지닌다. 이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처음부터 형벌에 복종한다는 법칙을 약속한 사회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포이어바흐는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타인의 법적이익을 침해하여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고 보았다. 이는 그 범죄자 또한 ‘법익’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니라면 그것을 침해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할 리 없으므로) 포이어바흐는 논리적으로 볼 때 법익의 보호와 법익을 침해한 자의 처벌 즉 범죄자 자신의 처벌까지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포이어바흐는 범죄자가 윤리적 귀결로서 의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범죄자의 처벌)을 의욕했다고(=범죄자 자신의 처벌을 의욕) 해석한다. 즉 형벌은 이미 범죄자 자신의

범죄 행위 속에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범죄를 했다는 것은 형벌을 받는 것을 의욕함)”²²³⁾

즉 2017. 6. 12번의 ㉔“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는 칸트의 응보론적 입장이 아니라 포이어바흐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동의론’의 입장에서 긍정할 선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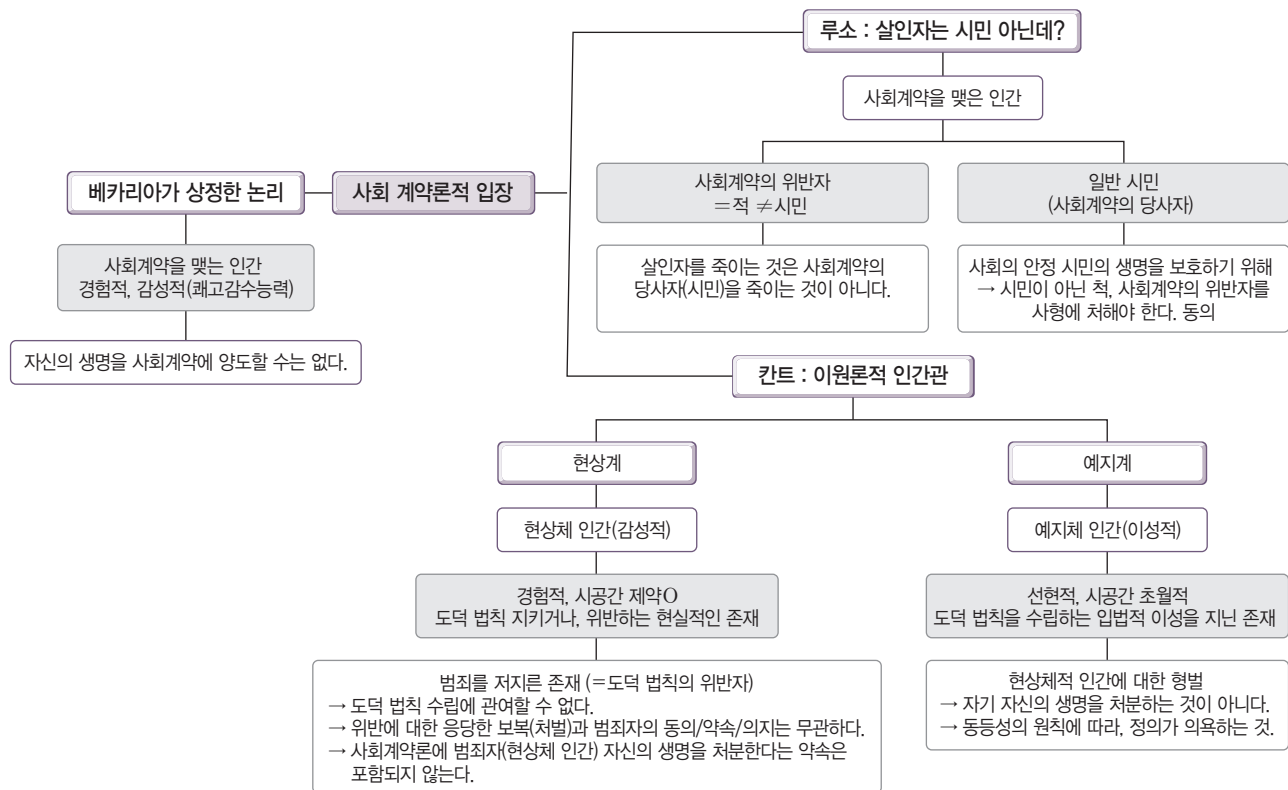
한편, 칸트는 응보론적 관점에서, 형벌(처벌)을 ‘응분의 보복’, 즉 응보라고 본다. 따라서 선지는 칸트의 입장에서 ㉔ 범죄자가 처벌(응분의 보복)을 의욕했는지, 그리고 ㉕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다면, 그것을 전제로(근거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포이어바흐의 ‘동의론’의 입장이라면 이것에 동의하겠지만, 칸트의 입장에서 ‘응분의 보복’을 범죄자에게 가하는 이유는 행위자(범죄자)가 의욕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의 요청’에 근거하기 때문에 칸트는 ㉔에 동의하지 않는다.

선지가 말하는 ‘범죄자의 응보에 대한 의욕’은 경험론적 입장인 ‘동의론’이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논거이다. 오히려 칸트는 현실적 개인의 동의나 이익 등에 의존하지 않는 선형주의적이고, 절대주의적 응보론에 의거하여 형벌의 정당화를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 선지에서 칸트의 ‘절대주의적 응보론’의 특징인 선형성, 절대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님들의 선지 출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포이어바흐의 입장은 잊어버려도 좋다. 칸트의 ‘절대주의적 응보론’의 특징을 잘 알아두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된 내용으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사형제(형벌)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입장들 구조화



221) 남기호, 「칸트의 형벌이론에서의 사형제 폐지가능성」, 사회와 철학 22권, 2011, 140p 요약
 222) 동의론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수능에 출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지의 하나로는 출제될 수 있고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선지 ㉔로 출제된 것이다. 물론 포이어바흐를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다.
 223) 김세빈,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84-85p 요약

6) 본론 ④ : 공리주의자, 쾌락과 고통의 계산가 벤담 그리고 공리주의의 상대론

길고 긴 칸트가 끝이 났다. 이제 공리주의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공리주의에 제기할 수 있는 칸트의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동일한 논리로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사형제 문항을 같이 풀어보고 이 사형제 Master 칼럼을 끝내보자.

공리주의 이론은 20세기 중반까지 형벌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왔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범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공리주의의 입장은 큰 호소력이 있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이론적인 철학이라기 보다 정책과 입법의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실용적 철학에 가깝다.

“모든 법률의 일반적인 목적은 사회의 행복의 총계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해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모든 형벌 그 자체는 해악이지만, 공리성의 원칙에 따르면 보다 큰 해악을 제거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도 용납될 수 있다.

〈Jeremy Bentham,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0p〉

여기서 볼 수 있듯 공리주의의 사상은 '법을 제정(Legislation)' 즉 국가와 사회의 정책을 위해 공익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벤담의 철학은 현실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유리했지만 '윤리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의 '㉓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는 메타 윤리학입장이 제기할 수 있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벤담은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지닌다.'라고 보았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로서, 사실 명제이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사실 명제에서 '그러므로 인간에게 고통을 피하도록 & 쾌락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다.(=도와야 한다)'라는 당위 명제를 추출해낸다. 같은 논리로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사실 명제가 있다면, '학생들이 아침에 오래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옳바르다.(= 도와야 한다.)'는 당위 명제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논리는 메타윤리가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로서 오류임을 증명한 문제이다. 결국 '쾌락을 주는 것이 선, 고통을 주는 것이 악'이라는 공리주의의 근본적인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자연주의적 오류'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칸트는 이러한 공리주의를 ' 좋음'과 '옳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비판한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바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공리주의가 형벌, 사형제의 윤리성에 '공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이 이익을 좋아 한다'는 사실명제를 '형벌과 사형제를 통해 이익(공리)을 추구해야 한다.(=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당위 명제로 연역한 것이다. 칸트의 비판점을 명확하게 말하자면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²²⁴⁾

이고, 이와 관련하여 칸트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의 기출 선지는 다음과 같다.

‘형벌,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²²⁵⁾ (○)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²²⁶⁾ (○)
 ‘범죄 예방과 억제가 사형제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²²⁷⁾ (○)
 ‘살인범에 대한 상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²²⁸⁾ (○)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²²⁹⁾ (○)

더 나아가 (행위)공리주의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공리성’만을 위해서 형벌을 가하기 때문에 ‘유죄가 아닌 무고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²³⁰⁾ 예컨대 테러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사회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처벌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고통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그에 대한 형벌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것이다.²³¹⁾

칸트는 공리주의 형벌이론이 ①유죄 원칙 ②탈리오법칙(=동등한 응보)을 어겼다고 비판한다.

근대의 응보주의자인 칸트는 처벌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원칙은 유죄 조건으로, 처벌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이유, 즉 범죄 예방이나 교화 때문에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비례조건²³²⁾으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내려져야 정당하다는 것이다.

〈천재교육 157p〉

이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세혁 교수(서울 법대, 법학박사, 사시 제28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형법은 미리 일정한 행위를 지시하는 내용의 규범을 전제로 그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규범을 위반하였기에 그에 대한 형사책임으로서 형벌을 받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자가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다시 말해 선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무고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단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무고한 이들]에 대한 형벌은 인간의 자율성,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²³³⁾

공리주의는 분명 큰 장점이 있지만,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요즘 형벌에 대한 법 윤리학/법철학에서는 공리주의의 장점인 공리성과 의무론의 장점인 이론적 엄밀함, 인간 존엄성 실현, 법정 정의 실현 등의 장점을 취합해서 올바른 법 윤리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공리주의(목적형주의)와 의무론(응보형주의) 모두 현실의 사법윤리에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우리는 공리주의적 관점의 장점과 단점(칸트의 비판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24)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1판 3쇄, 아카넷, 2015년, 292p~ 293p B226

225)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선지 ①

226) 2016학년도 수능 선지 ㄴ

227)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선지 ㄴ

228)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선지 ㄴ

229) 2014년 3월 고3 학력평가 선지 ⑤

230) 이러한 행위 공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것이 규칙 공리주의이다.

231) 오세혁, 『형벌의 철학적 기초 - 영미 형벌 정당화이론의 동향』 24p

232) 공리주의,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의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하고, 칸트는 범죄와 형벌의 1 : 1 산술적 비례(=동등성)를 추구하고.

233) 오세혁, 『형벌의 철학적 기초 - 영미 형벌 정당화이론의 동향』,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 14집 제 3호, 2012년, 24p

• 형벌/사형제에 대한 공리주의의 입장 정리

① 벤담의 공리주의 : 공리주의는 형벌은 고통을 가져다주므로 그 자체로는 악으로 본다.

하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형벌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②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하는 개념 : 일반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

- 일반 예방주의 : “사형은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 함.”²³⁴⁾

일반 예방주의는 범죄자를 본보기로서 처벌을 함으로써 일반인²³⁵⁾들에게 경고를 보내어, 범죄를 예방하려는 공리주의적 사상이다. 그런데 일반 예방주의라고 항상 사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²³⁶⁾ 따라서 이것이 수능에 공리주의적 입장이 출제되면 ‘일반 예방주의 = 사형 찬성’이라고 반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제시문을 잘 읽고 판단해야 한다.

- 특수 예방주의 :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계도하고 재사회화(교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목숨을 박탈함으로써 그러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 QnA

Q1. 제시문 (을)

공리주의에게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행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A. 최대 행복의 원칙이란, 어떠한 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의 합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공리의 원칙’ :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행복, 쾌락)을 말한다.

이때 형벌에 있어서는, 형벌을 받는 당사자인 범죄자의 이익과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안전해지는 사회의 구성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범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당사자들(범죄자, 시민 총합) 전체의 이익 증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따라서 공리주의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다. 예컨대,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공리주의의 사형에 대한 입장을 일반 예방주의와 특수 예방주의로 나눠 생각한다.

특수 예방주의는 살인자(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주요 원인을 사회 구조적 문제와 교육의 부족함 등에서 찾는다. 따라서, 당사자인 살인자(범죄자)를 교정, 교화를 하여 회복시킨다면 그 사람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고 고통을 가하는 것 혹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 보다 ‘범죄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 일반 예방주의는 살인자(범죄자)를 처벌하여 일반인들에게 경고하는 효과를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유효하고, 그에 따라 증가하는 전체 이익이 높기 때문에 형벌(사형제를 포함한)을 통해서 살인자(범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출 및 EBS를 통해 확인하기

• EBS 수능특강 124p : (2) 사형제도의 윤리적 쟁점

사형제도의 찬성 논거	사형제도의 반대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므로 범죄 억제의 효과가 매우 큼. • 살인 등과 같은 흉악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임. •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은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음. • 사형 반대론자가 제시하는 종신형 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비인간적일 수 있음. • 형벌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인과응보적 응징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은 찬성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범죄 예방 효과가 없음. • 사형은 인도적 이유에서 존치시킬 수 없음. • 사형은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 교육과 교화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사형은 형벌의 본질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허용할 수 없음. •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함. • 사형은 정치적 이유로 정적이거나 반대자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EBS 수능완성 79p : 6.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 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한 관점

① 응보주의적 관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임. •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리는 것임.
장점	공동체가 개인을 대신해 범죄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예방과 무관 • 처벌 과정의 과도한 비용 부담 • 전과자의 사회 적응의 어려움.

② 공리주의적 관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임. •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음.
장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화할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움. • 인간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함.

2013년 4월 고3 학력평가 17번

17.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는 없어.
(나)	아니야. 사형제도는 필요해. 왜냐하면 타인의 천부적 생명권을 침해한 살인범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이야. 갑 : 내 생각에 너의 견해는 _____ ㉠ _____

- ① 사형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 ② 범죄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 ③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의 교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어.
- ④ 사회 질서 유지가 살인범의 생명권보다 중요함을 무시하고 있어.
- ⑤ 가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응보임을 무시하고 있어.

현자의 돌 평

쉬운 문항이다. 이 문항의 학습 포인트는 갑이 말하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는 없어.’가 특수 예방주의가 강조하는 논리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234) 2017학년도 수능특강 P.124

235)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하기 때문에 일반 예방주의다.

236) 현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는 소극적 일반 예방주의의 관점만이 일반 예방주의의 관점으로 소개되어졌다. 하지만 사형제 문항을 출제하실 법 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은 ‘일반 예방주의 = 사형’이라는 등식으로 사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신형 문제처럼 단순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꼭 읽고 풀자.

제시문 분석

갑은 ‘특수 예방주의’가 강조하는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논거로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한편, 을은 사회예방론의 관점에서 살인자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사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사형제를 찬성한다.

정답 : ③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14.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p> <p>을 : 형벌은 단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과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아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호한다.</p>
(나)	

< 보 기 >

- ㄱ. A :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하는가?
- ㄴ. B :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
- ㄷ. C : 형벌의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 ㄹ. C :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현자의 돌 평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항이다. 사형제 기출 중에서는 쉬운 편이다. 다만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을 칸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많은 학생들이 몰랐고, 판단을 잘하지 못해서 틀렸다.

제시문 분석 :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갑은 공리주의(벤담)이다. (1) 제시문은 형벌의 주목적이 ①범죄자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 ②일반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2) 또한 그러한 형벌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갑)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갑은 공리주의(벤담)의 입장에서 (1) 형벌의 주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① 특수 예방주의적 입장에서 ‘범죄자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며 ② 일반 예방주의적 입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경고를 가하여,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통제함’은 결국 범죄 예방²³⁷⁾을 말한다. (2) 그렇게 형벌을 통해 ‘범죄자와 일반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이유는 공리의 원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가해져야만 하는데, 그것은 공리주의가 형벌을 범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악인 형벌을 최소 한도로 사용하여, 공리의 증가(범죄 예방)의 효과를 이뤄내는 것이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형벌관이다. 한편 이는 베카리아도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베카리아는 공리성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 존중과 생명권 양도 불가능성을 주장하였기에 사형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을)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을은 칸트이다. (1) 제시문은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2) 또한 인간은 시민의 자격이 박탈되어 죄수가 된다고 해도 그 생득적 인격성은 침해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을)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을은 칸트의 입장으로 (1)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문장은 형벌을 가할 때, 형벌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확실하게 유죄 원칙을 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가 실제로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처벌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 처벌받아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을 만족한다는 의미이다. (2) 또한 인간은 언제나 존엄한 존재이고,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법정에서 범죄자로 선고 받고 형벌을 받는 입장으로 시민적 지위를 상실했을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격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도 타인의 의도나 사회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여 그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선지 분석

ㄱ. A :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하는가? (○)

A는 갑이 동의하고, 을이 동의하지 않아야 옳은 선지이다.

갑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형벌이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가 할까? 예컨대 가격 담합으로 100억을 번 회사에 벌금으로 10억을 부과한다면 그러한 벌은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벌금은 100억 이상으로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을 사형에 처한다.’는 형벌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며, 공리의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잘못된 형벌이 될 것이다.

한편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번에서는 ㄷ 선지로 ‘C :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해보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형벌이 방지할 해악(=일반인에게 경고/범죄자 격리 & 교화하여 미래 범죄를 예방함.) > 형벌의 범죄자에 대한 해악(범죄자가 겪을 고통) >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을 이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위 부등호 관계 추가 설명

일단, 범죄자가 범법 행위를 해서 1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보다 더 큰 것이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37) 그 외에 범죄자 회복, 교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형벌의 범죄자에 대한 해악(고통) >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을 이익’이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형벌이 고통을 가하는 악이지만, 형벌의 고통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예 범죄 예방 효과)을 얻을 수 있다면, 형벌을 필요한 악으로써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벌이 방지할 해악 > 형벌의 범죄자에 대한 해악(고통)’이다.

이 부등호 관계는 곧 비례 관계인데, 이를 통해 공리주의와 베카리아는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 & 형벌의 정도, 형벌로 방지할 수 있는 해악 (=증가시킬 수 있는 공리) & 형벌의 정도를 비례적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을(칸트)는 범죄자에게 형벌이 가해져야 하는 이유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칸트의 관점에서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도덕법칙(형법)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이다. 그러한 처벌은 응보의 법칙이 따라서 범죄자의 범죄 행위와 동등한 정도로 가해져야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올바른 형벌로 인한 고통은 범죄자가 얻은 이익보다 크던 작던 상관없이 무조건 올바르다.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응보)은 정의로운 형벌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범죄자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가 형벌에 대해 고려하는 유일한 당위인 것이다.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해서 얻은 이익은 칸트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특히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변적인 요소이다. 칸트에게 형벌은 정언명령으로서 항상 절대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가변적인 요소는 형벌을 가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될 수 없다.

ㄴ. B :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 (○)

B는 을은 상관없고, 갑만 동의하면 옳은 선지이다. 갑은 ‘범죄자의 행위를 통제하고,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형벌의 주목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하고 통제하며, 일반인들에게 경고(본보기)를 보여서 통제하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ㄹ. C :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 (○)

C는 갑은 상관없고, 을만 동의하면 옳은 선지이다. 을은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이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두 가지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결국 같은 의미이다.)
먼저,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제시문으로 출제된 칸트의 입장을 보자.

을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예컨대 종신노역형이라는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노역일 수도 있지만, 살인을 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심리적 고통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형은 살인자가 평생 가지고 갈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이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칸트가 말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사형’이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형벌이 부과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은 칸트가 전제하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형벌은 ‘공적 정의’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의 이원론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형법은 예지체 인격²³⁸⁾, 입법적 이성이 공적 정의에 따라서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란 예지체적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서, 예지체적 인격(인간)이 수립한 정언 명령인 법을 따르는 것은 선형적으로 도덕적인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 정의가 동등성의 원칙(탈리오법칙, 응보주의)에 따라서 수립한 형법에 근거하여 범죄자에게 가해진 형벌적 고통은 어떠한 것이라도 선형적으로 범죄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 칸트가 말한 사형이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 주는 것을 넘어서, 고통 받는 사형수 안의 인간성, 즉 예지체적 인격이 요구하는 ‘응보적 정의’를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는 결국 칸트에 있어서 ‘범죄자 존엄성 보장에 부합하는 공적 정의, 응보의 원리에 부합하는 형벌만을 가해야 하는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물론 칸트는 두 물음에 100% 동의한다.

한편, 갑(공리주의)은 ‘공리적 계산’에 따라서 각 물음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상대주의적 입장이다. 공리주의는 형벌을 부과할 때 오로지 공리적 계산에만 치중하지 범죄자의 존엄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가 ‘범죄자의 존엄성’의 존재를 선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회가 공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라면²³⁹⁾ 그리고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늘리는 길이라면 조건부로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갑이 100% 동의할만한 선지는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해악)은 형벌이 방지할 고통(해악)보다 작아야 한다.’이다.

오답 선지 해설

ㄷ. C: 형벌의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

C는 갑은 상관없고, 을만 동의하면 옳은 선지이다. 을은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는 응보론의 입장이다. 따라서 형벌을 부과할 때에 형벌로 인한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벌의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대한 응분의 보복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은 공리주의로 제시문에서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에 동의한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번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 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p> <p>을 :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p>
(나)	

<보 기>	
ㄱ. A :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ㄴ. B :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ㄷ. C :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ㄹ. C :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ㄴ, ㄷ, ㄹ

238) 칸트는 인간이 현상체 인격과 예지체 인격을 동시에 지닌 이원론적 존재로 본다. 예지체 인격이란 시공간을 초월한 선험적 인격으로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인격이다. 예지체 인격이 곧 실천이성 에 따라 도덕법칙을 수립(입법) 하는 존재이므로, 입법적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239) 인간 존엄성이 인간의 발명품일지라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공리주의자는 인간 존엄성을 인정할 것이다. 마치 무신론자인 사람이 ‘종교’의 순기능을 인정하며, ‘종교, 신’이 사회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자의 돌 평

루소와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특이한 구도의 문항이다. 제시문 해설은 루소 칼럼과 공리주의 칼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정답 선지 해설

ㄱ. A :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

벤다이어그램 상 A는 갑만 동의하고, 을은 동의하지 않는 선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 갑은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찬성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이고, 그러한 계약을 위반한 살인자는 공공의 적으로서 간주되어 사형을 당해야만 한다. 한편 을은 사회계약론과 무관하게 공리의 원칙인 ‘해악을 방지’하는 것을 법의 일반적 목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ㄱ은 갑만 동의할 선지이므로 올바른 자리에 들어간 선지이다.

ㄴ. C :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

벤다이어그램 상 C는 을만 동의하고, 갑은 동의하지 않는 선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 루소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사형이 범죄가 불러올 미래의 어떤 해악을 방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한 살인자는 국가의 시민이 아닌 적 & 반역자로서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따라서 루소는 사형이 방지할 해악(사회방위론적 입장)도 고려하지만, 사형 자체의 해악을 고려해서 사형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루소는 이미 일어난 살인이라는 사회계약의 위반에 대하여 응당한 보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을은 법의 목적이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을에게 사형제는 사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해악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형벌은 악이기 때문에 사형에 있어서도 해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오답 선지 해설

ㄴ. B :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

벤다이어그램 상 B는 갑과 을이 모두 동의하는 선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 루소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살인자에게 사회계약 위반에 응당한 보복으로서 사형을 가해야하기 때문이다.²⁴⁰⁾ 한편 을(공리주의)은 사형이 살인자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위해서가 아닌, 해악을 방지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ㄴ은 갑은 동의하고, 을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A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ㄷ. C :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갑 루소는 사회계약의 위반자는 국가의 적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을 공리주의자는 사형이 가져올 이익과 해악을 저울질하여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거나, 혹은 처하지 않을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입장을 ‘일반 예방주의’ 와 ‘특수 예방주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07.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칼럼 : 사형제도 존치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때 사회 제도를 도입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사회 전체의 공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_____ ㉠ _____ -(후략)-

- ①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자연법에 어긋나므로 폐지해야 한다.
- ② 형벌의 고통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면 존치해야 한다.
- ③ 범죄에 대한 책임을 오직 개인에게만 묻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 ²⁴¹⁾
- ④ 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존치해야 한다.
- ⑤ 사회 전체의 공리와 관련 없이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현자의 돌 평

제시문을 꼼꼼히 보자. 답은 ②이다.

공리주의 : ‘형벌이 방지할 해악(=일반인에게 경고, 범죄자 격리 & 교화하여 미래 범죄를 예방함) > 형벌의 범죄자에 대한 해악(범죄자가 겪을 고통) >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을 이득’

※ 위 부등호 관계 추가 설명

일단, 범죄자가 범법 행위를 해서 1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보다 더 큰 것이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벌의 범죄자에 대한 해악(고통) >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을 이득’이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형벌이 고통을 가하는 악이지만, 형벌의 고통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 범죄 예방 효과)을 얻을 수 있다면, 형벌을 필요한 악으로써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벌이 방지할 해악 > 형벌의 범죄자에 대한 해악(고통)’이다.

이 부등호 관계는 곧 비례 관계인데, 이를 통해 공리주의와 베카리아는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 & 형벌의 정도, 형벌로 방지할 수 있는 해악(=증가시킬 수 있는 공리) & 형벌의 정도를 비례적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240) 재작년 EBS 수능특강 70p와 작년 교육과정 교회사 122p에서는 루소가 응보론의 입장으로 소개되었다. 물론 루소가 응보론이나 아니냐 하는 암기형 문제는 내신 시험이 아닌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매우 낮다. ‘사회계약 위반에 대한 보복, 대가로서 형벌을 가함’ 정도로는 출제 가능하다.

241)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아니다.

10. 다음 토론에서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토론 주제 : 사형제도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갑 : 사형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흉악범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입니다. 또한 사형은 극형이므로 범죄 억제 효과가 큼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은 사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형제도가 ㉠

- ㄱ.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ㄴ. 그 자체로 잔혹한 형벌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ㄷ. 개인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ㄹ. 교육과 교화를 근원적으로 포기하므로 형벌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현자의 돌 평

갑과 을은 사형제 찬성/반대 입장으로 딱히 특정 사상가의 입장은 아니다. 이 문항을 넣은 이유는 ㉠으로서 제시되는 답이 ㄱ, ㄴ, ㄹ인데, 그 중 ㄹ이 공리주의의 ‘특수 예방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논거이기 때문에 한번쯤 챙기면 좋을 것 같아서 넣은 것이다.

● **사형제 O, X 선지로 정리하기**

다른 사상가의 입장은 따지지 말고 오직 ()안의 사상가의 입장에서 해당 선지에 동의하면 ○, 동의하지 않으면 ×로 표시하세요.

- | | | | |
|--|---|---|---|
| 1. 판결을 내리는 인간은 ‘오판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런데,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희생된 인간의 생명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베카리아)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2.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사회 계약론적으로 타인, 사회, 국가에 양도될 수 없다. (베카리아)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3. 범죄 예방 효과는 순간적인 잔혹한 형벌(사형)보다 장기적인 형벌(종신노역형)이 더 크다. (베카리아)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4. 범죄 예방 효과는 가끔 범죄자를 본보기로 삼아 자극적으로 죽이는 것(사형)보다,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지속성, 신속성, 확실성)이 더 크다. (베카리아)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5.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사형은 그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칸트)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6.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베카리아)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7. 형벌은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베카리아)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8. 유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벤담)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9.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칸트)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10.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 (칸트)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 11.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베카리아)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60px; height: 2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px;">×</td> </tr> </table> | ○ | × |
| ○ | × | | |

12. 사형제도가 공익 증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칸트)
13.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가? (칸트)
14. 정당한 응보를 실현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칸트)
15.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 존중의 차원에서 폐지해야 하는가? (베카리아)
16.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형제도 폐지의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가? (칸트)
17.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이 보다 지속적이고 크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특수 예방주의)
18.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칸트)
19. 사형제는 인간은 오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칸트)
20. 사형제는 범죄 예방의 효용이 사형의 해악보다 적을 경우 폐지해야 합니다. (벤담)
21. 사형제는 범죄자(=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칸트)
22. 사형제는 사회 구성원이 국가에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주었으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루소)
23.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이다. (루소)
24. 범죄 예방과 억제가 사형제도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칸트)
25.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특수 예방주의)
26. 사형제도 존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이다. (공리주의)
27.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 (칸트)
28. 범죄자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니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루소)
29. 사형제는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치되어야 한다. (베카리아)
30. 범죄자도 교화를 통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칸트)
31.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 (칸트)
32. 사형제도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칸트)
33.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루소)
34.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베카리아)
35. 흉악범에게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수 예방주의)
36.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칸트)
37. 사형제도는 공공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칸트)
38. 사형제도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칸트)
39. 사형제도는 범죄자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칸트)

40. 사형제도는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칸트)
41.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칸트)
42.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칸트)
43.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칸트)
44. 사형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칸트)
45. 형사처분의 근본적 목적은 범죄의 억지²⁴²⁾와 예방에 있는가? (칸트)
46.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벤담)
47. 처벌은 필요악이므로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하는가? (칸트)
48.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인가? (칸트)
49. 사형은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가? (칸트)
50. 범죄와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51.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일반 예방주의)
52. 공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루소)
53.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루소)
54. 사형제는 사회 안정을 위해 범죄자를 희생시킨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칸트)
55.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칸트)
56.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공리주의)
57. 형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공리주의)
58.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개선을 이루는 것이다. (공리주의)
59.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칸트)
60.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칸트)
61.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공리주의)
62. 사형은 범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공리주의)
63.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칸트)
64.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공리주의)
65.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베카리아)
66.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칸트)
67.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벤담)
68. 사형의 범죄 예방의 효과를 인정한다. (일반 예방주의)

69. 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칸트) ○ ×
70.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한다. (특수 예방주의) ○ ×
71. 사회 질서 유지가 살인범의 생명권보다 중요함을 주장한다. (루소) ○ ×
72.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응보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베카리아) ○ ×
73.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부터 얻은 이득보다 커야 하는가? (공리주의) ○ ×
74.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 (공리주의) ○ ×
75. 형벌의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공리주의) ○ ×
76.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 (칸트) ○ ×
77.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루소) ○ ×
78.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베카리아) ○ ×
79.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칸트) ○ ×
80.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공리주의) ○ ×
81.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 있다. (베카리아) ○ ×
82. 사형은 그 자체로 잔혹한 형벌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칸트) ○ ×
83. 사형은 교육과 교화를 근원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형벌의 본질에 반한다. (특수 예방주의) ○ ×

정답²⁴⁴⁾ 및 해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4번 선지 : 여기서 말하는 ‘신속성’이란, 지속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신속성은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베카리아는 ‘사형’의 경우 수사 기간이 길고, 사형 집행까지 감옥에서 사형수로 복역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 사이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사이의 확실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일어난 즉시 신속하게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242) EBS에는 억지라고 나와 있다. (억지: 억눌러 못 하게 함)

243) 정답에서 해설이 제공된 ○, × 문항은 150여명의 검토자(수험생, 대학생, 선생님)분들이 추가 해설을 요구한 문항이다.

5번 선지 : 한편, 칸트의 입장에서 사형제는 살인자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겠지만, 살인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이다. 칸트는 사형제가 정언 명령이라고 보았다. 모든 정언 명령은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인간성 정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형제도 모든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칸트에게 종신노역형은 도덕법칙(정언명령)이 아닌, 가언명령이며 칸트가 인정할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종신 노역형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법이고, 보편화할 수 없는 법이다. 이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제시문 을(칸트)의 뒷 부분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을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10번 선지 : 칸트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만이 살인자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사형제를 정언 명령으로 보았는데, 정언 명령은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인간성 정식을 만족시킨다. 즉, 칸트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사형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사형 제도 존치 여부를 결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한 것이다.

17번 선지 : 특수 예방주의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형보다 더 크고 지속적인 고통을 사람들에게 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특수 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으로서 범죄자를 계도하고 교화하고 재사회화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런데 사형은 그러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3번 선지 : 루소 - 사회 계약론적(사회방위론 + 계약 위반에 대한 응보론) → 사형 :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여 사회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함. (= 범죄 예방)

47번 선지 : 칸트는 처벌을 정언명령에 따르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보았다. (필요악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칸트에게 처벌은 범죄와 1:1로 대응하는 만큼 가해져야만 하며, 그 정도를 줄이거나 늘려서는 안 된다. 칸트는 그러한 형 경감, 가중 처벌은 동등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보았다.

56번 선지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과 무관하게, 쾌락과 고통의 양적 계산이라는 공리의 원칙을 통해서 만든 법률과 체계의 일부이다.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칙에 따라,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형벌을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형벌을 악이라고 보는 이유는 형벌은 곧 범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형벌이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60번 선지 : 벌을 ‘보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응보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며, 이는 공적 정의가 의욕하는 것이므로, 결국 형벌을 통한 보복은 공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즉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령으로서의 형벌 개념 안에 ‘응보적 정의, 공적 정의, 도덕법칙, 인간 존엄성 존중’ 등의 실현이 이미 전제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그러한 것들의 실현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는 칸트가 말하는 ‘다른 목적 (예 사회 이익)’이 아니다.

62번 선지 : 공리주의에게 형벌은 악이다. 사형도 악이다. 다만, 형벌이나 사형제를 통해 더 큰 악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허용 가능한 필요악이다.

69번 선지 : 범죄의 책임이 100% 범죄자 개인에게 있다는 말은 아니다. (아래 교과서 서술을 참고)

응보주의적 입장에서 칸트는 살인자에게 사형은 적합한 형벌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최후의 살인자를 먼저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사형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상예두 181p>

첫째, 응보주의 관점이다. 이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본다. 칸트는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미래엔 189p>

80번 선지 : 사형의 해악(=사형수가 사형을 당함으로써 받는 고통, 사형제가 시행되면서 사회가 느낄 불쾌함 등)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사형을 시행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경고를 하고, 범죄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함으로써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 등의 이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

※ ○× 문제 출처

1.~4. 베카리아가 쓴 『범죄와 형벌』, 저작, 5.~8. 수완 139p 7번, 9.~12. 2015년 10월 고3 학력평가, 13.~17. 수특 126p 6번, 18.~22 수완 144 6번 23.~26.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 (○/×) 27.~30. 2014학년도 수능 6번 31.~35. 2014년 시행 3월 7번, 36.~40.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41.~44. 2015학년도 수능 6번, 45~49 수특 p129 6번, 50.~54. 수완 85p 9번 55.~58. 2014년 7월 고3 학력평가 10번 59.~62. 2016학년도 수능 19번 63.~67.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68.~72. 2013년 4월 고3 학력평가 17번 73.~76.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 77.~80.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81.~83. 수완 85p 10번

심장의소리